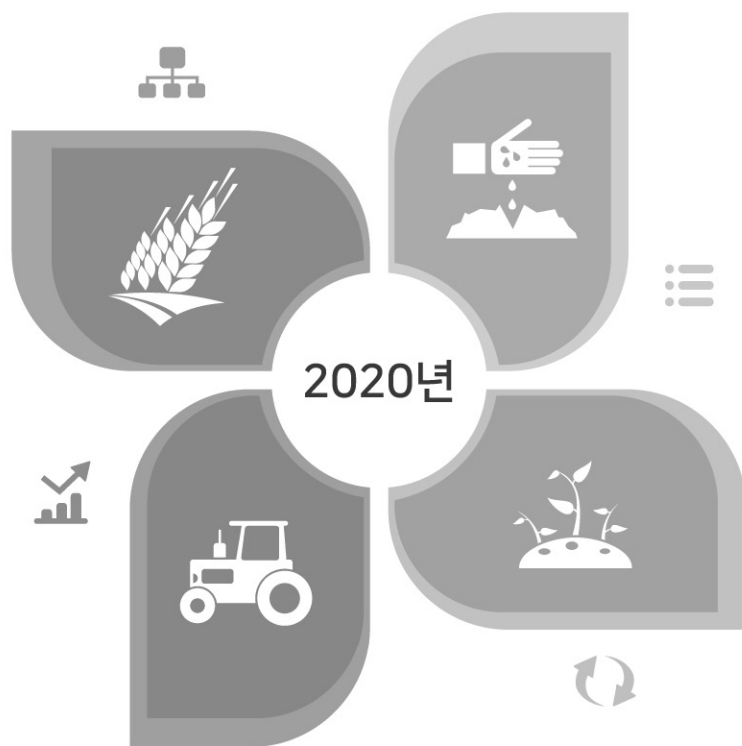


2020년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제2권 농자재 관련부문 발취



 농림축산식품부

 **KAMICO**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일 러 두 기

1. 사업시행지침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주요 농림축산식품사업 일부를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사업시행지침서는 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수요자 측면에서 간명하게 제작되어, 지자체 등의 사업추진과정에서 행정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별도로 통지된 개별 사업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시행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20년도 사업비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사업시행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목 차

제 2 권

I.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1

1. 기본규정 3

2. 기본규정 별표 및 서식 30

■ 농업분야 ■

2-2 생산기반확충

33.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53

■ 유통원예분야 ■

6-1 경쟁력 제고

77.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61

78.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67

6-2 생산기반확충

79.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101

80.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157

82.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165

83.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179

| | |
|-------------------------------|-----|
| 84.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 191 |
| 89.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 197 |
| 91. 시설원예현대화 | 205 |
| 92. 유통시설현대화 | 247 |
| 94.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 253 |

■ 해양수산분야 ■

| | |
|------------------------|-----|
| 24.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 |
| •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 259 |
| •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 279 |

I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시행 2019. 9. 26.]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37호, 2019. 9. 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 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 나. "융자금"이란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 가능한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에 따라 '대여금', '대출금' 등으로 칭한다.
 - 다. "이자보전금"이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 라. "기타자금"이란 보전금, 출자금 등에 해당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의 과단위로서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4. "사업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과단위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

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장(개별 지침 등에 명시된 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사업대상자"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 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 마. 그 밖의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자
7.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은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다.
8. "사업지원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을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9. "사업자금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장과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0. "사업자금관리자"란 농식품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기관을 말한다.
11. "공모(公募)"란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안내(공고)하고, 농식품사업자금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자격검증,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하여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
12. "보조금통합관리망"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13. "예탁교부"란 사업시행기관이 교부하고자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한국재정정보원의 별도계좌(가상계좌)로 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정보취약계층"이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제품 등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업대상자로서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15. "사업평가"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며, 환류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세부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 제58조제4항에 따른 대출 실행, 제67조에 따른 용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제6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대여금 반납, 제70조에 따른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 반납, 제79조에 따른 지원 제한 등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분류 및 공개) ①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활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서식(별표 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를 반영)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작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안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확정하고, 30일 이내 출판물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같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재정사업관리위원회

제6조(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훈령 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각 국장 및 국장급 보좌기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의 정책기획관
2.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8조(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정책기획관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획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 ⑥ 의결조건 및 의견청취 등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2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실·국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40조부터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관 사업부서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4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의결조건 및 의견청취 등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 제17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평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며, 평가위원은 평가 또는 농림축산식품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이 된다.

- 제18조(자체평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9조(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제도의 개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20조(회의)**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평가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1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장 및 소위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2조(소위원회의 회의)**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소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의결권한을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 제2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용

- 제24조(보조금통합관리망 운용원칙)** ①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 천재지변 등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예산안 및 예산의 통지
 2. 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공모, 제34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또는 사업등록)
 3.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결정
 4. 제58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5. 제59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검증
 6.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등록 및 공개
 7.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에 따른 보조금 확정, 이월, 집행잔액 등 반납
 8. 제64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9. 제76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10. 제87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을 위해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계좌의 온라인 뱅킹이 가능하도록 해당 금융기관의 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의 계좌에 예약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에 직접 교부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접보조사업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3. 「보조금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4.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사업인 경우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6. 「보조금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7.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약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정한 사업인 경우

④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약교부하는 사업대상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3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등 사업대상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지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업무지원, 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26조의6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보조금관리정보 등을 보호해야 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 범위에서 사용해야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예산편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안이 확정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9월15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내역을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12월 31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조기에 사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공모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등록·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일정
6.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된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지침서에서 정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을 접수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그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보조금법」 제26조의3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자격검증 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제3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검토,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 또는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명단,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선정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통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⑥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27조(정보취약계층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이용 지원)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부정등록, 부정집행 등으로 업무대행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와 계약한 시공·납품업체
 - ②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관리 업무대행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업무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사업시행기관의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자 지정등록, 사업등록 또는 변경, 교부결정, 집행정보등록, 정산보고, 중요재산 등록, 정보공시 등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취약계층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작성 및 제출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 및 이와 연계된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3.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계약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자금 이체
 5.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
 6.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업무대행자가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부정등록, 부정집행등록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집행)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교부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57조에 따른 계약 업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예약계좌로 교부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전용 카드, 기타 증빙자료 등 전자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출구조는 기본적으로, 지출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예약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된 후 자부담과 합쳐져서 거래업체로 총지출금액이 이체되는 3자 이체방식을 따른다.

- ⑤ 인건비 지급, 자부담 우선집행, 해외송금,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카드 지출 등과 같이 제4항에 따른 3자 이체방식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약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우선 이체 후 지출할 수 있다.
- ⑥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없이 예약계좌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먼저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에 반드시 집행증빙서류를 등록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사업 전용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는 예약계좌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정산보고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5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되어 있는 감사인에게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별도로 감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정산보고서의 검증보고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교부조건의 이행 여부, 사업추진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만일 실적보고의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제63조에 따라 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 사용 승인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집행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검토 또는 조치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 증감액 등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한 교부확정을 한 후, 「보조금법」 제26조의10에 따른 정보공시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10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 정산보고서
 4.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7.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
- ⑦ 제59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명한 경우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을 하고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10항에 따른 명단공표를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8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계획수립 및 신청

제32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 사업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경우 홈페이지·게시판·반상회보 게시, 지역설명회 개최하는 등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공모를 할 경우 사업 신청 시 최소 15일 이상 접수기한을 두어야 한다.

제33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 등) ① 시장·군수 등, 읍·면·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장은 해당 기관의 직원 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보조금통합관리망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①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 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사업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사업대상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예정지 관할 외의 기관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신청서의 접수기관은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서,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서 및 제39조에 따른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다.
- ⑤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 ⑥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식품사업자금 중 대출금이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출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⑦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자금(농식품사업자금과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자금 모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 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신청한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1.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인 경우 해당 자치단체 농업기술 센터소장
- 2.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업협동조합장
- 3. 임업과 관련된 사업은 산림조합장
- 4.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 정한 경우는 해당하는 기관의 장
- 5.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1. 제34조제6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 2. 제1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성가능성, 회수가 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제79조제7항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2.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3.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 및 제79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7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⑦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경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제34조제7항에 따른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 1.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수혜이력, 제34조제7항에 따른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
 - 나.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 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 등
 - 다.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등 1년 단위 단기 운영자금
 - 라. 산지유통활성화(원물구입, 운영자금 등) 관련 자금
 - 마.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 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정상보조 성격의 사업 등
- ⑨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별표 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6조(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관은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제34조제4항에 따른 접수기관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요청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사업신청서의 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결과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치단체 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발전단계별 지원방향 및 당해 자치단체 등의 주요 육성품목(주산지)과의 적합성 여부
 - 가. 농업경영체 유형별 지원방향 : 전업농(철단·수출 등), 중소농(6차 산업화, 규모화·공동생산 등), 영세·고령농(소득안정, 복지 등)
 - 나. 농업경영체 발전단계별 지원방향 : 초기단계(교육·훈련, 기초 시설·장비의 보조 지원 등), 성장단계(규모화를 위한 용자·보조지원 등), 기업화 단계(철단·수출농업 등 농산업 전문 기업화를 위한 용자지원 등)
 - 다. 주산지 여부 : 사업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분야)이 당해 시군 등의 주요 육성 대상(주산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자치단체 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4.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5. 자치단체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자체 지원계획
6. 자치단체 등 전체계획과의 조화
7.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8.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9.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치단체 등의 수시점검 또는 정기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자의 현황

제39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제38조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심사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다음 제7호의 경우에는 후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73조에 따른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서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수료한 자
5.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성실하게 등록 및 변경 등록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자

6.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축산 또는 GAP 인증농가, 동물복지형 및 깨끗한 축산농장,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 단체 가입자, 계약재배사업 가입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7. 가축질병 발생 농가, 인증제도 위반 농가,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축산법상 교육 미 이수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방역·검역의무 미준수 농가 및 소독설비 미구비·소독 미실시 농가, 허용되지 않은 농약사용 또는 과다사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성실하게 등록 및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사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격요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른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기관이 자체심의기구를 운영하거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하여 제2항에서 구성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8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선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사업자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선정 심의결과에 대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 의무를 진다.
 -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선정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개별 심의결과를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편성

제43조(예산 및 기금 요구안 편성원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안편성지침이 통보되면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요구서에는 제95조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또는 「보조금법」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 제7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3.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사업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 시 사업시행 기관의 예산편성요구에 따른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⑥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요구안 작성시 고려사항) ①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시 각 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1. 용자사업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 가. 회임기간이 5년 이하 용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방식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상 재정용자사업으로 운용하는 금융사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 나. 회임기간이 6년 이상 용자사업은 재정용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은 지방재정력 지수(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경영인력교과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 및 컨설팅 관련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ICT 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 및 통계 관련사업의 경우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R&D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과학기술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개별사업의 내역으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홍보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홍보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그 밖에 전문적으로 사전 심의가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부내 담당부서 및 외부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정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대상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5. 한시적 사업(일몰사업)은 원칙대로 폐지해야 한다. 단, 여건변화 등에 의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간 공동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7. 실비용(집행잔액 제외)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행 수준으로 반영한다.

8.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 이내에서 사업계획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법」 제7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량과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4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신규사업의 제안) ① 자치단체의 장은 신규로 농림축산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자치단체의 장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은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자치단체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 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자치단체의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 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 ③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된 신규사업 중 보조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적격성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결과 및 면제사업을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전임자문관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46조에 따라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48조(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은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예정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9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정부예산의 통지 등)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예정 연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 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0조에 따라 정부 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영립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1.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 2. 제1호에 따른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38조에 따라 사업신청서의 심사가 완료된 사업대상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 공지)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대상의 명단이 모두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사업별로 일괄하여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군 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혜자 및 금액, 보조시설물 관리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관리

제53조(농식품사업자금의 예산배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2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시행기관의 농식품사업자금 소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지침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기관에서 소요되는 농식품사업자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획재정담당관실 또는 기금관리자에게 분기별 예산배정을 요청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예산배정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매월 농식품사업자금이 확보되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농식품사업자금 지급(보조금은 교부, 융자금은 대여)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별도 계정)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별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보조사업 전용 계좌’라 한다)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사업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사업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 자부담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약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금액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사업인 경우
3. 전년도 사고이월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4.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조건을 붙이는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신청한 경우
 6. 사업시행지침서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7.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가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재배면적 등)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중요재산에 대한 제77조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7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7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제4호에 따른 '내역사업'을 말한다)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

기관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이하 '조달서비스'라 한다)할 수 있다.

1. 실시절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한다.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의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2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시공·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시공·납품업체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체 제재확인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치단체 또는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3.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체결을 한 경우

제58조(농식품사업자급 집행 등) ① 사업대상자는 농식품사업자급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하여야 한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3.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4. 제57조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관련 서류 일체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공급자가 판매하는 품목이 적시된 자료 및 자필로 서명한 거래영수증,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거래자료. 다만, 이 경우 1천만원 이내의 농산물로 제한한다.
6.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 ③ 제69조제4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 사용,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노무비 증빙자료,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원칙 등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통보하여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별표 2의 표준단가에 해당하는 공중,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의 집행이 표준단가 내에서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수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표준단가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공사례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찰계약 및 제57조제2항에 따른 조달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농식품사업자금 실적보고 및 검증) ①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인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농업경영체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계산서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보조금법」 제27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제4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 ⑦ 정산보고서 작성 및 검증,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 기준은 각각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별표 4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민간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별지 제9호서식)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등록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부기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1조(농식품사업자금 확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제5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정산보고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정산보고서 지출내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수반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공사원가 중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제 경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실적보고서의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하여야 할 농식품사업자금을 확정하고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삭감
-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9조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보고서 및 제59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검증기관의 귀책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증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간 농림축산식품 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2.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증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자격을 제한한다.
 3.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년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1년 간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제62조(농식품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은 제외한다)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 또는 재이월하여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액 또는 재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재이월 가능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집행잔액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 받아야 한다.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이자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대상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
 2.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반납을 명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해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시에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을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10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제59조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65조(용자 조건의 결정) ① 용자 조건은 사업자금과장이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용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장과 사업자금과장과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장은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 및 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용자 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자금과장과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6조(용자의 방법)** ① 용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 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등에 재대여한다.
-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에 따라 재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제67조(용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용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을 사업시행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 등을 관할하는 시도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기관
-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 등으로 하여금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시군 등이 사업대상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사업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 제68조(용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용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용자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용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 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군 등은 제3항에 따라 배분된 용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사업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 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 ⑤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중 "시군 등"은 "사업시행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촉구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68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6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용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68조제4항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 ③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 집행할 사업시행기관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업시행기관은 제68조제7항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협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사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79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6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용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시행기관의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행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지원 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 사업지원과장은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해당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시행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대출취급기관은 용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 ⑤ 사업시행기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7장 사후관리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보조금법」 제38조에 따른 위임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으로 교부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관리책임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시설등을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점검·보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 3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 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3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의 합계가 3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실·국별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및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매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조건 이행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개선 및 관리감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

④ 정책기획관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에 송부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5조(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식품사업 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용자 및 이차보전의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79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④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3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시행지침서 및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또는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60조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중요재산이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환 명령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부기등기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별표 4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제77조제3항 및 별표 5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환수명령된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환수한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제2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대여를 승인하는 경우 대여 승인기간 만큼 잔여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별표 5의 보조금 환수 기준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보조금 환수를 명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제63조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중요재산 승인 및 환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3호,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30조제2항1호,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삭제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하 이 조에서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5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환수할 수 있으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제77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 ③ 사업시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환수 또는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일
 2.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제1호의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

3.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환수할 경우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명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에 근거한 지침,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보조사업 수행배제'라 한다)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 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이하 '제재부가금 부과'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보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2.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제85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하며,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3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8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⑩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과 위반행위 내용 및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이하 '명단공표'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4.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5.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6.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지원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이하 '용자금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취급기관이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위자료를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2.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용자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 ③ 사업시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자금등을 환수 및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대출실행일

2. 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부정수급 사유와 제2항의 중도회수 사유(이하 이 조에서 제1항의 부정수급 사유와 제2항의 중도회수 사유를 '부정수급 사유등'이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원받은 용자금의 상황 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후 1년 이상 영농활동 중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피해농지를 상속받아 영농을 지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대출금의 승계 및 채무자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 ⑦ 용자금등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지원제한'이라 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족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을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 ⑧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제7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제한 기간을 100분의 50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사유등으로 지원제한이 2회 이상 반복된 때에는 지원제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⑩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사유등이 발생한 사실을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확인한 일자로 한다.

⑪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포함된 용자사업인 경우, 제7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2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경우, 제78조제1항·제2항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제78조제5항·제6항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78조제8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78조제10항에 따른 명단공표 등

2. 용자금등의 경우, 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제79조제7항에 따른 지원제한 등

② 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관련 처분명령 및 납부기한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또는 회수의 명령을 한 경우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제78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10항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5항·제6항 및 제78조제8항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3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사유 등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별도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81조(강제징수)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환금, 제77조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의처분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금, 제80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명령이 된 환수금 또는 회수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2.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강제징수 할 경우 반환금 또는 환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82조(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79조제2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따른 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 제83조(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 구성·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사업시행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 위원장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4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8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환수 명령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여부, 위반종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의 위반여부,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산정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환수명령 금액의 적정성 여부
 3.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명단공표 등을 위하여 명단공표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법」을 위반한 자료 결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 위반행위의 종류 및 예상되는 제재부가금 또는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대해 보조사업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처분 사전 통지) 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제80조제5항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 제3항의 절차와 제5항의 절차 사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를 개최한다.

- 제85조(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8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가산금 부과는 제78조제9항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86조(과오납의 환급)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대한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87조(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80조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법 시행령」 제19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2.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 제88조(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명단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다.
- ④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해서는 매년 3월 31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평가 및 환류

제89조(평가원칙) 사업평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사업부서의 점검 및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별표 1의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및 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1조(자율평가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율평가 대상, 절차, 방법, 일정 등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평가보고서 작성요령 및 양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포함토록 권고한 사항
-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2조(자율평가대상 선정) 총괄부서장은 기획재정부 성과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해당 회계연도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중에서 자율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 제93조(자율평가 절차)**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 수립 후 사업부서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하 '사업부서장'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재정사업별 자율평가보고서와 근거서류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3.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평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한다.
 4.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정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부서장에게 공개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접수한다.

6.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이의신청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이를 재평가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7.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취합·정리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8. 자체평가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제94조(자율평가결과 후속조치)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은 재정사업의 사업부서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중에서 환류계획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1. 성과관리개선대책
2. 지출구조조정
- ② 총괄부서장은 제출받은 후속조치계획을 검토한 후 자체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 ③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환류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 ④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및 환류계획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95조(자율평가결과 환류) ① 사업부서장은 자율평가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사업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사업 운영방식 개선 및 대안 제시
 - 가. 성과목표·지표 조정
 - 나. 성과목표·지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등의 조정
 - 다. 성과목표·지표의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제시
 - 라. 그 밖에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2. 예산편성방향 제시
 - 가. 증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현수준 유지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기여도가 보통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
 - 다. 감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통폐합·폐지 :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지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정책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재정사업 추진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해당 재정사업의 대체가능성, 정책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통합, 즉시폐지, 단계적 폐지로 구분)

② 사업부서장은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목표·지표 등을 달성하지 못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편성방향 대신 재정사업의 효과성이나 정책기여도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96조(재정사업 평가대응) ① 총괄부서장은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추진실태 및 개별 재정사업 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재정사업 사업부서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외부기관 평가대응을 위해 필요시 사업부서장에게 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부서장은 동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7조(자율평가결과 공개) ①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공개는 홈페이지 게시 등 농업인이나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제98조(모니터링 등) ①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해당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지표의 달성도, 예산집행실적, 사업방식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성과목표·지표 달성을 위해 재정사업별로 성과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9조(전담기관 활용)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환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농식품정책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00조(정부사업 집행관리)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 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 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
2. 사업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부칙 <제337호, 2019. 9. 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제5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

| 프로세스 | 대 상 | 시 기 | 주 요 내 용 | e나라도움 (보조사업) |
|--------------------------|--------------|-------------|--|-------------------------|
| [기초 및 계획단계] | | | | |
| 사업지침 안 내 | 농식품부 | N-2 12월 | ■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 |
| 농식품사업 수요조사 | 자치단체 | N-1 1~4월 | ■ 지자체는 농식품사업에 대한 민간수요조사 실시 ■ N-2년도 기준으로 내역사업별 예산 계상신청(e-호조) | ■ 다음 해 사업에 대한 공모 |
| 예산요구 | 농식품부 | N-1 5월 | ■ 자치단체 사업수요 및 예산반영여부 검토 ■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부처안) | |
| 내역사업 확정 | 기재부 농식품부 | N-1 9월 | ■ 신규사업, 통합사업 등을 반영 내역사업 확정 | ■ 내역사업 확정 및 정보입력 |
| 가 내 시 | 농식품부 | N-1 9월 | ■ 내역사업별 정부안에 맞추어 자치단체 사업계획 통보 | ■ 가내시 |
| 자치단체 예산편성 | 자치단체 | N-1 12월 | ■ 가내시된 내역사업에 맞추어 자치단체 예산편성(e-호조) | |
| 확정내시 | 농식품부 | N-1 12월 | ■ 사업시행 예산 확정내시 및 통보 ■ e나라도움과 e-호조 간 사업 매핑완료 | ■ 확정내시 |
| 사업등록 접수 | 농식품부 자치단체 | N-1 12월 | ■ 공공기관, 단체, 협회 등 N년도 사업계획 등록 ■ 자치단체는 민간보조사업자 안내 및 사업등록 | ■ 공모결과등록 ■ 사업등록접수·확정 |
| 사업지침 안 내 | 농식품부 | N 1월 | ■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 |
| [추진단계] | | | | |
| 자금배정 | 농식품부 자치단체 | 사업 연도 | ■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 ■ 예산배정, 사업배정 |
| 자금신청 | 사업 대상자 | 사업 연도 | ■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 보조금 등 교부신청 | ■ 교부결정, 지출 등 |
| 사업시행 | 사업 대상자 | 사업 연도 | ■ 사업추진 | ■ 보조금 집행 |
| 이행점검 | 농식품부 자치단체 | 사업 연도 | ■ 감독기관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온·오프라인 점검결과 등록관리 | ■ 집행모니터링 결과등록 |
| 사업 실적보고 | 사업 대상자 | 사업 연도 | ■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 | ■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
| [관리단계] OFF-LINE | | | | |
| 성과점검 | 농식품부 자치단체 | 사업 연도 | ■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 |
| 사업평가 | 농식품부 | N+1 3월 |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
| 환 류 | 농식품부 | N+1 4월 | ■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 방향 등) | |

표준단가 적용대상 및 단가

| 구분 | 기준단가 | | | |
|---|--|-------------|--|--|
| 냉난방 시설 |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 | | |
| | 구분 | 단가(m) | 지원내용 | |
| | 다겹보온커튼 | 수평권취식 | 13천원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보온소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알루미늄스크린의 접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은 보온율(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료와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
| | | 에어컨 외부권취식 | 11천원 이하 | |
| | | 알루미늄 스크린 | 11천원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
|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 5천원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 | 열회수형 환기장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 |
| | 자동 보온덮개 | 2.5천원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 |
| | 배기열 회수장치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보온소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관의 자료 활용 | | | |
|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및 필요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 | | | |
| | 설비형식 | 적용단가(천원/kW) | | |
| | 공기-공기(공급) | 617 | | |
| | 공기-물(공급) | 865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정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 | | |

| 구분 | 기준단가 | | |
|---|--|-------------|--|
| 냉난방 시설 | <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열 냉난방시설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 산출된 시설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 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 | |
| | | 설비형식 | 적용단가(천원/kW) |
| | | 수직밀폐형 | 1.638 |
| | | 수평밀폐형 | 1.260 |
| | | 개방형(SCW형) | 1.508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정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적용단가를 반영한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로 추가 사업비 발생시,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시행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중열 냉난방시설 : 880천원/k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 신정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열 재이용시설 : 1.250백만원/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설치면적(ha) × 지원한도 | | |
| |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 | |
| | 구분 | 단가(천원/661㎡) | 열효율 |
| | 온수형 | 3,000 | 80% 이상 |
| | 온풍형 | 1,500 | 70% 이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축열탱크(필요시) ○ 온실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분배기(헤더),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는 난방기가격과 설치비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온실내 미설치된 목욕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 | |

[별표 3 : 제72조제4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나. 준공후 안내문

-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다. 스티커형 표지

-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〇〇〇〇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 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정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 제외사업 〉

- 예 : 안판관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별표 4 : 제60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 중요재산의 범위 | 사후관리기간 |
|---|--|
|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중물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중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 (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가등기 대상 |
| ■ 부동산의 중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랙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별표 5 : 제77조제3항 관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text{담보제공 승인한도} = \text{담보제공 대상을 감정평가액} - \text{보조금} \times \frac{\text{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text{사후관리기간(개월수)}} - \text{기 담보설정액}$$

* 담보제공 승인액은 등기서류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출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국고+지방보조금)은 담보의 제공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가 근거당을 설정한 경우는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을 대출금(용자) 등으로 기 담보설정액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관리 기관은 담보제공 승인한도액 산출 시 기 담보설정액을 차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기 담보설정액 대환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에서 기 담보설정액 차감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담보제공 승인 요청 시 기 담보설정액 대환 이행계획(대환예정일, 처리예정 금융기관 등) 및 이행확약서를 사후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대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추가 근거당 설정 등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필요)

나. 보조금 환수기준

<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text{보조금 환수금액} = \text{보조율} \times \frac{\text{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text{사후관리기간(개월수)}} \times \text{감정평가액} + \text{재산상의 이득금}$$

< 시설의 개보수, 사전철거 등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text{보조금 환수금액} = \text{보조금} \times \frac{\text{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text{사후관리기간(개월수)}} + (\text{재산상의 이득금} \times \text{보조율})$$

- 양도·양수할 경우 양수인 제3자가 잔여사후관리기간 동안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추진하고,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이 당초 사업대상자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 환수 제외 가능

[별표 6 : 제35조제9항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Ⅱ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립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립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으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 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㉒ 사업별 지원요건

- ① 공동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 ② 공동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동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㉓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이양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 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별지 제1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 | | | | | | |
|--|---------------------|-----------------------|------|------------------------------------|------|-----|
| 신청자 |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 | | 법인등록번호 | | |
| | 성명 (대표자명) |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 | 영농(림) 종사경력 | 년 | 영농교육 | 분야, 월 주 | | |
| 신청내용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 | 참여농가수 | 호 | |
| | 사업명 | | | | | |
| |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 | |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 | |
| 사업비 (천 원) | 계 |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 | | 지방비 | 자부담 |
| | | 국고계 | 보조 | 용자 | | |
| 사업내용별 규모(량) | | | | | |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입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입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div>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 | | |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 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 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 영농 규모 (ha) | 농 | | | | | | 계 |
|------------|---|-------------------|-----------|----------------|----------------|----------------|----|
| | 논 | 밭 | 과수원 | 사료포 | 목초지 | | |
| | 소유 | | | | | | |
| 입차 | | | | | | | |
| 계 | | | | | | | |
| 재배 현황 (ha) | 벼 | 사과 | 배 | 포도 | | | 계 |
| | | | | | | | |
| 시설 현황 | 개별 시설 | 관수시설 | | 저온저장고 | 일반저장고 | 선과기 | 기타 |
| | | 관정 : ha | | m ² | m ² | 대 | |
| | | 점적관수 : 스프링클러 : | | | | (톤) | |
| | 공동 시설 | 저온저장고 | 선과장 | 인공수분기 | 수송차량 | 교육장 | 기타 |
| | | m ² | 개소 (톤) | 식 | 대 (톤) | m ² | |
| | (주) : 1. 선과기의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 | | | | | |
| 기타 사항 | | | | | | |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 규격 | 단가 | 사업량 | 사 업 비 | | | | | 지방비 | 자담 | | |
|------------------------------|------|----|-----|-------|-------------|----|----|---|-----|----|----|----|
| | | | | 합계 | 정부지원(재원명기재) | | | 계 | | | 보조 | 대출 |
| | | | | | 계 | 보조 | 대출 | | | | | |
| 계 | | | | | | | | | | | | |
| 농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 자단 체등, 회사, 기타 | 공동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세부사업명 | 1/4분기 | 2/4 | 3/4 |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별지 제2호서식 : 제27조제2항 관련]

[앞면]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 | | |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업무대행자 | 소속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 생년월일 |
| 위임기간 | 주 소 | 전화번호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위임사항 |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자를 통해 처리합니다.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유의사항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 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

가. 업무용 포털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위와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 식별 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뒷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정보제공 동의 내용 | | | |
|------------|---|-----------------|--------|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정보내용 | 비고 |
| | | 입출금 정보 잔액 정보 | |
| 동의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동의서 유효기간 |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
| 정보를 제공받을 자 | 한국재정정보원(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보조사업 관리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 |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하여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계약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 제34조제6항 관련]

대출신청자료

1. 신청자

| | | | | | |
|-------------------|----------|-------------------|----------|-----------------|----------|
| 생산자단체등 의 명칭 | |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 | 참여자수 | |
| 성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남/여) |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 | |
| 신청내용 | 사업명 | | 사업비 (천원) | | |
| | 사업 규모 | | 합계 |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 |
| | | | | 지방비 | 자담 |
| 사업 예정지 | | | 계 | 보조 | 융자 |

2. 예금 및 용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금현황 | | | 용자금현황 | | | |
|------|------|----|-------|-----|------|----|
| 기관명 | 예금종류 | 금액 | 기관명 | 대출일 | 상환기일 | 금액 |
| | | | | | | |

3. 담보물(재산) 현황

| 소재지 | 종별 | 면적 (㎡) | 소유자 | 신청자와 의 관계 | 예 상 평 가 액 (백만원) | 비고 (기설정금액) |
|-----|----|-----------|-----|--------------|--------------------------------|---------------|
| | | | | | | |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서식 : 제34조제7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 | | |
|-----------------------|----------------------|-----------------|
|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
|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 |
| ⑤ 신청사업명 | | |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 ⑥ 지원받은 년도 |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⑦ 소재지 | ⑧ 면적 (㎡) | ⑨ 총사업비 (천원) | ⑩ 정부보조금 (천원)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별지 제5호서식 : 제36조제1항 관련]

사업성검토서

1. 신청자

| | | | | | | |
|----------------|----------------|----------|-----------|----|-----|----|
|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참여자수 | | | | |
| 성명 (대표자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 | | | | |
| 주소 | | | | | | |
| 신청내용 | 사업명 | 사업비 (천원) | | | | |
| | 사업규모 | 합계 | 정부지원(재원명) | | 지방비 | 자담 |
| | | | 계 | 보조 | | |
| | 사업 예정지 | | | | | |

2. 농지이용계획

| 농업진흥지역안 | | 농업진흥지역밖 | |
|---------|----|---------|----|
| 구역 | 지구 | 구역 | 지구 |
| | | | |

3. 사업검토

| 구분 | 평가 | 평가 | | | 검토의견 |
|------|---|----|---|---|------|
| | | 상 | 중 | 하 | |
| 사업능력 |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 | | | |
|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 | | | |
| 입지여건 |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 | | |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장(인)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 세부사업명 | 예산액 | 기 교부액 | 교부 요청액 | 금회 교부액 | 교부잔액 | 비고 |
|--------|-----|-------|--------|--------|------|----|
| ○○사업 | A+B | | | | | |
| (△△사업) | A | | | | | |
| (□□사업) | B | | | | | |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 다. 법령,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 인 사유 명시 필요)
-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재배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 년 ○○월 ○○일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 아래 내용은 부처별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사업시행기관에서는 보조금법,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 등을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물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이 전체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재배면적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또는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2억원 초과와 시설공사 및 5천만원 초과와 용역과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 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직접 지원받지 않아 중요재산으로 관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향후 별표 5의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식에 따른 담보제공 대상을 감정평가액 산출 시 제외됩니다.

[별지 제8호서식 : 제58조제4항 관련]

[보조사업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고로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당국에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당시에 품목 및 품목별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를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보조금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보조금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보조금으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정산완료 전까지 부등기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이를 농식품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채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발급번호 제 호 | | | | | | |
|--|--------------|----------------|------------|------------|-------------|----------------------|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 | | | | | |
| 주소 | | | | | | |
| 성명 | 생년월일 | | | | | |
| 사업내용 | | | | | | |
| 건축물 소재지 | | | | | | |
| 건축물 규모(m) | | | | 구조 | | |
| 사업계획 | 합계 (A=B+C+D) | | 자부담(B) | 보조금(C) | 융자금(D) | |
| | 1000천원 | | 400천원(40%) | 300천원(30%) | 300천원(30%) | |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 | | | | |
| 사업실적 | 공정률 (I=E/A) | 합계 (E=F+G+H+I) | 자부담(F) | 보조금(G) | 융자금(H) | 기타(I) (사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
| | 40% | 400천원 | 200천원 | 100천원 | 0천원 | 100천원 |
|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 | | | | | |
| 대출현황 | 금년 대출 신청액(L) | | 기 대출액(K) | | 대출 총액(=L+K) | |
| | 120천원 | | 천원 | | 천원 | |
| 사업대상자 결정 | 년 월 일 | | | | | |
| 현장 점검자 | (직 급) | | | (성 명) | | |
|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을 이행, 착공 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 | | | | | |
| 년 월 일 | | | | | | |
| 확인자 (인) | | | | | | |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 금년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 |
|--|--|
|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
|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 |
| :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J) - (F+G+K)) | |
|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J) - (B+G+K)) | |
| 천원 | |

[별지 제11호서식 : 제68조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 (시도 용)

수신 : ○○시·군·자치구

발신 : ○○시도

| 접수 확인 일 20.. | 소속 및 부서 | | 직 급 | 성 명 |
|-----------------------|---------------|----------|------|-----|
| | 확인자 | ○○시도 ○○과 | ○○○○ | ○○○ |
| 피화 인자 | ○○시·군·자치구 ○○과 | . | . | |
| | . | . | . | |

| | | | |
|------------------------------|---|------------------------------|---------------------------|
| 1. 사 업 명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 | |
| 2. 연간예산액 | ① 천원 | 4. 事業資金課 의 배 정 액 | 이비 배정 : ② 천원 |
| 3. 事業資金課 의 배 정 일 | 20 | | 이비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
| 5. 事業支援課 의 배 분 일 | 20 | | |
| 6. 시 도 의 재 배 분 일 | 20 | | 미 배 정 : ④ 천원 |
| 7. 시·군·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①=②+③+④. ③=⑤ | | 합계 : ⑥ 천원 | |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군·자치구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군·자치구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2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제68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신 : 대출취급기관, 사업대상자

발신 : 사업시행기관

| 접수 확인 일 20.. | 소속 및 부서 | | 직 급 | 성 명 |
|-----------------------|---------|-------------------------|------|-----|
| | 확인자 | 사업시행기관 ○○과 ○○조합 ○○부서 | ○○○○ | ○○○ |
| 피화 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1. 사 업 명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 | |
| 2. 연간예산액 | ① 천원 | 4. 事業資金課 의 배 정 액 | 이비 배정 : ② 천원 |
| 3. 事業資金課 의 배 정 일 | 20 | | 이비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
| 5. 事業支援課 의 배 분 일 | 20 | | |
| 6. 시 도 의 재 배 분 일 | 20 | | 미 배 정 : ④ 천원 |
| 7. 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 20 | | |
| 8. 사업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 명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①=②+③+④. ③=⑤ | | 합계 : ⑥ 천원 | |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대출취급기관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시행기관은 대출취급기관출취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시행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3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 제70조제5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 | | | | | | |
|---|---|---|-----------------|---|----|-----|
| 주소 | 시 | 시 | 읍 | 면 | 번지 | 통 반 |
| | 도 | 구 | 동 | | | |
| 성명 또는 명칭 |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 <p>2000. 00. 00.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된 바 있는 0000 사업의 융자한도액 00,000,000천원중 00,000,000천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업 시 행 기 관 의 장) (직인)</p> | | | | | | |

275-016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 제73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 |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 성명 또는 명칭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2. 일반현황(년 월말 현재)

| | | | | | | |
|-----------|---|-----|------|------|-------|--------|
| 경영규모 |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젓소200두) | | | | | |
| 자금조달 | 연도 | 계 | 국고보조 | 국고용자 | 지방비보조 | 자부담·기타 |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부 동 산 보 유 | 토지계 | 논 | 밭 | 과수원 | 임야 | 대지·기타 |
| | ㎡ | | | | | |
| | 건물계 | 창고류 | 공장류 | 축사류 | 주택 | 기 타 |
| | | | | | | |
| 기타주요자산보유 |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 | | | | |

|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처분 승인신청서 | | | | | | |
|--|--|-----------|--------|----|---------------------|--|
| <input type="checkbox"/> 목적외 사용 <input type="checkbox"/> 양도 <input type="checkbox"/> 교환 <input type="checkbox"/> 대여 <input type="checkbox"/> 담보의 제공 | | | | | | |
| 1. 신청자 | | | | | | |
| 구분 |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 |
| 개인 (법인대표)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 | |
| | | 주소 | | | | |
| 2. 보조내역 | | | | | | |
| 사업명 | 사업기간 | 총사업비(백만원) | | | | |
| | | 계 | 국비 | | 지방비 | |
| | | 보조 | 융자 | 보조 | 융자 | |
| 지원시설 현황 | | 용도 또는 명칭 | 규격(단위) | | 사후관리기간 | |
| 토 지 | | | ㎡ | | yyyymmdd ~ yyyymmdd | |
| 시 설 | | | ㎡ | | yyyymmdd ~ yyyymmdd | |
| 설 비 | | | 식 | | yyyymmdd ~ yyyymmdd | |
| 장 비 | | | 대 | | yyyymmdd ~ yyyymmdd | |
| 3. 승인신청내용 | | | | | | |
| <i>(예시)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한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 300백만원 근저당 설정 * 승인신청 목적 및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작성 보조사업자가 대한 요청 시 관련 서류 제출 여부 포함</i> | | | | | | |
| 4. 지자체 검토의견 | | | | | | |
| 시군구 | ○ 보조사업자의 발전가능성(재무현황, 경영능력, 보조시설 관리·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의견 제시(승인 또는 반려)) | | | | | |
| 5. 첨부서류 | | | | | | |
| ① 보조사업 정산결과 ②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록증(시설, 장비) 등 소유자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내역(당해 사업에 한함) 및 승인신청 대상 재산 상세현황(관련 사진대장 포함) ④ 시설물의 감정평가액(담보제공시 해당하며, 금융기관의 감정결과도 가능) ⑤ 승인에 따른 향후 계획서 * (예시) 담보제공 승인시 대출금 활용계획 등 ⑥ 신청자의 신용평가서 또는 별지 제4호 신용조사서(담보제공시 해당) ⑦ 대한 이행계획서 또는 이행확약서(보조사업자의 대한요청시) | | | | | | |

※ 자료작성시 참고사항

< 지원시설 현황 >

- 시설 : 공장, 창고, 축사, 퇴비사, 온실 등과 같은 건축물, 구조물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
- 설비 : 시설 내 고정·설치되어 있거나 인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기계류(예: 숙성탱크, 발효탱크, 관정, 공조시설 등)
- 장비 : 자체동력 또는 바퀴 등이 달려있어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기계류(예: 광역방제기, 트랙터, 트레일러, 트럭 등)

< 용도·명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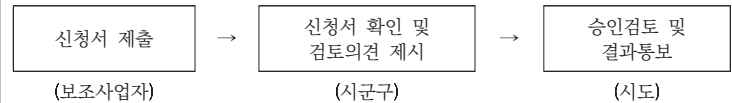
- 토지는 주요 용도(체험관 등)를 기재하고, 시설, 설비, 장비는 각각의 명칭 기재

< 규격(단위) >

- 시설 : 바닥면적(㎡)을 기재하되, 필요시 층수, 연면적 등 병기
- 설비·장비 : 설비, 장비를 대표하는 단위(대, 식 등)를 기재
- 토지 : 면적(㎡)으로 표시하되, 필요시 필자수 등 병기

※ 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

- 승인절차



- * 필요 시 농식품부 및 양청의 사업담당과와 협의, 시도(또는 시군구)에서는 그 결과를 'ㅇ나라 도움'을 통해 등록 및 주기적인 관리
- * **결과통보 절차** : 시도 → 시군구 → 신청인(보조사업자)
- * 사업추진체계상 자치체가 없고 개별 사업시행자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농식품부 및 양청의 사업담당과에서 신청서 확인·승인검토·결과통보 등의 절차를 수행토록 함

- 사후관리 절차

- 보조사업자는 승인 결과에 따른 타 용도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최종 처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식품부에 결과를 송부

< 처리결과보고(안) >

| 승인신청내용 | 승인내용 | 처리결과 | 비 고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 제80조제3항 관련]

1. 부정수급 기본정보

| 보조사업 개요 | | | |
|------------|---|--------|--------------|
| 사업명 | 00000사업 | 지원연도 | '2015.~ |
| 사업비 | ▶ 총계 : 123,400,000천원(국고 34,567,000) ▪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 | |
| 보조사업자 | | | |
| 법인명 | 00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 |
| 성명 | 홍길동 | 주민번호 | 000000000000 |
| 부정수급 관련 정보 | | | |
| 부정수급 확인 경위 | * 01.23일자 000의 신고에 의해 적발 등 구체적으로 서술 | | |
| 부정수급 내용 | * 농업인 000이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등 ▪ 이에 대해 보조사업 대표자에 대해 사실확인서 징구 | | |
| 기타 | * | | |

2. 제재 검토 기본정보

|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정보 | |
|------------------------|-------------------------------|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 480천원(국고 480천원) |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결정 내역 | *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추진 등 |
| 제재부가금 감경·면제사유 | |
| 보조사업 수행 배제 관련 정보 | |
|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에 대한 의견 | * |
| 보조사업 수행배제 예외 사유 | |
| 명단공표 관련 정보 | |
| 명단공표 조치에 대한 의견 | * |
| 명단공표 제외 사유 | |

부 업 편 야



| | | | | | | | | |
|-------------------|---|---------------------|--------|-----------|-------------|-------------------|-----|----|
| 세부사업명 | 종자산업기반구축 | | |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
| 내역사업명 |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 | | | 예산 (백만원) | 6,489 | | |
| 사업목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 지원 | | | | | | | |
| 사업 주요내용 | ○ 종자보급 체계가 미비한 품목(씨감자, 고구마종순, 특수미, 약용작물 종자, 버섯종균, 육묘, 딸기종묘, 과수묘목, 화훼종묘, 녹비·사료작물, 종묘삼, 마늘종구)에 대한 종묘 생산기반(시설·장비) 지원 | | | | | | |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 | | | | | |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자체 및 농업법인 / 국고 30~50%, 지방비 30~50%, 자부담 40% | | | | | | | |
| 지원한도 |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2~30억원 차등지원 - 대규모(2년) : 20~30억, 중규모(1~2년) : 8~20억, 소규모(1년) : 2~8억 | | | | | | | |
| 재원구성 (%) | 국고 | 30 ~50 | 지방비 | 30 ~50 | 용자 | | 자부담 | 4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
| | 합 계 | 18,214 | 17,303 | 17,303 | 14,722 | | | |
| | 국 고 | 7,565 | 7,210 | 7,210 | 6,489 | | | |
| | 지방비 | 6,665 | 6,344 | 7,210 | 6,489 | | | |
| | 자부담 | 3,984 | 3,749 | 2,480 | 1,744 | | | |
| 담당기관 | | 담당과 | | 담당자 | | 연락처 | | |
|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 | 종자생명산업과 시도 사업담당과 | | 양미희 - | | 044-201-2482 - | |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9~10월) | | | 사업시행기관 | | 자치단체 | |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 | | | | | |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생산자단체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호 관련 [별표6] “농업법인의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 예정 부지에 종자생산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
 - * 사업부지 변경 제한 : 사업자선정 후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함. 단, 당초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형질변경이 불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되므로 사업 신청 전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은 사업자 귀책사유에 해당됨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종자업 등록

-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는 제외)

○ 육묘업 등록

-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규정에 따른 육묘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는 제외)

○ 농업경영정보 등록

- 농업경영체가 농림 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및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등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소속 시·군(사업자가 시·도인 경우 시·도)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기준

| 지원분야 | 재배면적(이상) | 지원분야 | 재배면적(이상) |
|------------|----------|-------------|----------|
| ○ 씨감자 | 300ha | ○ 과수 묘목 | 500ha |
| ○ 고구마 종순 | 300ha | ○ 화훼 종묘 | - |
| ○ 약용작물 종자 | 500ha | ○ 녹비작물 종자 | - |
| ○ 벼 첫 중근 | 연면적 2ha | ○ 종묘삼 | 200ha |
| ○ 육묘(실생접목) | - | ○ 마늘 종구 | 300ha |
| ○ 딸기 종묘 | 50ha | ○ 특수미·맥류·잡곡 | - |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재배면적 기준이 사업신청 필수조건은 아니며, 동일 분야 심사시 가점 등 반영

3. 지원대상

○ 지원내역

- 시설 : 유리온실, 비닐온실, 망실하우스, 조직배양실, 종근배양실, 저온저장고, 작업장, 양액 재배시설, 건조시설, 정선시설, 기타 종자·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 장비 :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배지배양기, 종근접종기, 지게차, 동력운반차, 발아시험기, 종자·묘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비, 기타 종자·묘 증식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설·장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시설설치 지원기준(단가)

| 시설구분 | 기준단가 | 비 고 |
|--------|--|---|
| 유리온실 | 600천원/m ² (1,000m ² 기준) | □ 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구조물, 피복(유리), 전기시설, 천측창 자동개폐장치, 난방, 차광, 환기 팬, 포그시스템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
| 비닐온실 | 90천원/m ² (1,000m ² 기준) | □ 비닐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구조물, 피복(비닐), 커튼, 자동개폐장치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 자재 소요내역 및 시설단가는 (사)한국농업시설협회(www.akaf.or.kr) 참조 |
| | 50천원/m ² (10,000m ² 기준) | |
| 온실내부시설 | 90천원/m ² | □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용수 공급시설, 제습시설, 살수 장치 등 종묘생산에 필요한 온실(유라비닐) 내부시설 설치 비용 |
| 망실하우스 | 40천원/m ² (10,000m ² 기준) |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
| 조직배양실 | 2,000천원/m ² (330m ² 기준) | □ 다음의 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 배양실, 멸균실, 무균실, 실험실, 검정실, 기계실, 기타 부속 시설 등 |
| 종균배양실 | 650천원/m ² (330m ² 기준) | □ 다음의 내부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 전기시설, 소방시설, 냉장·냉동시설, 냉·난방시설, 가습시설, 환기시설, 건조시설 등 |
| 저온저장고 | 1,000천원/m ² (330m ² 기준) | □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기준단가 적용(99~660m ² 기준) |
| 정선시설 | 1,700천원/m ² (330m ² 기준) | □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 기준단가 - 대략정선기, 정밀정선기, 저장빈, 포대봉합기 등 |

- 주) 1. 정해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하되, 설치규모·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적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2.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발급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구비(소관 사도에서 타당성 검토)
3.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장비는 업체 견적, 시중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중요재산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
| ■ 부동산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 10년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등) | 10년 | |
|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 7년 | |
| ■ 부동산이 아닌 시설 | 7년 | |

- 주) 1.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2. 보조시설 관리대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 지원제외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 시설·장비 임차료, 종자·상토구입비 등 운영자금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 간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상위단계부터 보급종까지 생산하는 사업 추진 시, 1ha이상 대면적이 소요되는 종묘생산용 하우스 설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과 협약(10년 이상)을 체결하고 자부담(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을 추가하여 추진 가능(단, 사업비 전체의 30%이내)

○ 개소당 지원기준

| 구분 (사업기간) | 총 사업비 (국고·지방비·자부담) | 지원분야 | 비고 |
|---------------|-----------------------|--|--|
| 대규모 (2년) | 20~30억 | <식량> □ 고구마 종순 □ 씨감자 □ 특수미·맥류·잡곡 | - 사업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 신청 가능 - 육묘(실생·접목)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신청 가능 |
| 중규모 (1~2년) | 8~20억 | <원예> □ 과수 묘목 □ 딸기(원원묘, 원묘·보급묘) □ 마늘 종구 □ 화훼 종묘 | |
| 소규모 (1년) | 2~8억 | <특용·기타> □ 약용작물 종자 □ 버섯 종균 □ 녹비·사료작물 종자 □ 종묘삼 □ 육묘(실생·접목) (생산자단체) | |

- 주) 1.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부담비율 준수), 지방비 및 자부담 추가를 통한 규모확대 가능
 2.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공모를 통해 사업비 조정신청 가능(최소 지원규모의 70% 이상)

3. 1년 추진사업의 기간연장(1년→2년) 및 2년 추진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분 비율은 사업대상자 (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할 수 있으며, 2년 사업의 경우 이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실행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4. 버섯종균의 경우 소모성기자재(회수가능 종균접종용기 등)는 총사업비의 5% 이내 범위에서 허용
5. 육묘는 공정육묘시스템(파종시스템, 발아실, 접목로봇, 활착실 등) 구축 신청자 우선 선정
6. 일반 벼 육묘장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3. 지원대상」,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에 명시된 기준 적용

유통원예분야



| | | | | | | | | |
|---------------------------|---|---------------------------|--------|---------------------------|--------------|-------------------|-----|----|
| 세부사업명 | 발작물산업육성사업 | |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 |
| 내역사업명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자치단체) | | | 예산 (백만원) | 10,100 | | | |
| 사업목적 | 발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 | | | | | | |
| 사업 주요내용 |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맞춤형 지원 | | | | | | |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3 | | | | | | | |
| 지원자격 및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 요건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수립·승인된 지자체(기존에 승인된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수산업발전계획은 기한만료시까지 효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류(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 포함) 주산지 시·군(과수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 100ha 이상인 시·군) - 특화수준 또는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사업대상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5% 이상이어야 함) <p>※ 단, 먹거리 계획 협약이 체결된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계획으로 평가 가능</p> <p>※ 기타 상세요건은 사업시행지침 참고</p> | | | | | | | |
|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 | | | | | | | |
| 재원구성(%) | 국고 | 50 | 지방비 | 40 | 융자 | - | 자부담 | 1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이후 | | | |
| | 합 계 | 20,000 | 21,500 | 20,200 | 미정 | | | |
| | 국 고 | 10,000 | 10,750 | 10,100 | 미정 | | | |
| | 지방비 | 8,000 | 8,600 | 8,080 | 미정 | | | |
| | 자부담 | 2,000 | 2,150 | 2,020 | 미정 | | | |
| 담당기관 | | 담당과 | | 담당자 | | 연락처 | | |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 | | 유통정책과 친환경유통과 등(직제에 따름) | | 사무관 김아림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 | 044-201-2219 - | |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0월까지), 수시 | | | 사업시행기관 | | 자치단체 | |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 | | | | | |

- ☞ 발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조직(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에게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공정 육묘장, 농기계류, 시설·장비 및 역량강화 등 맞춤형 지원

1. 사업대상자

- 사업 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시·도)

- 발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 계획수립 및 해당 품목 생산자단체(개별 경영체)를 시군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

- * 공동경영체 : 발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상품화(공동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조직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3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및 과수발전계획은 기한 만료시까지 유예)

- 선정된 원예산업종합계획에는 육성 품목과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시행령」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원예농산물(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를 포함한 채소류) 주산지

- 원예농산물(과수류)은 과수산업발전계획(농식품부 승인)에 포함된 시·군 중 당해 주 품목의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인 시·군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2014년 6월 30일 기준)〉

| 품목 | 단지 지정 기준 | | |
|------|----------|---------------|------------|
| | 범 위 | 면 적 | 출하량(생산량) |
| 봄배추 | 시·군·구 | 150ha 이상 | 12,840t 이상 |
| 여름배추 | 시·군·구 | 450ha 이상 | 15,850t 이상 |
| 가을배추 | 시·군·구 | 300ha 이상 | 30,860t 이상 |
| 겨울배추 | 시·군·구 | 500ha 이상 | 32,350t 이상 |
| 봄 무 | 시·군·구 | 70ha 이상 | 6,020t 이상 |
| 여름무 | 시·군·구 | 250ha 이상 | 7,060t 이상 |
| 가을무 | 시·군·구 | 150ha 이상 | 11,110t 이상 |
| 겨울무 | 시·군·구 | 1,500ha 이상 | 92,350t 이상 |
| 고 추 | 시·군·구 | 700ha 이상 | 1,620t 이상 |
| 마 늘 | 시·군·구 | 1,000ha 이상 | 12,530t 이상 |
| 양 파 | 시·군·구 | 800ha 이상 | 52,600t 이상 |
| 대 파 | 시·군·구 | 250ha 이상 | 6,740t 이상 |
| 생 강 | 시·군·구 | 100ha 이상 | 1,280t 이상 |
| 당 근 | 시·군·구 | 100ha 이상 | 3,600t 이상 |
| 참 깨 | 시·군·구 | 250ha 이상 | 100t 이상 |
| 땅 콩 | 시·군·구 | 100ha 이상 | 240t 이상 |
| 버섯류 | 시·군·구 | (연면적) 30ha 이상 | - |
| 특작류 | 시·군·구 | 50ha 이상 | - |

○ 주산지 요건 미 충족 시 특화수준 또는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특화수준 : 재배면적이 50ha 이상이며, 신청품목의 특화계수가 전국 대비 1 이상이거나 관할 시도 대비 2 이상인 시·군(산출 면적은 전년도 기준)

* 통계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할 시 선정 가능

□ 전국 대비 △△군 양파 특화계수

$$\{(\Delta\Delta\text{군 양파 생산액}) \div (\Delta\Delta\text{군 농업 생산액})\} / \{(\text{전국 양파 생산액}) \div (\text{전국 농업 생산액})\}$$

□ ○○도 대비 △△군 양파 특화계수

$$\{(\Delta\Delta\text{군 양파 생산액}) \div (\Delta\Delta\text{군 농업 생산액})\} / \{(\text{○○도 양파 생산액}) \div (\text{○○도 농업 생산액})\}$$

* 공식 통계가 없을 경우, 품목 생산액 대신 최근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재배면적 적용, 농업생산액 대신 최근 통계자료의 경지면적을 적용

- 준 주산지 : 일정기준에 해당되어 해당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주산지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군(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주산지 요건을 갖추도록 생산 규모 확대조건)

* 전년도 재배면적이 주산지 기준의 80%이상이며 농가 조직화 수준,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시·군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지역 농발계획') 상 원예작물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조직 요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인 조직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단, 제28조 및 제63조에 따른 지원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통합마케팅조직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등)
 - 단, 사업종료 전까지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 ※ 시군 내 통합마케팅조직이 없더라도 사업 품목의 지역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취급량이 50% 이상 또는 조직화 취급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조직 단위로 신청 가능
 - 공동경영체 해당품목 사업규모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5% 이상을 차지할 것
- ※ 단, 먹거리 계획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계획으로 평가 가능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원예농산물(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를 포함한 채소류)
 - * 과수는 해당 지역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대상 품목
 -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특화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 * 식량작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역량강화 : 생산능가 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총 사업비의 5%이상)
 - 교육 : 농가조직화, 재배·생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국내 선진지 견학비용 등
 - * GAP 인증 취득에 필요한 농가교육만 지원(인증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가능)
 - 컨설팅(자문포함)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 시설설치(인허가, 설계방향, 시설 도입·배치 등), 경영(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방안 등) 등
 - * 단순 경영컨설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경영체 업무지원, 성과평가자료 관리·작성 등)
 - * 초기·정착·심화단계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1년차에 반드시 포함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시 판단하되 과잉 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는 사적 소유가 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가 직접 관리
 - * 기계류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관리
 -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정육묘장, 하역·상차 등을 위한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
 - ②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계식 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장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장비 등
 -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시 판단하되 과잉 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
 - * 감리비 및 토목(포장)공사비는 사용 가능하나, 설계비(인허가비포함), 부지매입비 및 부지기반정비(절성토·성토·옹벽 등) 비용은 사용 불가
 - * 사업예정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한국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18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

* 1년차 사업 종료 전 지원 대상 경영체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2년차 사업비 조정 가능, 1년차 평가 결과 조직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2년차 사업비 지원 유예(1회) 또는 중단

* 전년도 연차평가 결과 2년차 사업비가 지원 유예된 공동경영체에 대해서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형태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1년차 1.5억, 2년차 8.5억)

| | | | | | | |
|-------------------|---|--------|--------------------|-------------|--------------|----|
| 세부사업명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 |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 내역사업명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 | | | 예산 (백만원) | 3,500 | |
| 사업목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 | | | | |
| 사업 주요내용 | 시설원에 분야 ICT 융복합된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 | | | |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 | | |
|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 | | | |
| 지원한도 | 사업비 상한액: 200백만원(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집행 | | | | | |
| 재원구성(%) | 국고 | 30 | 지방비 | 30 | 자부담 | 4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 컨설팅 : 국고 80%, 자부담 20% | | | | | |
| | (단위 : 백만원) | | | | | |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 합 계 | 21,000 | 21,000 | 21,000 | 10,500 | |
| | 국 고 | 4,200 | 4,200 | 4,200 | 3,500 | |
| | 지방비 | 6,300 | 6,300 | 6,300 | 3,000 | |
| | 용 자 | 6,300 | 6,300 | 6,300 | - | |
| 자부담 | 4,200 | 4,200 | 4,200 | 4,000 | | |
| 담당기관 | 담당과 | | 담당자 | | 연락처 | |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은철 | | 044-201-2256 |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스마트농업지원실 | | 실 장 원주연 과 장 정명종 | | 044-861-8791 |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 | 사업시행기관 | | 자치단체 |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 | | | |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1.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총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 단, 고정식 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자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결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₂,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₂,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동시 설치 시에 한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신청 가능)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_화재 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 2018)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 2018)을 따라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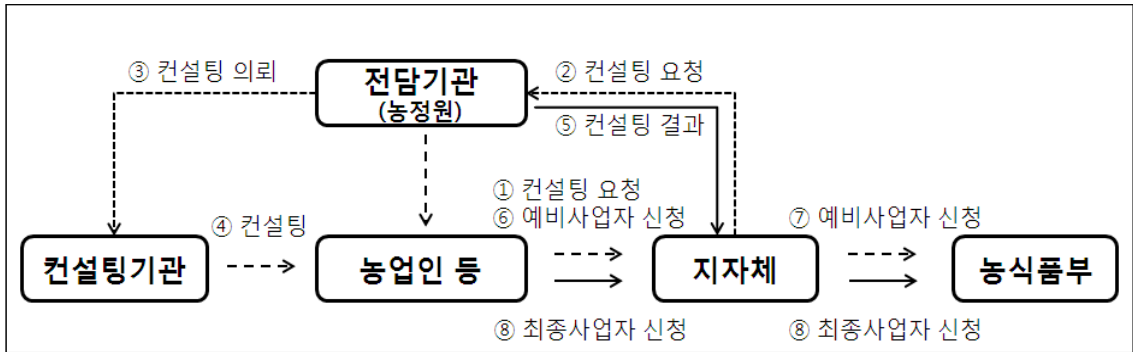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 지원
 -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물품납품 또는 공사시공 업체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 컨설팅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 200백만원(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 ICT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대상)와 제어장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2월)

시·군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신청 시 시·군은 컨설팅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 컨설팅기관에서 컨설팅 시행 후 제출한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사전 점검)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21년부터 적용)
 -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시·군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3~8월)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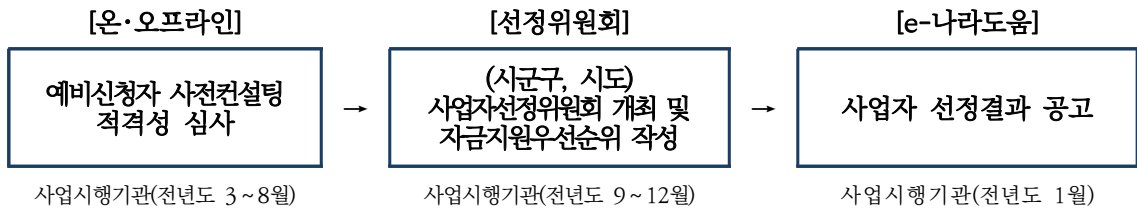
컨설팅 전담기관

-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기관을 선정(전년도 상반기)
 - ICT 융복합 시설의 규격·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안내
 - ICT 시설 활용도 제고 및 효과 확산을 위해 농가, 지자체 담당자 등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실시(연중)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은 농업인 등 대상으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통보(전년도 8월)
 - 컨설팅 시 농업인 등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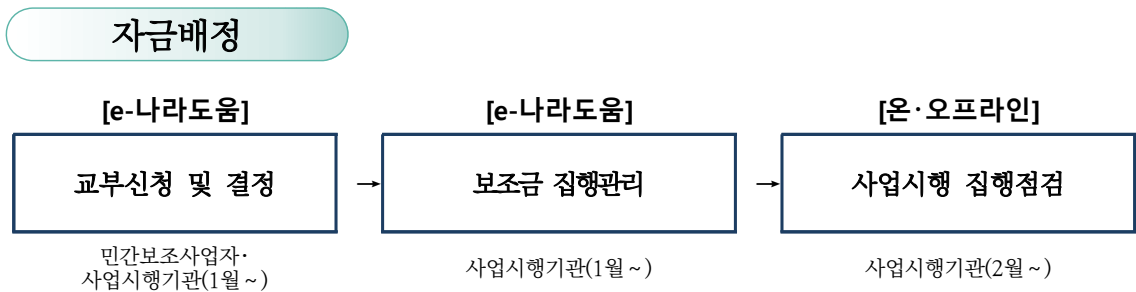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 통지서)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용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를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5-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 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6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 중요재산 | 사후관리기준·기간 | | 처분제한기준 |
|-----------|-----------|-----|--|
| ■ 설비시설 | 준공일 | 10년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 ■ 주요기계·장비 | 납품일 | 5년 |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농식품부(농정원)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4)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게 처분 승인 요청

컨설팅 전담기관

-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 현지방문·점검

컨설팅기관

- 사업대상자별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에 제출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 제한
 -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Ⅲ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0.3월) → 사전컨설팅(~'20.8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0.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0.12월) → 사업추진('21.1월~)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0. 8월
- 신청자격 : '2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 '21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0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보급)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 | | | | | |
|----------------|----------------|--------|----------------|-----------|----------------|
| 단지(단체)명 | | 대표자명 | | | |
| 주소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 | | | |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모사전송(FAX) | |
| 회원농가 수 | 호 | | 재배품목 | | |
| 단지규모 | m ² | 시설재배규모 | m ² | 수출참여규모 | m ² |
| 기 지원액 (백만원) | 지원연도 | 년 | 사업명 | | |
| | 계 | 국고 | 용자 | 지방비 | 자부담 |
| | | | | | |

나. 생산현황
작성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 구 분 | 재배면적(m ²) | 생산량(톤) | 소득액(백만원) |
|-------|-----------------------|--------|----------|
| 2017년 | | | |
| 2018년 | | | |
| 2019년 | | | |

2. 시설 현황

| | | | | | |
|----------|---------------------|-------|---------|----------------|----|
| 시설면적 | m ² | | 사업신청 면적 | m ² | |
| 시설종류 |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 | 온실형태 | (예시) 5연동, 10동 | |
| 시설위치 |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 | | | |
| 부대시설 | 양액시설 | 냉난방시설 | 보온시설 | 통합제어 | 기타 |
| 형태(종류) | | | | | |
| 제조사(모델명) | | | | | |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 종류 | 세부내역 | 소요액 (백만원) | 추진시기 (기간) |
|---------|--------------------------------------|--------------|--------------|
| 외부환경 센싱 | 온습도, 풍향, 풍속, 감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 | |
| 온실내부 센싱 | 온습도, CO ₂ , 토양, 양액 등 센싱장비 | | |
| 구동기 제어 | 천창, 측창, 보온커튼, 난방비, 유동팬 등 제어장비 | | |
| 통합제어 | 통합제어판, 통합제어시스템 등 | | |
| 온실관리 | PC, 원격제어, 모바일시스템 등 | | |
| 모니터링 |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 | |
| 기타 | 시설비, 양액제어시스템 등 | | |
| | 합계 | | |

(2쪽에 계속)

(2쪽)

나. 세부계획

| 구분 | 세부내역 | 단가(천원) | 개수 | 합계(천원) |
|-----------|------|--------|----|--------|
| 합 계 | | | | |
| ○ 외부환경 센싱 | | | | |
| - | | | | |
| ○ 온실내부 센싱 | | | | |
| - | | | | |
| ○ 구동기 제어 | | | | |
| - | | | | |
| ○ 통합제어 | | | | |
| - | | | | |
| ○ 온실관리 | | | | |
| - | | | | |
| ○ 모니터링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 구분 | 사업량 | 사 업 비 (백만원) | | | | |
|-----|----------------|-------------|----|----|-----|-----|
| | | 계 | 국고 | 응자 | 지방비 | 자부담 |
| 합계 | m ² | | | | | |
| 농가명 | | | | | | |
| 농가명 | | | | | | |
| 농가명 | | | | | | |
| 농가명 | | | | | | |
| 농가명 | | | | | | |

(3쪽에 계속)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 번호 | 농가명 | 주소지 | 연락처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재배 면적 (m ²) | 시설 | | 재배 품목 | 예상량(톤) | |
|----|-----|-----|-----|---------------|-------------------------------|----|---------------------|----------|--------|----|
| | | | | | | 종류 | 면적(m ²) | | 생산 | 수출 |
| 계 | 명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11 | | | | | | | | | | |
| 12 | | | | | | | | | | |
| 13 | | | | | | | | | | |
| 14 | | | | | | | | | | |
| 15 | | | | | | | | | | |
| 16 | | | | | | | | | | |
| 17 | | | | | | | | | | |
| 18 | | | | | | | | | | |
| 19 | | | | | | | | | | |
| 20 | | | | | | | | | | |
| 21 | | | | | | | | | | |
| 22 | | | | | | | | | | |
| 23 | | | | | | | | | | |
| 24 | | | | | | | | | | |
| 25 | | | | | | | | | | |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사업명 | 총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재정용자 | 수익자부담 |
|--------|------|----|-----|------|-------|
| 세부사업명 | | | | | |
| (△△사업) | | | | | |
| (□□사업) | | | | | |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세목 |
|-------|------|------|------|-------|--------------|
| 120 | 123 | 3000 | 3031 | 306 | 330-01 |
| 교통및물류 | 도시철도 | 0000 | 0000 | 00000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 세부사업명 | 예산액 | 기 교부액 | 교부 요청액 | 금회 교부액 | 교부잔액 | 비고 |
|--------|-----|-------|--------|--------|------|----|
| ○○사업 | A+B | | | | | |
| (△△사업) | A | | | | | |
| (□□사업) | B | | | | | |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2.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 인 사유 명시 필요)
-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별지 제5-2호 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 | 계약번호 제 | 호 |
|--|--------------|----------------------------|------------------|
| | | 공고번호 제 | 호 |
| 계약자 | 발주처 | | |
| | 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소 |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연대보증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소 |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계약내용 | 공사명 | | |
| | 계약금액 | 금 | 원정(W) |
| | 총공사부기금액 | 금 | 원정(W) |
| | 계약보증금 | 금 | 원정(W) |
| | 현장 | | |
| | 지체상금율 | % | |
|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 |
| | 착공연월일 | · · · | |
| | 준공연월일 | | |
| 기타사항 | | | |
|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 | | |
| 공종 | 공종별 계약 금액 |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 금 원정 | |
| | | ()% 금 원정 | |
| | | ()% 금 원정 | |
| <p>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붙임서류 :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right;">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 연대보증인 (인) </p> | | | |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 | | | | |
|--|----------------------|--|---------------------|--------------|--------------|
| 일 반 현 황 | 선정사업 | <input type="checkbox"/> 시설원에현대화, <input type="checkbox"/> ICT융복합확산, <input type="checkbox"/>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 | | |
| | 유형 |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 | | |
| |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남/여) | |
| | 재배작물 (사육축종) | | 재배규모 (사육두수) | (㎡, 마리) | |
| | 소속 농가 수 | 호 | 사업참여 농가 수 | 호 | |
| | 주소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 | | |
| | 일반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사 업 계 획 | 사업명 | 사업내용 | 규모·수량 (㎡, 대, 개소) | 소요액 (백만원) | 추진시기 (기간) |
| | 당초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 | | | | |
| 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 | | | | |

사업자 선정기준표(ICT 융복합 확산)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노후 온실 개보수와 동시 추진 (여/부),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여/부)

| 시군 | 사업 신청자 | 시설조건(40점) | | 활용조건(40점) | | | 가점 | 합계 (100점) |
|----|-----------|-------------------|--------------------|-------------------|--------------------|-------------------|----|--------------|
| | | 온실 조건 (25점) | ICT 시설 (15점) | 시설 활용 (20점) | 사업 지속성 (10점) | 부대 환경 (10점) | | |
| | | | | | | | | |

가점조건(중복 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5점):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5점):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점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점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 | |
|------------------|------------------|
|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
| 충족 () / 미충족 () | 대상 () / 미대상 () |

< 평가 참고사항 >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사업계획 신청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고, 시·도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구 농정심의회)에서 공개심의
 -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 구간 내 항목 추가·변경 가능
- 시설조건
 - 온실조건: 온실의 종류, 규모화, 작목, 재배기간 등 ICT 융복합의 적합성 정도
 - ICT 시설: 온실내 자동화 정도, 기 도입된 ICT 융복합 시설의 보유 정도
- 활용조건
 - 시설 활용: ICT 시설장비 활용 능력 정도 및 시설운영, 정보화 교육 수료 경력 여부 등
 - 사업 지속성: 농업후계인력 확보, 토지매입 및 시설투자 계획 여부 등
 - 부대환경: 작업장의 상황 정도(전원공급, 무선통신 및 PC설치·운영 가능상황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 |
|--|
| 사 업 개 요 |
|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 1. 사 업 명 : |
| 2. 사 업 자 : |
| 3. 지원규모 : |
| 4. 재 원 : |
| 5. 사 업 비 : |
| 6. 사업기간 : |
| 사 업 자 ○ ○ ○ |

←————— 110cm —————→

↑
80
cm
↓

나. 준공후 안내문

| |
|--|
|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1. 사 업 명 : |
| 2. 사 업 자 : |
| 3. 시설규모 : |
| 4. 재 원 : |
| 5. 사 업 비 : |
| 6. 사업기간 : |
| ○○○○년 월 일 |

←————— 30cm —————→

↑
21
cm
↓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 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리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 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 | | | | | | | | | |
|-------------------|--|---------|---------|--------|--------------------|-------------|--------------|-------|--|
| 세부사업명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 | |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
| 내역사업명 |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 | | | 예산 (백만원) | 24,156 | | |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 | | | | | | | |
| 사업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과 에너지절감 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설치 및 에너지진단 컨설팅지원 | | | | | | | |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폐열의 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 | | | | | |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 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 | | | | | | | |
| 지원한도 |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1,000㎡이상 30,000㎡ 미만 ○ 그 외 시설 :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 | | | | | | |
| 재원구성(%) | 국고 | 20~60 | 지방비 | 20~30 | 용자 | 10~30 | 자부담 | 10~20 |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 에너지진단 컨설팅 국고 100%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 |
| | 합 계 | 116,550 | 103,190 | 83,865 | 62,755 | | | | |
| | 국 고 | 33,952 | 30,304 | 27,273 | 17,385 | | | | |
| | 지방비 | 31,927 | 28,053 | 22,572 | 17,640 | | | | |
| | 용 자 | 28,439 | 24,789 | 19,797 | 16,345 | | | | |
| 자부담 | 22,232 | 20,044 | 14,223 | 11,385 | | | | | |
| 담당기관 | | 담당과 | | | 담당자 | | 연락처 | | |
| 농림축산식품부 | | 원예경영과 | | |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은철 | | 044-201-2256 | | |
| 한국농어촌공사 | | 첨단기술사업처 | | | 처 장 김희중 부 장 박승표 | | 061-338-5701 | |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 | | | 사업시행기관 | | 자치단체 | |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 | | | | | | |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1. 사업대상자

-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총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또는 재배 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 단, 고정식 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 지원 가능
 -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돼지·닭·오리 사육 또는 사육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완료
 - * 신규 축사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농업인의 교육·연구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 농업인과 결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 고정식 재배시설에 과거 농진청, 농식품부, 산자부 등의 지원 사업으로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이 해당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결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가축정보(시설주소, 시설면적, 축종, 사육규모)

우선지원요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장·군수는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고효율 에너지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일반지원요건

< 공통사항 >

-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 또는 보조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
- 확보 부지(규모·위치 등),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단열기준 등이 사업추진에 적정한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시 확인(지열·공기열·폐열시설 설치 시)

가. 사업부지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 단, 부득이한 사유(예: 부부, 직계가족, 동일 경영체 소속 등)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사업신청자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에 한해 신청 가능(주민 등의 시설 설치 동의서 등 증빙자료 제출)
 - * 토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시 수평밀폐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160% 이상, 수직 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업신청자가 사전에 확보 완료
 - 별도의 매설 공간이 없는 온실은 온실 내부에 굴착장비가 투입되어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해야 함 * 작물 재배·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시 사업신청자는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이송관로 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 완료

< 지원 제외대상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내 토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나. 사업비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사업비(자부담-국고용자)를 이미 확보했거나, 사업자 선정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신용조사서 등 증빙자료 제출)

다.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 면적 1,000㎡ 이상
 - * 단, 단독형 파이프식 온실은 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변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 인삼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무창계사 :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업인·농업법인별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 1,000㎡ ~ 30,000㎡
 - * 단, 지원설비의 용량은 최대 20,000㎡ 기준 용량 이하로 제한

라. 고정식 재배시설 단열기준(지열-공기열-폐열 시설만 해당)

- 농작물 재배온실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패널구조형 원예특작시설
 - 무창계사·돈사·오리사, 버섯재배사 등 원예특작시설의 패널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또는 동등한 단열성능(열관류율) 이상

마. 재배품목

○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작물로의 변경은 불가)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2) 고려,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바.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 : 최대부하용량의 90% 미만으로 지원된 시설

* 적용대상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성능개선 : 하자관리기간(준공 이후 3년) 종료된 시설 또는 유류대비 에너지비용 절감률*이 50% 미만인 시설

* 현재 냉난방비용(연간 전력요금) / 유류난방 가정 시 난방비용

** 적용대상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전기·유류 난방기 지원 제외

| 시설 구분 | 지원 범위 |
|--------------|---|
| 지열·폐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폐열 이송관로,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 축산시설은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
| 지열·폐열 (성능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관리기간 종료 이후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보수(교체)를 통해 회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 *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 주요장비는 회복 불가능한 파손·고장을 제외하고 보수만 가능(교체 불가) |
| 목재펠릿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설치 인건비, (온수) 축열탱크(필요시) ·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등 |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 냉난방시설

| 시설 구분 | 지원 범위 |
|-------|---|
| 공기열 | ·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닛, 제어시설, 축열조 탱크 등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

* 총사업비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다겹보온커튼 또는 보온덮개는 중요재산에서는 제외되나, 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에만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비율

| 구분 | | 국고 | | 지방비 | 자부담 |
|-----------|----------|-----|-----|-----|-----|
| | | 보조 | 용자 | | |
| 에너지절감시설 | | 20% | 30% | 30% | 20% |
| 신재생 에너지시설 | 목재펠릿난방기 | 30% | 20% | 30% | 20% |
| | 신재생에너지시설 | 60% | 10% | 20% | 10% |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용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폐열 예외)

- 용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 기준단가

< 공통사항 >

-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 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가.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규설치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적용단가
- 기준단가

| 설비형식 | | 기준단가 | 히트펌프 적용기준 |
|------|-------------|---------------------------|--|
| 지열 | 수직밀폐형 | 1,638천원/kW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 에너지설비(KS) 인증 제품 사용 |
| | 수평밀폐형 | 1,260천원/kW | |
| | 개방형(SCW형) | 1,508천원/kW | |
| 폐열 | | 1,280천원/kW~ 1,520천원/kW | |
| 공기열 | 공기 대 공기(공급) | 617천원/kW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제13조에 따라 신고 된 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 | 공기 대 물(공급) | 865천원/kW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 * 폐열 재이용시설은 열원이송거리에 따라 적용단가를 조정 가능
-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계측시스템(전력량계, 부하량 및 열량측정장치) 구축을 위한 설비 반영 시 기준단가의 5%까지 가산 가능
- * COP(성적계수) :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나.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지열·공기열·폐열)

- 지역별 시설 부하용량(kW)* 기준 대비 부족한 용량을 지원

* 온실 부하계산결과를 기준하여 부족한 용량(히트펌프 정격 난방용량 기준) 또는 지열교환기 전산해석 결과 부족한 용량(지열고갈 등으로 인한 용량 증설)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기보급 시설용량(kW)] × 적용단가

○ 성능개선(지열·폐열)

- 과거 지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 보급 이후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보수 및 교체 지원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 사업신청 시점에 실소요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매설부 등) 개략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단가

- 용량증설 : 지열 신규 설치 단가와 동일
- 성능개선 : 실소요 비용(개략사업비 306백만원/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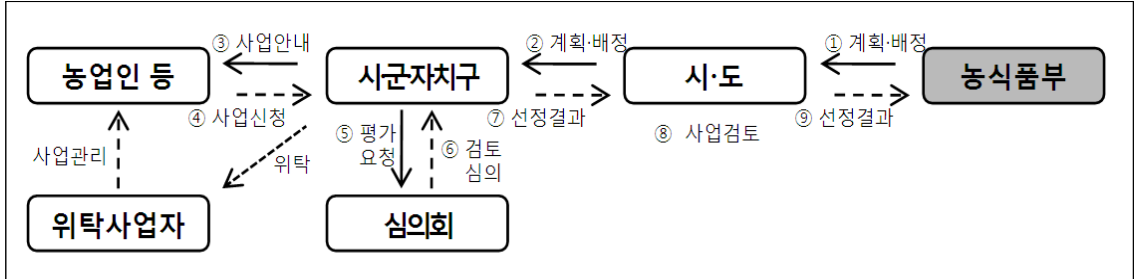
다. 목재펠릿난방기

| 설비형식 | 지원내용 |
|-------------|--|
|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 (열효율이 표시된 제품)' ○ 난방기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제품 * 설치비 :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 |

라.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 기준단가

| 설비형식 | 기준단가 | 지원내용 |
|------------|---------------------|---|
| 다겹보온커튼 | 수평권취식 13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향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 알루미늄스크린의 접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향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 |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 | |
| |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 5천원/㎡ |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
| 열회수형 환기장치 | |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
| 자동보온덮개 | 2.5천원/㎡ |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
| 배기열 회수장치 | |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현장조사 확인서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 첨부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 ~ 12월)

시·군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2-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청(개보수 포함) 시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조사 시행 후 현장조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단,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은 미충족 시 조건부 예비사업자로 신청 가능*)
* 추후 최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가축정보(시설주소, 시설면적, 축종, 사육규모)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1, 1-2)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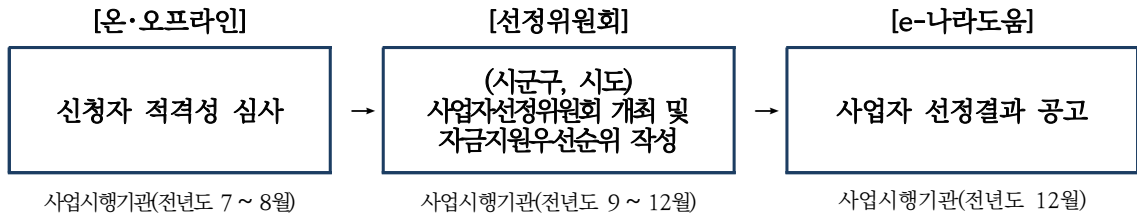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 또는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가축정보(시설주소, 시설면적, 축종, 사육규모)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 요청 시 현장조사를 지원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전년도 7월~8월)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군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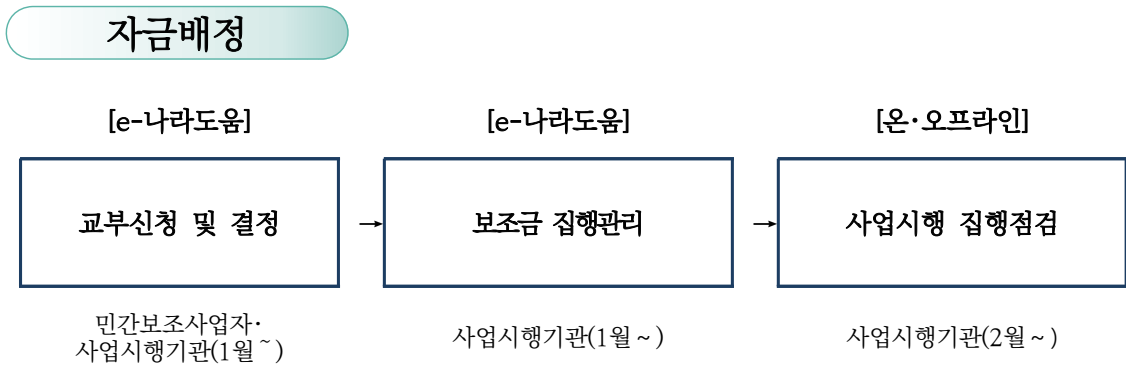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 결정통지서),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용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 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한 경우 설계비용은 설계요율만큼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비율에 따라 정산
- 시장·군수는 원활한 용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3)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용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에너지공단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국고융자 대출을 신청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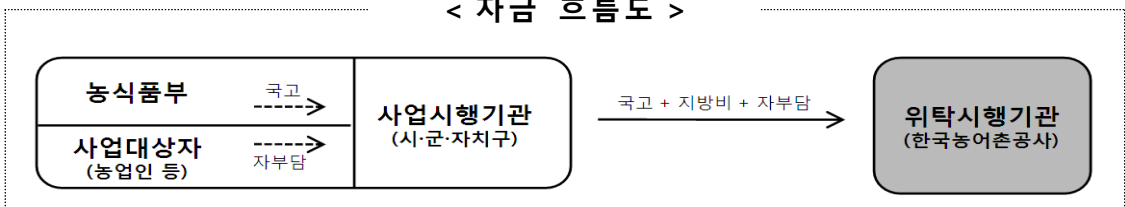
시·군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등)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 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11-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지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지열 히트펌프’에 한하여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 직접구매 가능
 - * 단, 지열 성능개선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대행만 가능
 - ** 농업인 직접구매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제시

< 자금 흐름도 >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대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고, 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함께 일괄 교부
 - ‘지열히트펌프’를 지자체 대행 구매 또는 농업인 직접 구매 시, 구매비용 및 경비(조달수수료 등)는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군에서 집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관리·감독을 하고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확인. 공사비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뢰
 - * 설계적정성 검토에서 확정된 내용은 변경 불가하며, 변경 시 설계적정성 검토 재의뢰
 - 설계도서에 특허 또는 신기술 등 독점적 실시권한이 포함된 경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등 사업추진 방법을 검토하여 결정
 - * 독점 배타적 기술이 포함되어 사업대상자가 시공사를 임의 결정할 수 없도록 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기간 중 사업시행을 적극지원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 '지열히트펌프'를 구입할 경우에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및 사업자 상호간 협의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 및 시·군의 관리감독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관리비는「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단위: %)

| 구 분 | 5억원이하 | 10억원이하 | 20억원이하 | 30억원이하 | 50억원이하 | 100억원이하 |
|-------|-------|--------|--------|--------|--------|---------|
| 사업관리비 | 8.83 | 7.98 | 7.35 | 7.10 | 6.89 | 6.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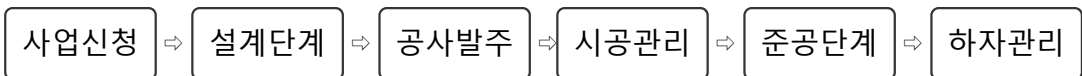
*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0%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시·도(시·군)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군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소요 사업비 산출 및 사업에 필요한 현장조건 등을 확인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지열공 예정 위치의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부, 천공에 대한 민원발생 가능성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설계 완료 후에는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 농업인(농업법인)을 기술검토위원회에 입회하도록 통보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도급공사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300호)」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기준에 의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증,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감독업무지침, 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함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사업대상자 및 시·군 담당자, 사업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6) 하자관리 단계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지적사항 발생 시 계약 상대방에게 보완 시공 등 조치
 -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 의함
- 하자보수 공사 완료 시 검사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 실시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대상액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단,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비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으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5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이를 시·군에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분기별로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회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 중요재산 | 사후관리기준·기간 | | 처분제한기준 |
|-----------|-----------|-----|--|
| ■ 설비시설 | 준공일 | 10년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 ■ 주요기계·장비 | 납품일 | 5년 | |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5)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게 처분 승인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 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며,
 - 제79조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에 제출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IV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부지, 용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설치부지 적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0.3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사업부지 및 사업자격 요건 확인, ~'20.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0.12월) → 사업추진('21.1월~)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0. 8월
- 신청자격 : '2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21년부터 지열·폐열 시설(신규 설치) 지원사업은 2개년도 사업(1년차 설계, 2년차 시공)으로 변경 예정
 - * '21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0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 첨부서류: 지열·폐열·공기열 사업신청자 〉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③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단, 시설물을 지자체로부터 임차한 경우는 가능)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3. 임차농업인이 사업 신청 할 경우(한국농어촌공사 경영희생지원사업 지원자에 한함)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4.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면세유 사용 확인서(농협은행 등) 1부.
6.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신용조사서 제출
7.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 ③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④ 최근 재무제표 1부.
8.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신용조사서, 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대출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9.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10. 시설 설치 동의서(지열 등)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 | | | | | |
|----------------|--|--------|----------------|--------|----------------|
| 사업종류 |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지열(성능개선),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공기열(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 | | | |
| 사업자(법인)명 | | | 대표자명 | | |
| 소재지 | | | | | |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
| 회원농가 수 | | | 호 | 재배품목 | |
| 단지규모 | m ² | 시설재배규모 | m ² | 수출참여규모 | m ² |
| 기 지원액 (백만원) | 지원연도 | 년 | | 사업명 | |
| | 계 | 국고 | | 용자 | 지방비 자부담 |

나. 보유시설 현황

|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 | | | | | 가온면적 | | | | 경력 | 전기시설 | | |
|----------------|----------------|----------------|----------------|----------------|----------------|----------------|----------------|----------------|----------------|----|------|------|-------|
| 계 | | | | | 기타 | 계 | 온풍난방 | 온수난방 | 기타 | | 현재용량 | 인입거리 | 비상발전기 |
| m ² | m ² | m ² | m ² | m ² | m ² | m ² | m ² | m ² | m ² | 년 | kW | m | kW |
| | | | | | | | | | | | | | |

다. 사업예정시설 현황

| 사업예정시설 | | |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 | | 기타시설장비 | 비 고 |
|--------|----------------|-------|-------------|------|------|--------|-----|
| 시설형태 | 면 적 | 기존·신규 | 생산시설 | 외피복재 | 내피복재 | | |
| | m ² | | | | | | |

- * 사업예정시설 : 아래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시설형태 : ① 벤로형유리온실(경질판 포함), ② 양지붕형유리온실(경질판 포함), ③ 비닐연동, ④ 비닐단동, ⑤ 기타
 - 기존·신규 : ① 기존 보유, ② 신규 설치
- *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 아래 모든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생산시설 : ① 양액재배, ② 점적관수, ③ 자동환경제어, ④ 공정육묘장, ⑤ 환기시설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mm, ⑬ 보온판넬 75mm, ⑭ 보온판넬 100mm, ⑮ 보온판넬 100mm 이상
 -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 다겹(2중)보온커튼, ② 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 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 부직포 1중, ⑤ 부직포 2중, ⑥ 부직포 3중
- * 기타시설장비 : ① 예냉시설, ② 저온저장고, ③ 저온처리실, ④ 집하장, ⑤ 선별처리장, ⑥보광시설, ⑦ 선별기, ⑧ 운송차량, ⑩ 비고란 별도 기재
- <표기방법 예시> 축산시설 자돈대기사인 경우 : ⑩ 기재 비고란에 자돈대기사 OOm²

(2쪽에 계속)

(2쪽)

라.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 품종명 | | () | () | () | () | 기타 | 계 |
|------------------|---------|-----|-----|-----|-----|----|-----|
| 재배 면적 (ha) | 2017(A) | | | | | | |
| | 2018 | | | | | | |
| | 2019(B) | | | | | | |
| | 비율(B/A) | | | | | | 100 |
| 생산량 (톤) | 2017(A) | | | | | | |
| | 2018 | | | | | | |
| | 2019(B) | | | | | | |
| | 비율(B/A) | | | | | | 100 |

* 품종명 괄호()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내역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지열냉난방 시스템 | | | | | | | | 실내열교환기유형 | | | |
|----------------|----------------|----------|----------|----------|----------|----------------|----------------|---------------------|-----|---------------|----|
| 계 | 수평밀폐형 | | | | | 수 직 밀폐형 | 수 직 개방형 | 폐 열 냉 난 방 시스템 | FCU | TUBE -RAIL | 기타 |
| | 면적 | 지열교환기(○) | | 설치장소(○) | | | | | | | |
| | | 직관형 | 슬린 키형 | 시설 내부 | 시설 외부 | | | | | | |
| m ² | m ² | | | | | m ² | m ² | m ² | | | |

- 개보수(용량증설)

| 계 | 지열 냉난방시설 | | | 공기열 냉난방시설 | | 폐열 재이용시설 |
|----|------------|------------|------------|-----------|-------|----------|
| | 수 평 밀폐형 | 수 직 밀폐형 | 수 직 개방형 | 공기대 공기 | 공기대 물 | |
| kW | kW | kW | kW | kW | kW | kW |

- 개보수(성능개선)

| 난방용량 | 성능개선 | | | | | | |
|------|------|------|------|-----|------|-------|----|
| | 전체시설 | 히트펌프 | 배관교체 | FCU | 자동제어 | 지열교환기 | 기타 |
| | 식 | 대 | m | 개 | 식 | 공(m) | |

- 공기열

| 공기열냉난방 시스템 선택 | | | | | 실내열교환기유형 | | |
|----------------|----------------|----------------|----------------|--|----------|-----------|----|
| 계 | 면적 | 공기대공기 | 공기대물 | | FCU | TUBE-RAIL | 기타 |
| m ² | m ² | m ² | m ² | | | | |

나. 자금 세부 조달계획

| 합계 | 정부보조 | 응 자 | 지방비 | 자부담 | | |
|-----|------|-----|-----|-----|------|------|
| | | | | 소계 | 자기자금 | 외부차입 |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3쪽에 계속)

(3쪽)

다. 담보물 현황

| 종류 | 소유자 | 면적 | 추정가격 | | 소재지 | 비고 (선순위 설정액) |
|----|-----|----------------|---------------|------|-----------|--------------------|
| | | | 공시지가 (감정가) | 실거래가 | | |
| | | m ² | 백만원 | 백만원 | (상세주소 기재) | |
| | | | | | | |
| | | | | | | |

라. 사업장 생산 계획

| 생산물 | 면적(마릿수) | 생산시기 및 과정 | | | | 겨울철 최저기온 설정온도 |
|-----|---------------------|-----------|------|-------|------|---------------------|
| | | OO 과정 | OO과정 | OO 과정 | OO과정 | |
| 계 | m ² (마리) | 월 순 | 월 순 | 월 순 | 월 순 | ℃ |
| | | | | | | |
| | | | | | | |

마.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 수출품목 | 생산면적 | 연 차 별 수 출 목 표 | | | | | | 수출국 |
|------|----------------|---------------|-----|------|-----|------|-----|-----|
| | | 2021 | | 2022 | | 2023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계 | m ² | 톤 | 백만원 | 톤 | 백만원 | 톤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바.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 1)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
- 2)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
 -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 1) 농가 교육 및 현장지도, 평가회 개최계획 등
 -
 -

(4쪽에 계속)

(4쪽)

2)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
-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난방비 절감 효과

-
-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
-

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2매 이상) 1부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사업계획서

에너지절감시설·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 | | | | | |
|----------------|---|--------|----------------|--------|----------------|
| 사업종류 |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감시설,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난방기(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 | | | |
| 사업자(법인)명 | | | 대표자명 | | |
| 소재지 | | | | | |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
| 회원농가 수 | | | 호 | 재배품목 | |
| 단지규모 | m ² | 시설재배규모 | m ² | 수출참여규모 | m ² |
| 기 지원액 (백만원) | 지원연도 | 년 | 사업명 | | |
| | 계 | 국고 | 용자 | 지방비 | 자부담 |
| | | | | | |

나. 보유시설현황

○ 생산시설

| 시설규모 (합계) | 시설종류별 규모 | | | | | 기타 |
|----------------|----------------|----------------|----------------|----------------|----------------|----------------|
| | 유리(경질판) 온실 | 자동화비닐 온실 | 일반비닐 온실 | 비가림 시설 | 육묘·육종장 | |
| m ² | m ² | m ² | m ² | m ² | m ² | m ²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 부대시설·장비 | | 규모 (수량) | 시설비 | 보관(처리) 능력 | 주소 및 소유자 | 운용방법 |
|---------|------|-------------------|-----|--------------|----------|----------------|
| 명칭 | 설치연도 | | | | | |
| | | m ² /대 | 백만원 | 톤 | |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품종별 비육·생산실적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 품종명 | | () | () | () | () | 기타 | 계 |
|------------------|----------|-----|-----|-----|-----|----|-----|
| 재배 면적 (ha) | 2017(A) | | | | | | |
| | 2018 | | | | | | |
| | 2019(B) | | | | | | |
| | 증감율(B/A) | | | | | | 100 |
| 생산량 (톤) | 2017(A) | | | | | | |
| | 2018 | | | | | | |
| | 2019(B) | | | | | | |
| | 증감율(B/A) | | | | | | 100 |

* 품종명 괄호()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쪽에 계속)

(2쪽)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나. 세부 사업내역

| 구분 | 세부내역 | 규모·수량 (㎡, 대, 개소) | 소요액 (백만원) | 추진시기 (기 간) | 참여농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 합계 | 정부보조 | 용자 | 지방비 | 자부담 | | |
|-----|------|-----|-----|-----|------|------|
| | | | | 소계 | 자기자금 | 외부차입 |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라. 담보물 현황

| 종류 | 소유자 | 면적 ㎡ | 추정가격 | | 소재지 (상세주소 기재) | 비고 (선순위 설정액) |
|----|-----|---------|----------------------|-------------|------------------|--------------------|
| | | | 공시지가 (감정가) 백만원 | 실거래가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구 종합 검토의견

가. 시도:

나. 시·군·구: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시장·군수·구청장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신청자(단체)명:

대표자명:

| 번호 | 농가명 | 주소지 | 연락처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재배 면적 (m ²) | 시설 | | 재배 품목 | 예상량(톤) | |
|----|-----|-----|-----|---------------|-------------------------------|----|---------------------|----------|--------|----|
| | | | | | | 종류 | 면적(m ²) | | 생산 | 수출 |
| 계 | 명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11 | | | | | | | | | | |
| 12 | | | | | | | | | | |
| 13 | | | | | | | | | | |
| 14 | | | | | | | | | | |
| 15 | | | | | | | | | | |
| 16 | | | | | | | | | | |
| 17 | | | | | | | | | | |
| 18 | | | | | | | | | | |
| 19 | | | | | | | | | | |
| 20 | | | | | | | | | | |
| 21 | | | | | | | | | | |
| 22 | | | | | | | | | | |
| 23 | | | | | | | | | | |
| 24 | | | | | | | | | | |
| 25 | | | | | | | | | | |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사업명 | 총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재정용자 | 수익자부담 |
|--------|------|----|-----|------|-------|
| 세부사업명 | | | | | |
| (△△사업) | | | | | |
| (□□사업) | | | | | |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세목 |
|-------|------|------|------|-------|--------------|
| 120 | 123 | 3000 | 3031 | 306 | 330-01 |
| 교통및물류 | 도시철도 | 0000 | 0000 | 00000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 세부사업명 | 예산액 | 기 교부액 | 교부 요청액 | 금회 교부액 | 교부잔액 | 비고 |
|--------|-----|-------|--------|--------|------|----|
| ○○사업 | A+B | | | | | |
| (△△사업) | A | | | | | |
| (□□사업) | B | | | | | |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별지 제5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 | | | | | |
|---|----------------------|--|---------------------|--------------|--------------|--|
| 일반 현황 | 선정사업 | <input type="checkbox"/> 시설원에현대화, <input type="checkbox"/> ICT융복합확산, <input type="checkbox"/>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 | | | |
| | 유형 |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 | | | |
| |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 |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남/여) | | |
| | 재배작물 (사육축종) | | 재배규모 (사육두수) | (㎡, 마리) | | |
| | 소속 농가 수 | 호 | 사업참여 농가 수 | 호 | | |
| | 주소 | | | | | |
| | 일반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사업 계획 | 사업명 | 사업내용 | 규모·수량 (㎡, 대, 개소) | 소요액 (백만원) | 추진시기 (기간) | |
| | 당초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 | | | | | |
| <p>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 | | | | |
|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 | | | | | |

[별지 제6호 서식] 현장조사 확인서

현장조사 확인서

| | | | | | | | | | |
|--------------------------|-------------------------|--------------------------------|-------------------------------------|----------------|--------------------|----------------|--------------------|----------------|----|
| 신청자 | 사업신청자명 | | | | 생년월일 | | (남/여) | | |
| | 법인 | 법인명 | | | | | | | |
| | | 참여농가수 | | | 호 | 설립연월일 | | | |
| | | 대표자명 | | | 생년월일 | | (남/여) | | |
| | 주소 | | | | 가온재배경력 | | 년 | | |
| | 연락처 | 일반전화 | | | 팩스(FAX) | | | | |
| 휴대전화 | | | | 전자우편 | | | | | |
| 기존 시설 규모 | 생산시설 | 시설유형 | 계 | | | | 기타 | | |
| | | 면적/마릿수 | m ² /마리 | | m ² /마리 | | m ² /마리 | | |
| | | 난방면적 | m ² | | m ² | | m ² | | |
| | 난방방법 | 기종 | 온풍난방기(), 온수보일러(), 지열냉난방(), 기타() | | | | | | |
| | | 난방연료 | 계 | 경유 | 중유 | 석탄 | 전기 | 기타 | |
| | | 연간 사용량 | ℓ | ℓ | | 톤 | kW | | |
| | | 연간 사용액 | 백만원 | | | | | | |
| | 난방기간 | 월 ~ 월(일간) | | 동계 최저 설정온도 | | ℃ | | |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 | | | | | | 기타 | |
| | | m ² | | m ² | | m ² | | m ² | |
| 지열(개보수) 보급설비 | 사업년도 (준공년도) | 시행주체 | | 총사업비 | | 난방용량 | | | |
| | | | | | 백만원 | | kW | | |
| 수출 납품 | 최근 2년간 실적 (톤/백만원) | 품목명(계) | | | | |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 수출국 | | | | | | | |
| | | 수출시기 | | 월 ~ 월 | | 월 ~ 월 | | 월 ~ 월 | |
| | 참여연수 | 총 년 | | 계약업체 | | | | | |
| 신청자 재정 상황 (백만원) | 자산 | | | | | | | | |
| | 부채 | | | | | | | | |
| | 연소득 | 농업소득 | | 농업외소득 | | | | | |
| 사업 신청 내용 | 신청내용 | 지열·폐열·공기열·지열(개보수) 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 | | | | | | |
| | 설치장소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 | | | | | | |
| | 사업신청 대상시설 (○) | 기존·신규 | 기존시설(), 신규설치완공(예정)일 : 월 일 | | | | | | |
| | | 자동화정도 | 완전자동(), 반자동(), 수동() | | | | | | |
| 시설유형 | | | | | | | 기타 | | |
| 설치년도 | | | | | | | | | |

* 지열(개보수)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및 사업비 산출서를 별도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성 검토(의견)서

사업성 검토(의견)서

1. 신청자

| | | | | | | | |
|-----------|--------|-------------|-----------|------|----|-----|----|
| 신청자 |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 참여자수 | | | |
| 성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남/여) | | 전화 | | | |
| 주소 | | | | | | | |
| 신청내용 | 사업명 | 사업비(천원) | | | | | |
| | 사업규모 | 합계 | 정부지원(재원명) | | | 지방비 | 자담 |
| | 사업 예정지 | | 계 | 보조 | 대출 | | |

2. 농지이용계획

| | | | |
|----------|----|----------|----|
| 농업진흥지역 안 | | 농업진흥지역 밖 | |
| 구역 | 지구 | 구역 | 지구 |
| | | | |

3. 지원요건 충족 여부

| | | | |
|--|--|---|---|
| 사업부지 확보여부 | 민원발생 가능성 | 재배시설 규모 | 재배품목 |
| <input type="checkbox"/> 자가소유, <input type="checkbox"/> 장기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input type="checkbox"/> 동의서 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서 미확보)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input type="checkbox"/> 저온 작물, <input type="checkbox"/> 고온 작물, <input type="checkbox"/> 아열대 작물 |
| 사업비 확보 상황 | 구체적으로 기술 | | |

4. 사업검토

| 구분 | | 평가 | | | 검토의견 |
|------|--|----|---|---|------|
| | | 상 | 중 | 하 | |
| 사업능력 | ◦경영능력 ◦경영 규모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생산기술(능력) ◦재배·경영실적 | | | | |
|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 | | | |
| 입지여건 |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전력 ◦민원발생 가능성 | | | | |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소장/○○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통합]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명:)

(단위: 천원)

| 시군 | 사업자명 | 농가 수 | 재배품목 | 사업구분 | 세부사업 | 사업량 m ² | 사업진도 |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 | | | | | | | | | | |
|----|------|------|------|------|------|-----------------------|--------|----------|------------------|----|----|----|----|----|-----|----|-----|----|--|--|
| | | | | | | | 주요추진내역 | 공정률 % | 계 | | 국고 | | 용자 | | 지방비 | | 자부담 | | | |
| | | | | | | | | | 계획 | 집행 | 계획 | 집행 | 계획 | 집행 | 계획 | 집행 | 계획 | 집행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나.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 ICT융복합확산 : 복합환경관리, 단순환경관리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온실신개축, 시설개선

다. 세부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ICT융복합확산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등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철골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예냉시설, 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 등

라. “주요추진내역”란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1. 금후 사업추진일정

-
-

2. 사업추진 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

3. 기타 참고사항

-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 시도명 | 시군구명 | 단체명 | 대표자 | 농가명 | 주 재배작물 | 사 업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량 | | | | 계 획 | | | | 집행실적 (정산) | | | | 대 비 (D/C) | 다음해 이월 | | | 불용 | | 창간비 | 준간비 | 불용 사유 |
| | | | | | | | 세부사업 | 계획(A) | 실적(B) | 대비(B/A) | 계 | 국고(C) | 옹자 | 지방비 | 자부담 | 계 | 국고(D) | 옹자 | | 지방비 | 자부담 | 국고 | 옹자 | 지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작성요령

- 가. “사업구분” :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구분 기재
- 나. “세부사업” :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등 기재
- 다. “주 재배작물” :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 토마토, 오이, 백합 등)
- 라. “사업량” :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
-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10호 서식] 추진성과 보고서

지원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1. 재배(사육·양식) 현황

| 시군명 | 성명 법인명 | 재배·사육대상 | 시설유형 | 면적 (㎡) | 재배·사육방 법 | 기간 (월일~월일) | 생산량 (kg, 단, 분) |
|-----|-----------|---------|------|-----------|-------------|---------------|-------------------|
| | | | | | | | |

* 인근에서 경유온풍기를 활용하는 대상시설과 비교하되, 인근에 없을 경우 시군>도>전국 평균자료로 비교

2. 0.1ha당 수익성 효과

| 시군명 | 성명 법인명 | 총수량(kg, 단, 분) | | | 상품 수량(kg, 단, 분) | | | 수입(천원) | | | 소 득(천원) | | |
|-----|-----------|---------------|----|---|-----------------|----|---|--------|----|---|---------|----|---|
| | | 사업자 | 인근 | % | 사업자 | 인근 | % | 사업자 | 인근 | % | 사업자 | 인근 | % |
| | | | | | | | | | | | | | |

3. 0.1ha당 난방비 절감시설 및 효과

| 시군명 | 성명 법인명 | 구 분 | 외피 복재 | 내피 복재 | 난방 기간 | 기간 설정 온도 | 전 기 | | 유 류 | |
|-----|-----------|------------|----------|----------|-------------|----------------|-----------|----|-----------|----|
| | | | | | | | 전기 소모량 | 비용 | 경유 소모량 | 비용 |
| | | | | | 월.일~ 월.일 | ℃ | kW | 천원 | ℓ | 천원 |
| | | 사업장 인 근 | | | | | | | | |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mm ⑬ 보온판넬 75mm ⑭ 보온판넬 100mm ⑮ 보온판넬 100mm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다겹보온커튼 ②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부직포 1중 ⑤부직포 2중 ⑥부직포 3중

4. 교육 및 평가결과

| 시군명 | 교 육 | | 현장지도 | | 평가회개최 | | 평가회 참석자 사업내용 만족도 | | | | | |
|-----|-----|----|------|-----|-------|----|------------------|----------|----|----|-----|-----------|
| | 횟수 | 인원 | 횟수 | 연인원 | 횟수 | 인원 | 계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 | 회 | 명 | 회 | 명 | 회 | 명 | 명 | | | | | |

5. 미흡한점 및 개선방안

| 시군명 | 미흡한점 | 개선방안 |
|-----|------|------|
| | | |

6. 사업 추진 단계별 사진

[별지 제11-2호 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 | 계약번호 제 | 호 |
|---|------------------|-----------------------------|------------------|
| | | 공고번호 제 | 호 |
| 계약자 | 발 주 처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 |
| | 계 약 상 대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 소 |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연 대 보 증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 소 |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계약내용 | 공 사 명 | | |
| | 계 약 금 액 | 금 | 원정(W) |
| | 총공사부기금액 | 금 | 원정(W) |
| | 계 약 보 증 금 | 금 | 원정(W) |
| | 현 장 | | |
| | 지 체 상 금 율 | % | |
|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 · | · |
| | 착 공 연 월 일 | · | · |
| | 준 공 연 월 일 | | |
| | 기 타 사 항 | | |
|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 | | |
| 공 종 | 공종별 계약 금액 |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 금 원정 | |
| | | ()% 금 원정 | |
| | | ()% 금 원정 | |
| <p>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입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불입서류 :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right;">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인) 계약상대자 (인) 연대보증인 (인)</p> | | | |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사업자 선정기준표(지열·폐열·공기열 시설)

| 지 역 | ○○시·군·구 | 사업자명 | | | | | |
|--|---|----------------------------|----|----|----|----|----|
| 주 소 | | | | | | | |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1.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설치 (),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 | | | | | | |
|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미충족 () |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미충족 () | | | | | |
| 조 사 항 목 | | 배 점 | | | | | 특점 |
|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 1. 자동화현대화 정도 - 완전자동(5), 반자동(4), 수동(3), 인력(2), 시설낙후(1) | | 5 | 4 | 3 | 2 | 1 | |
| 2. 내부 보온피복제에 의한 보온력 정도 <온실> - 다겹보온커튼+부직포(5), 다겹보온커튼(4), 부직포 2중(3), 부직포 1중(2), 내부보온피복 없음(1) <온실이외의 경우> - 단열판넬 100mm 이상(5), 75mm 이상(3), 75mm 미만(1) | | 5 | 4 | 3 | 2 | 1 | |
| 3. 전기시설 설치 여건 - 기존용량 활용가능(5), 전기 거리공사비 거리 200m이내(4), 201~500m(3), 501~1,000m미만(2), 1,000m 이상(1) | | 5 | 4 | 3 | 2 | 1 | |
| 4. 최근 5년간 수출(또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및 참여기간 - 납품액 개인 2천만원(단체 3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5년 이상(10) - 납품액 개인 1천만원(단체 2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4년 이상(8)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1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3년 이상(6)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5천만원) 미만 또는 참여기간 2년 이하(4) - 수출실적 없음(2) | | 10 | 8 | 6 | 4 | 2 | |
| 5.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 3년 이상(10) - 2년 이상~3년 미만(8) - 1년 이상~2년 미만(6) - 1년 미만 또는 기타 실적(4) - 실적 없음(2) | | 10 | 8 | 6 | 4 | 2 | |
| 6. 재배경력 - 10년 이상(10), 6~9년(8), 2~5년(6), 2년 미만(4), 무경험(2) | | 10 | 8 | 6 | 4 | 2 | |
| 7. 기존시설 연간 10a당 난방비 소요액 및 난방기간 - 난방비 1천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50일 이상(5) - 난방비 5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20일 이상(4) - 난방비 3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90일 이상(3) - 난방비 1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60일 이상(2) - 난방비 1백만원 미만 또는 난방기간 60일 미만(1) | | 5 | 4 | 3 | 2 | 1 | |
| 8. 주변으로부터의 민원 발생 가능성 - 반경 1km 이내 10 가구* 미만 있거나 축사가 5개소 미만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 설치 동의를 확보(10) - 반경 1km 이내 1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5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 설치 동의를 확보(8) - 반경 1km 이내 3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7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를 확보(6) - 반경 1km 이내 5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10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를 확보(4) - 반경 1km 이내 7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20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를 확보(2) * 농업경영체와 거주 중인 농가를 모두 포함 | | 10 | 8 | 6 | 4 | 2 | |

| 조 사 항 목 | | 배 점 | | | | | 득점 |
|--|---|---|----|----|----|----|----|
|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 9. 사업비 확보 가능성 · 예비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과 국고용자 모두 확보 완료(20) · 예비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용자는 대출 가능성을 입증(16) · 최종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과 국고용자 모두 확보 완료(12) · 최종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용자는 대출 가능성을 입증(8) · 최종사업자 선정 시까지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용자는 설계 종료 시까지 확보 가능성을 입증(4) | | 20 | 16 | 12 | 8 | 4 | |
| 10. 부대시설 설치 공간 확보 여부(축열조, 기계실 등) - 확보 완료(5), 미확보(0) | | 5 | | | | | |
| 11. 시공을 위한 공간 확보 여부 - 확보 완료(5), 미확보(0) | | 5 | | | | | |
| 12. 입지조건 - 암석토, 매립지 등 지반 여건이 시설물 설치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예정지역 여부, 상습침수지역 여부, 기후, 위치 등이 시설물 운영 시 경제성 확보에 유리한지 여부 등 검토(부적합 요소 없음 10점, 부적합 요소 1가지 8점, 부적합 요소 2가지 6점, 부적합 요소 3가지 4점, 부적합 요소 4가지 2점, 부적합 요소 5가지 0점) | | 10 | | | | | |
| 가점 (중복 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5 | | | | | |
|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5 | | | | | |
|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여부(여 5점 부 0점) | 5 | | | | | |
|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5 | | | | | |
|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5 | | | | | |
|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5 | | | | | |
| | 지역 푸드플랜 참여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 | 5 | | | | | |
|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5 | | | | | |
| 계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 심의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사업자 선정기준표(에너지절감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단체명(시·군·구명): 총득점: () 점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설치 (여/부),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여/부)

1. 최근 3년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50%)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 구분 | 배점 | 공동선별·계산 실적 | 총 출하실적 | 득점 |
|---------------|----|---|---|--|
| ▪ 90%이상 | 50 |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A): 톤 |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B): 톤 | $(A/B) \times 100 = (\quad)\%$ ()점 |
| ▪ 80%이상~90%미만 | 40 | | | |
| ▪ 70%이상~80%미만 | 30 | | | |
| ▪ 60%이상~70%미만 | 20 | | | |
| ▪ 50%이상~60%미만 | 10 | | | |
| ▪ 50%미만 | 0 | | | |

2.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30%)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 구분 | 배점 | 수출금액(백만원) | 총 출하금액(백만원) | 득점 |
|----------------|----|---|---|--|
| ▪ 100% | 30 | ▪ '17년: ▪ '18년: ▪ '19년: ▪ 합계(A): | ▪ '17년: ▪ '18년: ▪ '19년: ▪ 합계(B): | $(A/B) \times 100 = (\quad)\%$ ()점 |
| ▪ 75%이상~100%미만 | 24 | | | |
| ▪ 50%이상~75%미만 | 18 | | | |
| ▪ 25%이상~50%미만 | 12 | | | |
| ▪ 25%미만 | 6 | | | |

3. 주 품목에 대한 시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20%)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 구분 | 배점 | 해당 조직 | ○○시·도 | 득점 |
|----------------|----|---|---|--|
| ▪ 100% | 20 |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A): 톤 |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B): 톤 | $(A/B) \times 100 = (\quad)\%$ ()점 |
| ▪ 75%이상~100%미만 | 16 | | | |
| ▪ 50%이상~75%미만 | 12 | | | |
| ▪ 25%이상~50%미만 | 8 | | | |
| ▪ 25%미만 | 4 | | | |

4. 가점(중복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5점):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여부 (여 5점, 부 0점):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여 5점, 부 0점): ()점
-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점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5점):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 | |
|--------------------------|--------------------------|
|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
| 충족 () / 미충족 () | 대상 () / 미대상 () |

[별첨 2]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시설원에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 시설원에 작물별 생육온도 조건

| 구분 | 고온성 | 중온성 | 저온성 |
|----|--|---|--|
| 채소 | 파프리카, 메론, 고추, 가지 | 호박, 오이, 참외, 무, 수박 | 딸기, 배추, 상추, 시금치, 샐러리, 썩갓, 철쭉 |
| 화훼 | 심비디움, 장미, 백합, 야자류, 호접란, 국화, 유스토마, 아나나스 | 고무나무,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동양란, 선인장, 거베라 | 튜울립, 금어초, 스톡크, 데이지, 아이리스, 안개초, 프리지아, 페츰니아, 팬지, 프리물라, 시크라멘 |

* 주) 위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류 용량조건표 작성 기준임

□ 작물별 온도관리 기준

〈채소류〉

| 작물명 | 생육온도(°C) | | | |
|------|----------|--------|---------|--------|
| | 최저한계온도 | 야간온도설정 | 생육적온 | 최고한계온도 |
| 멜론 | 15 | 18 | 28 ~ 30 | 35 |
| 고추 | 13 | 16 | 23 ~ 30 | 35 |
| 가지 | 13 | 16 | 22 ~ 30 | 35 |
| 파프리카 | 15 | 18 | 25 ~ 30 | 35 |
| 토마토 | 10 | 16 | 25 ~ 30 | 33 |
| 호박 | 10 | 11 | 23 ~ 25 | 35 |
| 오이 | 8 | 12 | 25 ~ 28 | 35 |
| 참외 | 8 | 11 | 22 ~ 28 | 35 |
| 수박 | 10 | 13 | 25 ~ 30 | 35 |
| 무 | 8 | 11 | 15 ~ 20 | 25 |
| 딸기 | 3 | 6 | 17 ~ 20 | 30 |
| 배추 | 5 | 8 | 13 ~ 18 | 23 |
| 상추 | 5 | 8 | 15 ~ 20 | 25 |
| 시금치 | 5 | 8 | 15 ~ 20 | 25 |
| 샐러리 | 5 | 8 | 15 ~ 20 | 25 |
| 썩갓 | 5 | 8 | 15 ~ 20 | 25 |

〈화훼류〉

| 작물명 | 생육온도(℃) | | | |
|--------|---------|--------|---------|--------|
| | 최저한계온도 | 야간온도설정 | 생육적온 | 최고한계온도 |
| 심비디움 | 12 | 15 | 20 ~ 25 | 30 |
| 장미 | 5 | 15 | 24 ~ 27 | 30 |
| 아나나스 | 12 | 15 | 20 ~ 25 | 30 |
| 야자류 | 12 | 15 | 25 ~ 30 | 40 |
| 호접란 | 15 | 23 | 25 | 30 |
| 유스토마 | 12 | 15 | 20 ~ 25 | 30 |
| 백합 | 13 | 16 | 20 ~ 25 | 30 |
| 국화 | 7 | 15 | 18 ~ 20 | 30 |
| 거베라 | 7 | 13 | 16 ~ 20 | 30 |
| 고무나무 | 10 | 13 | 25 ~ 30 | 40 |
| 글라디올러스 | 10 | 13 | 25 ~ 30 | 35 |
| 동양란 | 10 | 13 | 20 ~ 25 | 40 |
| 선인장 | 10 | 13 | 25 ~ 30 | 50 |
| 카네이션 | 7 | 13 | 15 ~ 21 | 30 |
| 철쭉 | 4 | 8 | 20 ~ 25 | 35 |
| 프리지아 | 7 | 10 | 13 ~ 16 | 30 |
| 튤립 | 5 | 10 | 15 ~ 20 | 30 |
| 아이리스 | 7 | 10 | 15 ~ 20 | 30 |
| 숙근안개초 | 7 | 10 | 15 ~ 18 | 20 |
| 금어초 | 7 | 10 | 15 ~ 20 | 25 |
| 스톡크 | 7 | 10 | 20 ~ 25 | 25 |
| 팬지 | 7 | 10 | 15 ~ 20 | 25 |
| 데이지 | 7 | 10 | 15 ~ 20 | 25 |
| 페츨니아 | 7 | 10 | 20 | 30 |
| 프리물라 | 7 | 10 | 15 ~ 20 | 25 |
| 시크라멘 | 7 | 10 | 18 ~ 20 | 30 |

* 주) 야간온도설정: 최저생육한계온도 + 3℃

[별첨 3] 기성고 확인서

| | | | | | | |
|---|---|--------------------|------------|------------|-------------|----------------------------|
| 발급번호 제 호 | | | | | | |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 | | | | | |
| 주소 | | | | | | |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사업내용 | | | | | | |
| 건축물 소재지 | | | | | | |
| 건축물 규모(m ²) | | | | 구조 | | |
| 사업계획 | 합계 (A=B+C+D)) | | 자부담(B) | 보조금(C) | 용자금(D) | |
| | 1000천원 | | 400천원(40%) | 300천원(30%) | 300천원(30%) | |
|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 | | | |
| 사업실적 | 공정률 (J=E/A) | 합계 (E=F+G+H+I)) | 자부담(F) | 보조금(G) | 용자금(H) | 기타(I) (사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
| | 40% | 400천원 | 200천원 | 100천원 | 0천원 | 100천원 |
| |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 | | | | |
| 대출현황 | 금번 대출 신청액(L) | | 기 대출액(K) | | 대출 총계(=L+K) | |
| | 120천원 | | 천원 | | 천원 | |
| 사업대상자 결정 | 년 월 일 | | | | | |
| 현장 점검자 | (직 급) | | (성 명) | | | |
|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사업대상자) | | | (서명 또는 날인) | | | |
|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 | | | | | |
| 년 월 일 | | | | | | |
| 확인자 | | | (인) | | | |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 |
|---|
|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
|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 J) - (F + G + K)) |
|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 J) - (B + G + K)) |
| 천원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 |
|--|
| 사 업 개 요 |
|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 1. 사 업 명 : |
| 2. 사 업 자 : |
| 3. 지원규모 : |
| 4. 재 원 : |
| 5. 사 업 비 : |
| 6. 사업기간 : |
| 사 업 자 ○ ○ ○ |

←————— 110cm —————→

나. 준공후 안내문

| |
|--|
|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1. 사 업 명 : |
| 2. 사 업 자 : |
| 3. 시설규모 : |
| 4. 재 원 : |
| 5. 사 업 비 : |
| 6. 사업기간 : |
| ○○○○년 월 일 |

←————— 30cm —————→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 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 | | | | | | | | |
|-------------------|---|--------------------------|--------|--------------|--------------|-------------------|-----|----|
| 세부사업명 | 원예시설현대화 | |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 |
| 내역사업명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 | 예산 (백만원) | 3,360 | | | |
| 사업목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 | | | | | | |
| 사업 주요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 | | | | |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 | | | | |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 | | | | | |
| 지원한도 |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기준단가: 22천원/㎡ | | | | | | | |
| 재원구성 (%) | 국고 | 20 | 지방비 | 30 | 용자 | 30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백만원) | | | | | | | |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
| | 합 계 | 40,000 | 32,000 | 28,000 | 16,800 | | | |
| | 국 고 | 8,000 | 6,400 | 5,600 | 3,360 | | | |
| | 용 자 | 4,800 | 3,840 | 3,360 | 2,016 | | | |
| | 지방비 | 12,000 | 9,600 | 8,400 | 5,040 | | | |
| 자부담 | 15,200 | 12,160 | 10,640 | 6,384 | | | | |
| 담당기관 | | 담당과 | | 담당자 | | 연락처 | | |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 | 원예산업과 사·군·자치구 원예담당 | | 사무관 이남윤 - | | 044-201-2236 - | | |
| 신청시기 | 매년 1월 | | | 사업시행기관 | | 농림축산식품부 | |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 | | | | | |

1.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337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발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3. 지원내용 및 자금사용 용도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
 -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용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 용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용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 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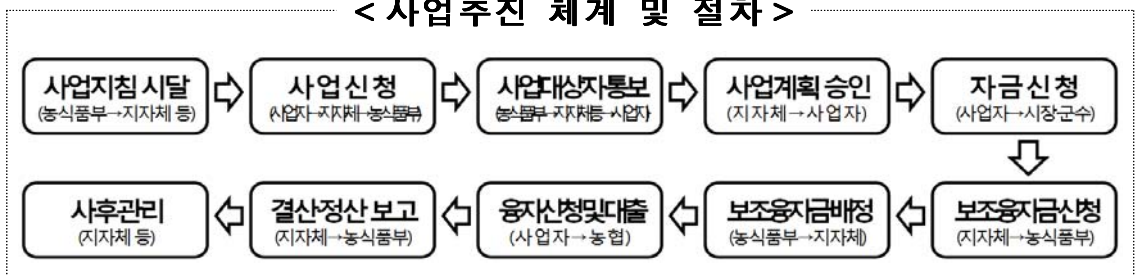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22천원/㎡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시 실 단가 적용 가능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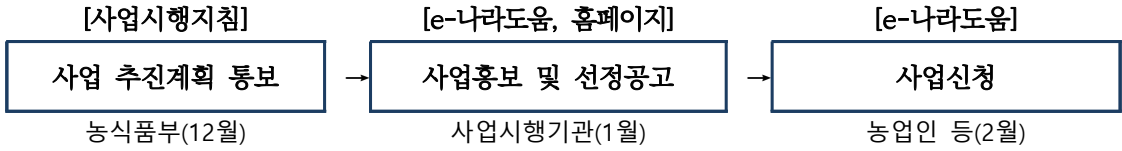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병행 관리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9.12월)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19.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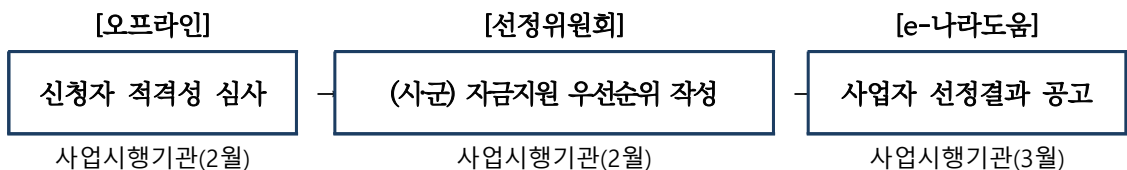
시·군

- 고추 재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방법, 제재사항(중도포기 및 목적 외 사용 등) 등 안내, 교육 및 홍보 병행('20.1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검토('20.1월)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20.1월)
- 융자금 대출 희망자는 거래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포함)으로부터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사전 확인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 ('20.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지원 자격 및 요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보고('20.2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0.3월)

시·군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20.2월)
- 시·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20.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용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집행시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용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의 적합여부(지침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토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용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용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용자금으로 사업비 정산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를 확인하되, 연작장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견고추용 고추 재배 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사업대상자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Ⅲ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20.3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신청자격: '20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통보)
 - * '20년도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등은 '19년도 사업시행지침 참조

| | | | | | | | | |
|-----------------------|---|-------|-------|-------------------------------|----------|--------------|-----|----|
| 세부사업명 | 과수 생산유통지원 | |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내역사업명 |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 | | 예산 (백만원) | 200 | | | |
| 사업목적 |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활용을 하여 노동력을 절감 및 고품질 과수생산을 통해 과수경쟁력 확보 | | | | | | | |
| 사업 주요내용 | 과수분야 ICT 시설(온·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 | | | | |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 | | | | |
| 지원자격 및 요건 | ICT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 | | | | | |
| 지원한도 |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 사업비 상한액 기준: 200백만원 | | | | | | | |
| 재원구성(%) | 국고 | 20 | 지방비 | 30 | 용자 | 30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이후 | | | |
| | 합 계 | 3,640 | 2,000 | 1,000 | 7,500 | | | |
| | 국 고 | 800 | 400 | 200 | 1,500 | | | |
| | 지방비 | 1,200 | 600 | 300 | 2,250 | | | |
| | 용 자 | 840 | 420 | 210 | 1,260 | | | |
| | 자부담 | 800 | 580 | 290 | 2,490 | | | |
| 담당기관 | | 담당과 | | 담당자 | | 연락처 | | |
| 농림축산식품부 | | 원예경영과 | |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 | 044-201-2255 | | |
|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 원 | 정보융합실 | | | 실 장 양종열 과 장 정명종 | | 044-861-8763 | |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1.30.일까지) | | | | | | | |

1.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조직단위로 신청한 농가, 수출 농가, 친환경·GAP·재해보험·계약재배 농가, 지역 단위 푸드플랜에 참여(또는 참여약정)하고 있는 농가 등 가점부여
 -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량 범위내에서 사업성 및 요건 등 필수 사항만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지원

3. 지원대상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 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 지역의 동류 시설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전컨설팅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
- 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는 지원 제외
 -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되는 시설·장비에 한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

-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한국농기계조합의 품질보증을 득해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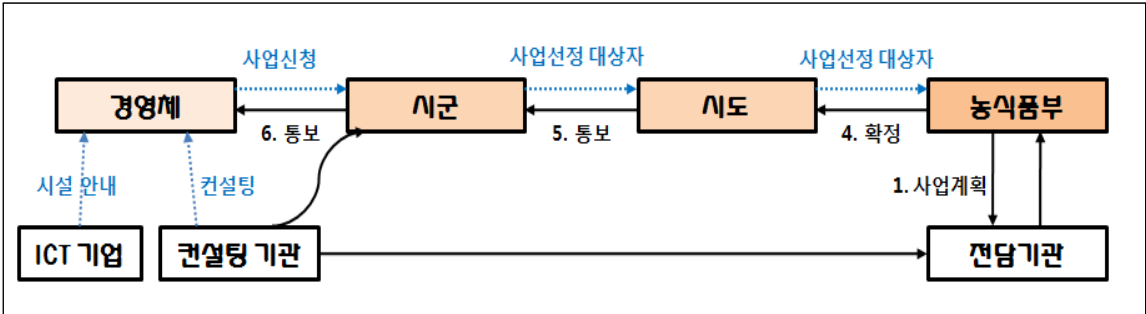
○ 표준사업비 : 노지(20백만원/ha), 시설(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0.33ha,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0.33ha)

- * 면적 및 시설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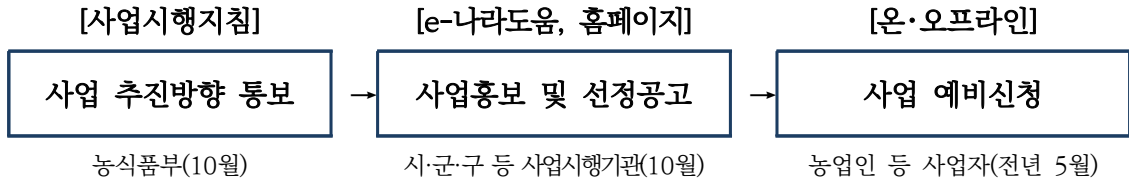
-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200백만원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상기 표준사업비 및 사업비 상한액 기준에 제외되며,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기준 및 집행 등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준용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농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다만,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사업신청 대리 등록, 집행계획·정보입력·집행내역등록 등 e나라도움 업무대행자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 대리 신청, 피대리인 정보입력, 위임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정보취약계층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사업신청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시행주체에 사업신청서[첨부 2]를 제출(전년도 11월)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용자 신청자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용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를 제출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인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 ③ 지자체에서 제출한 예비신청 대상자 대상 컨설팅 계획 수립(전년도 6월)
- ⑩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시·도별 내시안 안내(전년도 10월)

지자체(시·도↔시·군)

- ②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모집하고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이하 전담기관)에 제출(전년도 5월)
 -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본 등을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친환경과원관리),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전설명 결과에 따른 예비신청 대상자 포함(전년도 5월)
- ⑤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서 지정(안내)하는 컨설팅 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 안내(전년도 6월)
- ⑧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컨설팅 결과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9월)

경 영 체

- ① 과수분야 스마트팜 시설설치 희망농가 예비신청(전년도 5월)
- ⑦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건적 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전년도 8월)
 - * 조직내 여러 농업경영체가 포함되어 신청한 경우에는 조직단위로 사업신청 가능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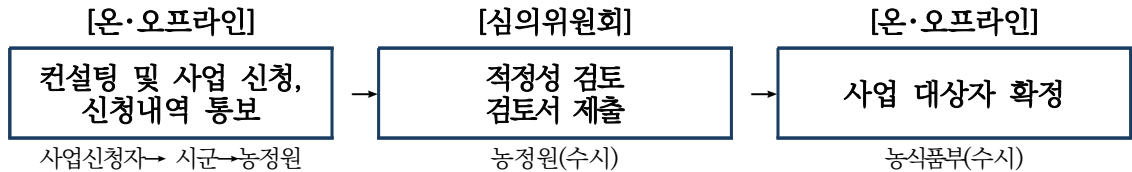
전담기관(농정원)

- ④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전년도 6월)
- ⑨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전년도 9월)

컨설팅 기관

- ⑥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통보(전년도 6~8월)
 -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체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 신청을 위한 추가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①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 ②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 *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 조정 등

시 · 도

- ③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농식품부 확정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 12월)
- ⑥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 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2월)

시 · 군

- ④ 컨설팅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 기준을 토대로 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보고하고, 전담기관에 제출(1월)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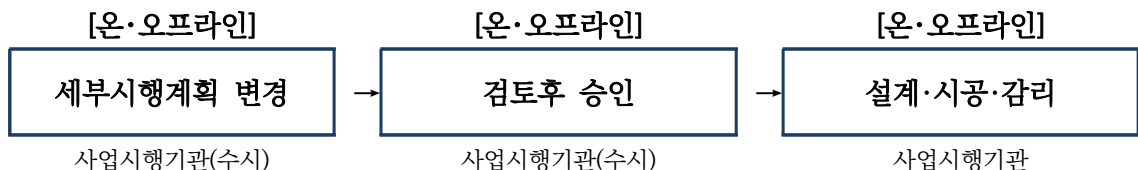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내에서 가점구간 내에서 항목 추가·변경 가능

* 본 사업자 선정 이후 중도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 순위>

- ㉠ 조직단위로 신청하여 연계·활용효과가 높은 농업경영체, 수출 농업경영체 등 우선 지원
- ㉡ ICT 융복합 수용 준비상황(시설조건, 활용조건) 및 사업지속 가능성 등에서 컨설팅 결과가 우수한 농업경영체
- ㉢ 농식품부 심사기준표 표준안을 활용하고,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가점으로 보완하여 사용
- ㉣ 대상자의 필요 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 부여
- ㉦ 선정 취소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 ⑤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하되, 감리 표준요율 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
 -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Ⅱ-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에 제시된 개별사업 기준, 총 사업비는 재원별 사업비를 합산한 총액을 말함(국비+지방비+용자+자부담)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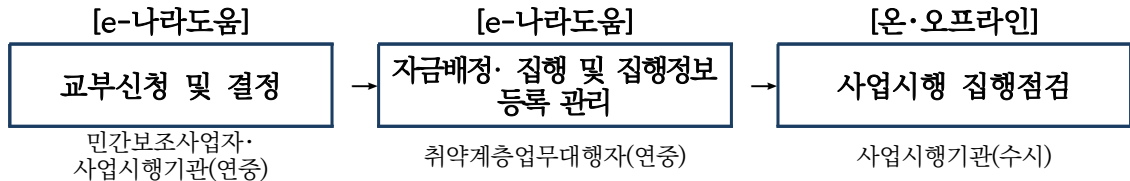
- 농업경영체(또는 조직)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전담기관에 제출(시·도는 농식품부로 제출)
 -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변경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 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45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용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용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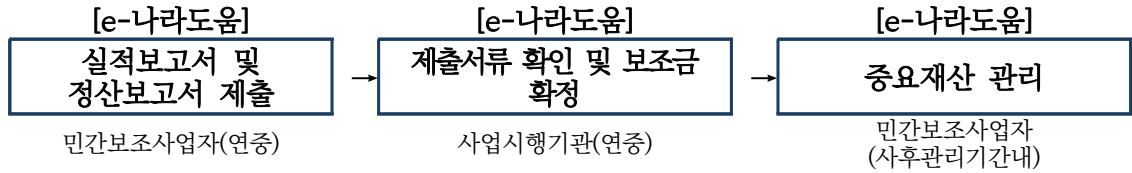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기본규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 보조금을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비예치형)는 집행잔액, 이자 등을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직접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결과를 활용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에 제출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비닐하우스폴조는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 처분제한기준 |
|---------------------------|--------|------|---|
| | 부터 | 까지 | |
|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 하우스폴조 등) | 준공일 | 10년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준공일 | 7년간 | |
| - 주요기계·장바자재 | 구입일 | 5년간 |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용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기본규정」제78조제6항, 제79조제7항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Ⅲ

평가 및 환류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후 1년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V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2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0.5월(예비사업자)
- 신청자격 : '20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사업시행지침, 규격 및 서비스기준, 컨설팅기관 및 관련기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은 정보공유 웹페이지(<http://www.smartfarmkorea.net>)를 활용

| | | | | | | | | |
|---------------------|---|-------|--------|-------------------------------|-------------|--------------|-----|----|
| 세부사업명 | 과수 생산유통지원 | | |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내역사업명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 | | | 예산 (백만원) | 4,227 | | |
| 사업목적 |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소규모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 | | | | | | | |
| 사업 주요내용 | 집하선별, 포장, 예냉·저온저장, 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의시설, 가공시설 등 일괄지원 | | | | | | |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 | | | | |
|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시·군단위 이상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 | | | | | |
| 지원한도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 | | | | | |
| 재원구성(%) | 국고 | 50~40 | 지방비 | 50~30 | 용자 | 0 | 자부담 | 3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이후 | | | |
| | 합 계 | 7,884 | 10,280 | 10,280 | 74,472 | | | |
| | 국 고 | 3,942 | 4,227 | 4,227 | 27,081 | | | |
| | 지방비 | 3,942 | 4,227 | 4,227 | 27,081 | | | |
| | 자부담 | - | 1,826 | 1,826 | 20,310 | | | |
| 담당기관 | | 담당과 | | 담당자 | | 연락처 | | |
| 농림축산식품부 | | 원예경영과 | |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 | 044-201-2255 | | |
| 한국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 유통조성처 | | | 부 장 김동목 차 장 안만물 과 장 곽일태 | | 061-931-1026 | |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31.일까지) | | | | | | | |

1. 사업대상자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 지자체 및 품목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면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부여

<지원기준>

*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

- ① 선(先) 조직화, 후(後) 시설지원 원칙 준수
 - 운영주체가 정부지원 유통회사이거나,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통합마케팅 조직일 경우
- ② 해당 시·군에 경합되는 규모화된 조직이 없고 다음조건 중 하나이상에 해당될 경우
 - 농축산물 연간 생산액이 3천억원 이상인 시·군
 - 과실류의 연간 생산량이 3만톤 이상인 시·군
 - 운영주체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공동계산액이 50억원 이상이며, 3년 이내 흑자가 가능한 경우

<지원제한기준>

- 신규 일반APC, 신활력사업 등으로 과실류 전용 APC가 설립된 지역은 향후 5년간 신규시설 지원 제외. 다만 과실 품목 중 전국 생산량이 일부 시·군에 집중된 경우에는 신규시설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5천톤 ~ 2만톤 내외인 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추가·보완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3)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예냉·냉장수송과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단, 신선편이시설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
 - APC의 취급품목 및 유통특성을 고려하여 시설활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설치 제외
- * ICT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USN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 선별기 등 자동화 기기, RFID를 활용한 생산이력 관리 등 지원 가능(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요)
- 가동률 제고를 위해 과채류 등 부품목 취급은 가능하나 과일류 이외 품목의 설비와 장비는 자체 조달
- 다만,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 보완사업의 사업비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탑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신규시설 중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660㎡(기준시설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 가능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 신규시설 150억기준(연간 1~2만톤 처리능력 기준)

| 비 목 | 단위 | 단가 | 비 고 | 비 목 | 단위 | 단가 | 비 고 |
|-------------------|------|----|----------------|-------------------|----|----|--------------------------|
| 1. 설계 및 감리 | | | 예산편성 지침기준 | 6. 유통시설장비 | | | |
| - 기본조사설계비 | 식 | | 공사비의 1.28% | - 수송차량 | 대 | | 자체 운송 |
| - 실시설계비 | 식 | | 공사비의 2.04% | - 팔레트 | 개 | | 0.5톤/1개 |
| - 감리비 | 식 | | 공사비의 1.87% | - 지게차 | 대 | | 3단마스트(최대양고5.5m) |
| - 시설부대비 | 식 | | 공사비의 0.18% | - 컨베이어 | 대 | | 입고 및 출고 |
| - 건축디자인비 | 3.3㎡ | | 3.3㎡당 1만원 | - 운반상자 | 개 | | 보관량의 %(농기보유감안) |
| 2. 토 목 | | | | - 파렛타이저 | 식 | | 전자동, 스트랩핑 포함 |
| - 기반 공사 | 식 | | | - 에틸렌가스제거기 | 대 | | 66㎡당 1개 |
| - 상하수도설비 | 식 | | | 7. 위생시설 | | | |
| 3. 전기공사 | 식 | | | - 오수처리시설 | 조 | | 선별 및 세척수 처리 |
| 4. 건 물 | ㎡ | | | - 작업자 소독실 | 조 | | 입출입자 위생소독 |
| - 선별장 | ㎡ | | 향온 클린룸설치 | - 에어샤워기 | 조 | | 입출입자 위생소독 |
| - 집하장 | ㎡ | | 하차, 검수 등 | - 해충방제시설 | 조 | | 전기식 살충 |
| - 출고장 | ㎡ | | 상차, 배송 | - 출입구격리시설 | 조 | | 에어백 및 스피드도어, 적재함 높이 조절장치 |
| - 예냉고 | ㎡ | | | - 공중세균측정장비 | 조 | | 작업장내 세균 측정 |
| - 저온저장고 | ㎡ | | 처리물량의 % 저장(톤) | - 물류기기세척장비 | 조 | | 박스, 팔레트 세척 |
| - CA저장고 | ㎡ | | 처리물량의 % 저장(톤) | - 집진기 | 대 | | 오염 공기의 집진, 배출 |
| - 사무실 | ㎡ | | 소회의실, 상황실포함 | - 바닥 청소기 | 대 | | 바닥 왁스 청소 |
| - 품질검사실 | ㎡ | | 품질 및 잔류농약검사 | - 세탁 건조기 | 대 | | 위생복 세탁 건조 |
| - 일반창고 | ㎡ | | 포장자재, 소모품 등 창고 | 8. 품질 검사장비 | | | |
| - 교육실 | ㎡ | | 장비, 비품은 비인정 | - 농약속성검사기 | 대 | | 자체 품질검사 장비 |
| - 부속시설 | ㎡ | | 식당, 샤워실, 화장실 등 | - 이동식 비파괴측정기 | 대 | | 자체 품질검사 장비 |
| 5. 선별포장장비 | | | | 9. 경영지원시스템 | 식 | | ERP, SCM, CRM 등 |
| - 비파괴선별기 | 조 | | 1조당 1일 ()톤처리 | 10. 차량계근대 | 조 | | 원물 중량 계근 |
| - 부작물선별기 | 조 | | 부작물이 있을 경우 | 11. 조경공사 | 식 | | |
| - 세척건조기 | 조 | | 세척건조, 날개포장 | | | | |
| - 박스제함기 | 대 | | 제함실 건축비포함 | | | | |
| - 봉합기 | 대 | | 자동 박스 봉합기 | | | | |
| - 자동 소포장기 | 식 | | 자동계량, 끈넛포장 | | | | |
| - 세척수 제조기 | 조 | | 1일 ()톤 생산 | | | | |
| | | | | 총계 | | | |

주) 비교란에는 산출근거, 장비사양 등을 자세히 기재

【참고사항】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 검토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경제지주와 협의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 사업비중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개발업체와 협의하여 시스템 호환문제 등을 해결(관련된 사항은 별지 3-1 참고)
- 경영지원시스템(ERP)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개발한 「경영정보시스템 기술지침」을 참고하여 시설 및 품목 특성에 맞게 구축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관련된 사항은 별지 3-1 참고)
-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 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색택 등) → 포장 → 펠릿 적재 및 랩핑 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선별방식을 선정하되 별지 3-2호의 조건 충족
- 신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 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하고, GAP농산물 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부지매입비 제외)
 - *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참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보완사업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기간
 - 신규사업 : 2년(연도별 지원비율 : 1년차 40%, 2년차 6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추가·보완사업 :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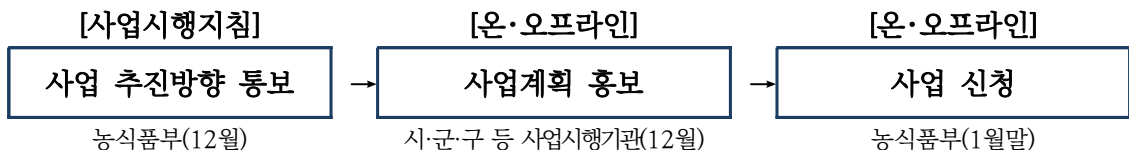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 15,000백만원 이하의 중규모 시설도 지원 가능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II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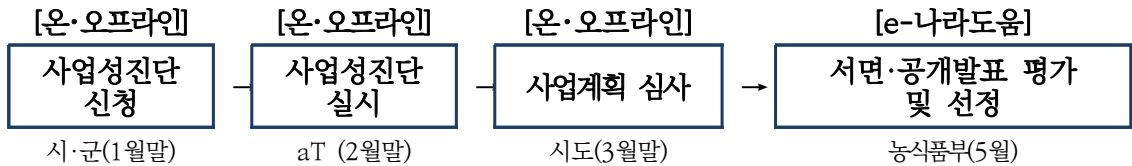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1월말)
 - *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농협경제지주

- 회원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고정투자한도, APC필요성, 과투자, 원물확보 등)을 회원농협에 통보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신규 및 추가·보완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을 실시 받고 다음년도 사업으로 신청
 - 사업성진단 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필요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도 등에서 진단에 참여할 수 있음
 -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사전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성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식품부와 유통공사에 신청(1월말 기한,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에그릭스)을 통한 사업신청 병행)
 -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조직화 입증서류 등
 -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사업성진단 결과는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신청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5일 기한)
- 진단결과 보고 및 통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말일 기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3. 지원대상」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성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현황과 사유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한 후 사업성 진단에서 제외
- 사업성진단서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단, 수지 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유통공사, 농협 등)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시·도

- 시·도지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사업성진단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성진단결과 반영현황은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
- 총사업비(10% 이상), 운영주체, 취급물량(20% 이상), 사업부지 등은 사업성진단 이후 변경 불가
 - 사업성진단 이후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

<심사항목 외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통합마케팅조직 및 품목광역조직,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자조금 조성단체 추천조직 등
 - *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방지,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
- ② 농지가 아닌 곳에 사업장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경우(확보된 농지의 전용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함)
- ③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 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 ④ 농지 중 지목이 “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 농업진흥지역밖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에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 심사평가기준 : [별지 3-1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13번 대분류 평가항목(유통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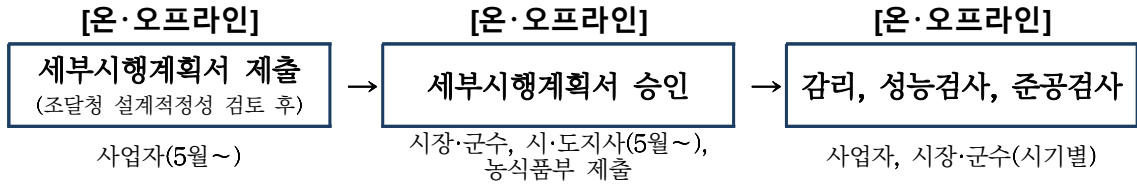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연도로 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제주감귤농협(서귀포 안덕·대정 거점APC '17년 사업포기, '18년부터 '20년까지 지원제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세부계획수립》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시·군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시설공사로서 전기, 통신, 소방은 포함. 설계·감리비와 선별기 등 기계장비는 제외)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포함)(재정사업관리규정 제57조)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이란 당초 승인 비목 간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을 동일 사업 시설비, 주요장비 설치비 및 기타보완 사업비로 변경 가능
-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 후 운영자(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감리》

사업자(신청조직)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가 수행

《성능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선별시설 : 공공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고(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검정기준 참조), 상품화설비(선별시스템) 전체 예산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상품화 설비 전체에 대한 검수*를 공인기관(농업실용화재단 등)에 받아야 함
 - * 상품화설비 검수 : 계약 후 최종 제출된 설계서, 규격서, 내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최종 검수 후 승인
- (설치 전) 종합검정 확인 → 선별기 설치 → (설치 후)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지급
- * 투입, 세척, 포장시설도 종합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 설치
- 저온저장고 :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가 설계하여 시공한 후 최종 성능검사 실시
- 주요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
- 저온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설비를 우선 권장함

| | | | | | | | | | |
|-------------|--|----------|---------|---------|-------------------------------|----|--------------|----------|--|
| 세부사업명 | 과수생산유통지원 | | | | |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 내역사업명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 | | | | 예산 (백만원) | 43,338 | |
| 사업목적 | 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 | | | | | | | | |
| 사업주요내용 | 고품질 생산(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등) 및 재해예방시설 등 지원 | | | | | | | | |
| 국고보조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 | | | | | |
| 지원자격 및 요건 |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고, 3년 이상(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 | | | | | | | |
| 지원한도 |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 | | | | | | | | |
| 재원구성 (%) | 국고 | 20 | 지방비 | 30 | 용자 | 30 | 자부담 | 20 |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이후 | | | | |
| | 합 계 | 137,885 | 150,356 | 132,245 | 486,640 | | | | |
| | 국 고 | 27,577 | 30,071 | 26,449 | 97,328 | | | | |
| | 지방비 | 41,365 | 45,107 | 39,674 | 145,992 | | | | |
| | 용 자 | 18,321 | 15,360 | 16,889 | 54,016 | | | | |
| | 자부담 | 50,622 | 59,818 | 49,233 | 189,304 | | | | |
| 담당기관 | | 담당과 | | | 담당자 | | 연락처 | | |
| 농림축산식품부 | | 원예경영과 | | |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중순 주무관 서경호 | | 044-201-2255 |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FTA기금관리팀 | | | 차 장 김은희 | | 061-931-1126 | | |
| 농협은행 | | 농식품금융부 | | | 과 장 이주섭 | | 02-2080-7587 | |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1.30.일까지) | | | | 사업시행기관 | | 자치단체 | |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 | | | | | |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지원제의 대상자]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배 성장조절제(지베렐린·에세폰 등)처리 경영체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해 다음 해부터 적용)
 - * 의무자조금 거출이 시작된 품목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약정한 경영체

* 참여조직 자격요건 : 전년도에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에 취급액의 15%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

* 참여조직의 상위조직 참여목표(연차평가 적용) : ('19~'20) 40%

< 우선지원 >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경영체
- 무병묘 관찰포 선정농가(출하실적 등에 관계없이 품종갱신, 기타사업 등 지원 가능)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 (동일과원 또는 대체과원(동일면적)에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타 품목의 과수 식재 가능)

< 가점부여 >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영체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대상자 가점 부여
-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 이상 고점했거나 식재한 경영체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영체(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경영체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선정기준 미달 경영체에 대한 재심사]

- ◆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영체에 대하여는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심 요청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

- 사업성취 가능성, 신용도, 기술,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 후 대출기관에 통보

* 심사위원회 : 과수발전협의회, 농정심의회 활용 또는 행정지도기관관련단체 등으로 구성

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 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공기순환팬,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환풍기,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 필요

- 다만,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2등급) 이상 사업시행주체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아래 지역별·품목별 맞춤형사업 추진 가능

· 공동이용장비(SS기, 고소작업차, 승용제초기 등), 추가 사업(1개)

[경영체 지원제의 대상]

- 1)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타이백 등 다공질필름 등)
- 2)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기, 온풍기, 예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등)
- 3)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 4)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 5)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 시 신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 6)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
- 7)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국고용자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용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식품금융부)

6. 지원한도액 기준

-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 | | | | | | | |
|---|---|---|--------|--------|---|--------------|---|------|
| 세부사업명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 |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
| 내역사업명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지원 | | | | 예산 (백만원) | 17,488 | | |
| 사업목적 | ○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지원 | | | | | | | |
| 사업 주요내용 |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 | | | | |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및 제57조(기금의 용도) | | | | | | |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된 사업자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액 비율이 30%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 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사업신청은 지역 원예산업종합계획 및 산지유통 종합평가와는 무관함 | | | | | | | |
| 지원한도 | ○ 신규시설의 경우 최소 25~60억원 내외(푸드플랜 APC 5~40억원 내외), 보완시설의 경우 최소 5~60억원 내외 | | | | | | | |
| 재원구성 (%) | 국고 | 30~50 | 지방비 | 10~50 | 용자 | - | 자부담 | 0~4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
| | 합 계 | 58,283 | 58,283 | 73,016 | 58,293 | | | |
| | 국 고 | 17,485 | 17,485 | 21,905 | 17,488 | | | |
| | 지방비 | 17,485 | 17,485 | 21,905 | 17,488 | | | |
| | 자부담 | 23,313 | 23,313 | 29,206 | 23,317 | | | |
| 담당기관 | | 담당과 | | | 담당자 | | 연락처 |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자치단체 | | 유통정책과 산지시설부 원예산사업부 사·군·구 농정담당부서 | | | 사무관 하미숙 차 장 안만물 계 장 김주리 - | | 044-201-2223 061-931-1021 02-2080-6314 - | |
| 신청시기 | 전년도 6.30.까지 | | | | 사업시행기관 | | 시·도, 시·군·구 | |
| 관련자료 | | | | | | | | |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자체, 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

* 원예산업종합계획 : 지역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이 수립)

- 기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의 변경(산지통합마케팅조직, 시설설치 예정사업자 등)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및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지역별 1회 지원에 한함

나. 지원요건

(1) 기본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으로 사업 부지를 확보한 사업자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사업신청은 지역 원예산업종합계획 및 산지유통종합평가와는 무관함

* 예고 : (현재) 직전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선정조직 → ('22년 사업자 선정시) 직전 3개년 산지유통종합평가 선정조직

(2) 사업규모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참여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액 비율이 30%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단, 해당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조직화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 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 매입액

* 연합사업단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적의 연결성 인정

(3) 시설규모

- **보완시설** : 보완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고 최근년도 연간 가동일수가 150일 이상인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농산물산지유통센터(330㎡이상)의 개보수(상품화설비만 교체 가능) 및 증축(부지를 달리하는 시설확충 포함)
- *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 및 단순 리모델링(사무실, 식당, 회의실 등 비상상품화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공사) 등은 지원제외
- * 가동일수 산출기준 : 집하·선별·포장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
- * AgriX 시스템에 등록(본사업 신청일까지)한 사업자에 한해 신청자격 부여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650㎡ 이상이며, 연간 최소 200일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330㎡ 이상)가 없는 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으로 건립된 시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

다. 별도요건

- (1)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출자금 3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실적 3년 이상
 - 조합원(농업인 주주) 20명 이상

○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자부담금의 50%이상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사업 신청일 기준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농업인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농업인의 지분으로 간주,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도 충족하여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2)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체(농업법인)에 한해 지원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는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

* 관련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라. 지원제한 기준

○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은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중단(보완시설은 지원 가능)

- 단, 대형 APC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가능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당초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일수가 250일 이상

③ 원예농산물 기준 취급액 100억원 이상 ④ 영업이익 5% 이상

* 대형 APC : 과수거점APC, 원예브랜드APC, 총 사업비(부지구입비 제외, 보완사업비 포함) 8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개별 건물 포함) 10,000㎡ 이상인 APC

○ 신규 일반APC 설립 시군은 향후 3년간 동일품목에 대하여 대형APC 지원 중단

○ 보완사업자는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한

○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이월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시설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15년도 사업부터 1회로 적용)
- * 동일한 연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봄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5호, 제6호)
- * 임산물류, 양곡부류(미곡을 제외한 잡곡 등)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감리비 등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
 - * 기본설계는 사업신청연도 5월말, 실시설계도서(인허가접수도서, 선별장비 배치도 등)는 APC건축심의(12월) 전까지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파일공사, 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
 -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 증축·개보수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는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가능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 신축의 경우, 저온저장고는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의 30% 이상 투자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상품화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투입·선별·포장기,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디파렛타이저, 세척기, 건조기, 소포장기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신선편이시설(세척, 급식 식자재 등), 가공시설(잼, 주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등
-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 1항(별표5,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선별·세척 등 설비별 IoT센서, IQF(급속동결) 설비
 - RFID(생산·유통 이력관리), 클라우드서비스 APC표준시스템, ERP(통합관리·지원시스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단, 신규시설은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 품목광역조직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로 지원
 - * 공공유형은 기존시설 보완만 지원 가능(국고 50%, 지방비 50%)
 - * 다만,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시설은 제한적으로 공공유형으로 신규설치 가능(연간 3개소 내외,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보조율은 국고 40~50%, 지방비 50~60%로 지원가능)
 - * (지방비 내 부담비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시도 50%, 시군 50%)을 준수하는 지자체 우선선정
- 사업기간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총사업비)
 - 신규시설 : 최소 25억원 ~ 60억원 내외(푸드플랜 APC 5억원 ~ 40억원 내외)
 - 보완시설 : 최소 5억원 ~ 60억원 내외
-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물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 가능

Ⅲ.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 보조금집행자(시·군)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단, 재정조기집행 및 자재구입 등 부득이한 경우 선급금 지급 가능
-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나. 감 리

사 업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 또는 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수행하여야 함
 - 저온저장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능시험만 받도록 함
 - 상품화기계설비 설치비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가급적 별도의 상품화기계 컨설팅 실시
- 감리비는 시·군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보조사업자가 직접 지급

다. 준공검사

지 자 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 준공된 시설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관리시스템(www.agrix.go.kr)에 등록 후 관리

라. 기타 사항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규모 산정 및 간이설계 등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등에 상담 및 문의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

IV. 사업포기 사업자 및 보조금 집행위반 사업자 내역

1.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향후 1~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기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사업자〉

| 시도 | 시군 | 사업자 | 포기년도 | 제한기간 | 비고 |
|----|----|-------|------|------|-----|
| 경기 | 안성 | 산마루영농 | 2016 | 2021 | 사업자 |

| | | | | | | | | |
|-------------------|--|---------|---------|--------------------------|--------------|--------------|-----|----|
| 세부사업명 | 원예시설현대화 | |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 |
| 내역사업명 | 시설원예현대화 | | | 예산 (백만원) | 14,816 | | | |
| 사업목적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 | | | | | |
|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 | | | | | |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 | | | | |
|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류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 | | | | |
| 지원한도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집행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 | | | | | |
| 재원구성(%) | 국고 | 20 | 지방비 | 30 | 용자 | 30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
| | 합 계 | 119,100 | 101,920 | 77,150 | 46,300 | | | |
| | 국 고 | 23,820 | 20,384 | 15,430 | 9,260 | | | |
| | 지방비 | 35,730 | 30,576 | 23,145 | 13,890 | | | |
| | 용 자 | 35,730 | 30,576 | 23,145 | 13,890 | | | |
| | 자부담 | 23,820 | 20,384 | 15,430 | 9,260 | | | |
| 담당기관 | | 담당과 | | 담당자 | | 연락처 | | |
| 농림축산식품부 | | 원예경영과 | |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은철 | | 044-201-2256 | |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 | | 사업시행기관 | | 자치단체 | |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 | | | | | |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1. 사업대상자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단, 고정식 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 지원 가능
 - 농업인 :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2. 지원유형별 자격 및 요건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 종합평가
- 일반원예시설(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한 자)
 -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 화훼재배시설 및 육묘시설 운영 능가는 일반원예시설 사업대상자 요건 의무 제외
- 일반원예시설(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3년 이내인 자)
 -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
 - * 화훼재배시설 및 육묘시설 운영 능가는 일반원예시설 사업대상자 요건 의무 제외
- 화훼류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 대상자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 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시·군의 전체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30% 이하로 지원
 -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1년부터 적용)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일반원예시설·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 * 측고인상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 기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방충망*
 - * 수출 농산물 재배용 온실에 한해 지원(단,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시에만 가능)
-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
 -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 단, 사업신청 시 공동구매 추진계획을, 설치 후에는 추진실적을 반드시 농식품부에 제출해야하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화훼류)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 난류(호접란·심비디움) 미국수출 검역절차에 따른 온실개선 시설·설비 : 이중출입문(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 재배벤치(바닥으로부터 46cm 이상 높이, 벤치다리 동판 설치 등)

< 지원제외 대상시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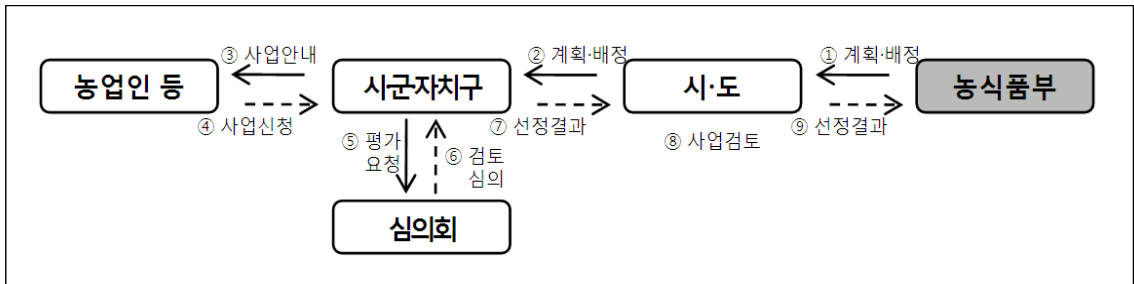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예냉·저장·선별시설 등(용자지원 전환)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 - 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III

사업추진체계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 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시·군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출하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21년부터 적용)
-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1~4)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일반원예시설

- 사업신청자는 소속 농업인 등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출하약정서와 함께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화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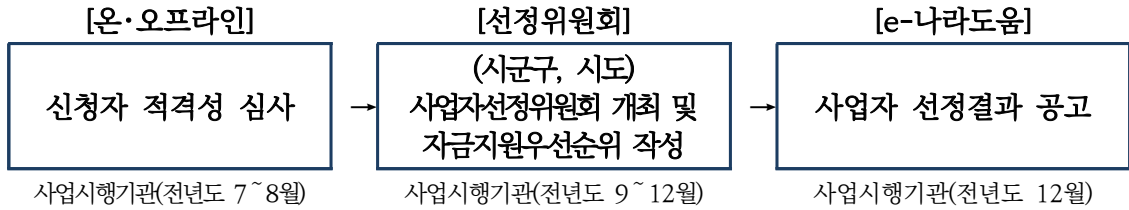
- 사업신청자는 소속 농업인 등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출하약정서와 함께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용자 희망농가는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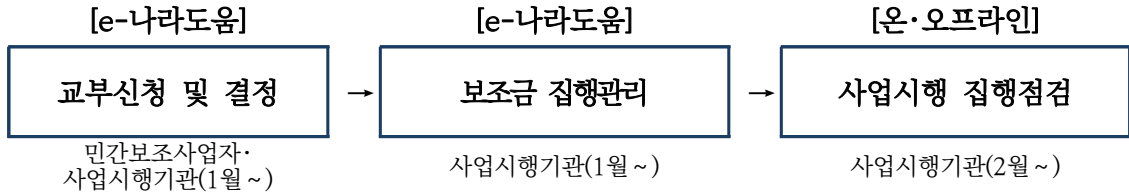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의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 결정통지서),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용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용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 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용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용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용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용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용자,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국고용자 대출을 신청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단가계약),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기타 시설·장비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등)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측고인상 시에는 측고인상 이후 해당시설이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을 상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계산서를 제출
 - * 구조계산서 발급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6-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으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사·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 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사·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 중요재산 | 사후관리기준·기간 | | 처분제한기준 |
|-----------|-----------|-----|--|
| ■ 설비시설 | 준공일 | 10년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 ■ 주요기계·장비 | 납품일 | 5년 |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4)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 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사후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미이행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며,
 - 제79조제1항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IV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3월)
- 농식품부는 시·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0.3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0.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0.12월) → 사업추진('21.1월~)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
- 제출기한 : '20. 7~8월
- 신청자격 : '20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 '21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0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별지 제2-1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 작성대상: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 화훼류

1. 일반현황

가. 단지(단체) 개요

○ 기본현황

| | | | | | | |
|----------------|---|--------------|----------------|------------|------------|----------------|
| 사업종류 | <input type="checkbox"/> 농산물전문생산단지, <input type="checkbox"/> 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 <input type="checkbox"/> 화훼류 (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 | | | | |
| 단지(단체)명 | | | 대표자명 | | | |
| 소재지 | | | | | | |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 모사전송(FAX) |
| 회원농가 수 | | | 호 | 재배품목 | | |
| 단지규모 | m ² | 시설재배규모 | m ² | 수출참여규모 | | m ² |
| 기 지원액 (백만원) | 사업명(지원연도) | 합계 | 국고보조 | 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 | <i>시설원예현대화(2016)</i> | <i>1,000</i> | <i>200</i> | <i>300</i> | <i>300</i> | <i>200</i> |

○ 단지 운영실태 평가결과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 |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점 | 점 | 점 |

○ 기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 | | |
|--------|--|------|------|
| 수출 업체명 | | 담당자: | 연락처: |
| 기술지도기관 | | 담당자: | 연락처: |
| 단지관리기관 | | 담당자: | 연락처: |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 시설규모 (합계) | 시설종류별 규모 | | | | | |
|----------------|----------------|----------------|----------------|----------------|----------------|----------------|
| | 유리(경질판) 온실 | 자동화비닐 온실 | 일반비닐 온실 | 비가림시설 | 육묘·육종장 | 기타 |
| m ² | m ² | m ² | m ² | m ² | m ² | m ²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 부대시설·장비 | | 규모 (수량) | 시설비 | 보관(처리) 능력 | 주소 및 소유자 | 운용방법 |
|---------|------|-------------------|-----|--------------|----------|---------------------|
| 명칭 | 설치연도 | | | | | |
| | | m ² /대 | 백만원 | 톤 | |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재배현황(품종별)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 품종명 | | () | () | () | () | 기타 | 계 |
|------------------|---------|-----|-----|-----|-----|----|-----|
| 재배 면적 (ha) | 2017(A) | | | | | | |
| | 2018 | | | | | | |
| | 2019(B) | | | | | | |
| | 비율(B/A) | | | | | | 100 |
| 생산량 (톤) | 2017(A) | | | | | | |
| | 2018 | | | | | | |
| | 2019(B) | | | | | | |
| | 비율(B/A) | | | | | | 100 |

* 품종명 괄호()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마.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 교육기관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
| | | | |
| | | | |

*수료증 사본 별첨

바.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명(지원연도) | 사업대상지 주소 | 면적(m ²) | 총사업비 (천원) | 국고보조 (천원) | 융자 (천원) | 지방비 (천원) | 자부담 (천원) |
|-----------|----------|---------------------|--------------|--------------|------------|-------------|-------------|
| | | | | | | | |
| | | | | | | | |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 구분 | 세부내역 | 규모·수량 (m ² , 대, 개소) | 소요액 (백만원) | 추진시기 (기간) | 참여농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m²(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 합계 | 정부보조 | 융 자 | 지방비 | 자부담 | | |
|-----|------|-----|-----|-----|------|------|
| | | | | 소계 | 자기자금 | 외부차입 |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자부담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
-
- 국고용자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
-
- 담보물 현황

| 종류 | 소유자 | 면적 | 추정가격 | | 소재지 | 비고 (선순위 설정액) |
|----|-----|----------------|---------------|------|-----------|--------------------|
| | | | 공시지가 (감정가) | 실거래가 | | |
| | | m ² | 백만원 | 백만원 | (상세주소 기재) | |
| | | | | | | |
| | | | | | | |

마. 생산 및 수출계획

- 생산계획

| 구분 | 연도 | 출하실적(톤) | | | | 농식품 인증(%) | 표준규격 출하(%) |
|--------------|---------|---------|------|------|----|--------------|---------------|
| | | 계 | 공동출하 | 개별출하 | 수출 | | |
| 생산실적 및 계획 | 2017 | | | | | | |
| | 2018 | | | | | | |
| | 2019 | | | | | | |
| | 2020 계획 | | | | | | |

- 수출계획

| 구분 | 연도 | 품목 (품종) | 수출국 (업체명) | 재배면적 (m ²) | 물량 (톤) | 금액 (백만원/천\$) |
|--------------|---------|------------|--------------|---------------------------|-----------|-----------------|
| 수출실적 및 계획 | 2017 | | | | | |
| | 2018 | | | | | |
| | 2019 | | | | | |
| | 2020 계획 | | | | | |
| 수출비율(%) | - | - | - | - | % | % |
| 수출신장(%) | - | - | - |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바. 수출 및 선별방법

| 구분 | 수 출 자 | | 수출방법 | | 선별방법 | | 재배방법 | |
|---------|-------|----|------|------|------|------|------|----|
| | 자체 | 위탁 | 개별농가 | 단지공동 | 개별농가 | 단지공동 | 비계약 | 계약 |
| 2017 | % | % | % | % | % | % | % | % |
| 2018 | | | | | | | | |
| 2019 | | | | | | | | |
| 2020 계획 | | | | | | | | |

사. 농업분야 교육이수 실적(안전성, 수출 등)

| 교육기관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
| | | | |
| | | | |

3.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사업 추진 필요성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

2) 수출 확대

○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

5) 기타

○

4.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및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가.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 전체 농가 수: 호

○ 참여 농가 수: 호

○ 설문조사 일시 및 의향조사 결과:

나.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성명):

○ 연락처:

- 구성원 수:
 - 구성원:
- 운영실적 및 계획:

5. 지자체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 방안

가. 시·도, 시·군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 사항

- 중기대책(향후 5년) 및 지원 사항
- 장기대책(향후 10년) 및 지원 사항

나.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및 활동계획

-
-

6. 지역사회에의 기여계획

-
-

7.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 |
|-------------|-----------|
| 사업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 (서명 또는 인) |
| ○○도지사·광역시장 | (서명 또는 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 작성대상: 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 이내)

1. 일반현황

가. 경영체 기본현황

| | | | | | |
|----------------|------------------|--|--|---------------|--|
| 법인명/ 농업인 성명 | | 법인 대표명 | | 설립일/생년월일 | |
| | | | | 성 별 | |
| 주소 |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 | | |
| | | 마을 이름: | | | |
| | 실제 거주지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 | |
| | | (리·통) (번지) | | | |
| | | 마을 이름: | | | |
| 전화번호 | | | | 휴 대 전 화 | |
| 팩스번호 | | | | 전 자 우 편 | |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 시설규모 (합계) | 시설종류별 규모 | | | | | |
|----------------|----------------|----------------|----------------|----------------|----------------|----------------|
| | 유리(경질판) 온실 | 자동화비닐 온실 | 일반비닐 온실 | 비가림 시설 | 육묘·육종장 | 기타 |
| m ² | m ² | m ² | m ² | m ² | m ² | m ²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 부대시설·장비 | | 규모 (수량) | 시설비 | 보관(처리) 능력 | 주소 및 소유자 | 운영방법 |
|---------|------|-------------------|-----|--------------|----------|------|
| 명칭 | 설치연도 | | | | | |
| | | m ² /대 | 백만원 | 톤 | | * |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재배현황(품종별)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 품종명 | | () | () | () | () | 기타 | 계 |
|------------------|---------|-------|-------|-------|-------|----|-----|
| 재배 면적 (ha) | 2017(A) | | | | | | |
| | 2018 | | | | | | |
| | 2019(B) | | | | | | |
| | 비율(B/A) | | | | | | 100 |
| 생산량 (톤) | 2017(A) | | | | | | |
| | 2018 | | | | | | |
| | 2019(B) | | | | | | |
| | 비율(B/A) | | | | | | 100 |

* 품종명 괄호()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마. 농업분야 관련 교육이수 실적

| 교육기관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
| | | | |
| | | | |

*수료증 사본 별첨

바.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명(지원연도) | 사업대상지 주소 | 면적(㎡) | 총사업비 (천원) | 국고보조 (천원) | 융자 (천원) | 지방비 (천원) | 자부담 (천원) |
|-----------|----------|-------|--------------|--------------|------------|-------------|-------------|
| | | | | | | | |
| | | | | | | | |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 구분 | 세부내역 | 규모·수량 (㎡, 대, 개소) | 소요액 (백만원) | 추진시기 (기간) | 참여농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조달계획

| 합계 | 정부보조 | 융 자 | 지방비 | 자부담 | | |
|-----|------|-----|-----|-----|------|------|
| | | | | 소계 | 자기자금 | 외부차입 |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 자부담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

-

- 국고융자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

-

○ 담보물 현황

| 종류 | 소유자 | 면적 | 추정가격 | | 소재지 | 비고 (선순위 설정액) |
|----|-----|----------------|---------------|------|-----------|--------------------|
| | | | 공시지가 (감정가) | 실거래가 | | |
| | | m ² | 백만원 | 백만원 | (상세주소 기재) | |
| | | | | | | |
| | | | | | | |

마. 생산 및 수출계획

○ 생산계획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 구분 | 연도 | 출하실적(톤) | | | 농식품 인증(%) | 표준규격 출하(%) |
|--------------|---------|---------|------|------|--------------|---------------|
| | | 계 | 공동출하 | 개별출하 | | |
| 생산실적 및 계획 | 2017 | | | | | |
| | 2018 | | | | | |
| | 2019 | | | | | |
| | 2020 계획 | | | | | |

○ 수출계획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 구분 | 연도 | 품목 (품종) | 수출국 (업체명) | 재배면적 (m ²) | 물량 (톤) | 금액 (백만원/천\$) |
|--------------|---------|------------|--------------|---------------------------|-----------|-----------------|
| 수출실적 및 계획 | 2017 | | | | | |
| | 2018 | | | | | |
| | 2019 | | | | | |
| | 2020 계획 | | | | | |
| 수출비율(%) | - | - | - | - | % | % |
| 수출신장(%) | - | - | - |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3. 판매 계획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가.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나. 판매 경로 및 방법

○

다.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 번호 | 농가명 | 주소지 | 연락처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재배 면적 (㎡) | 시설 | | 재배 품목 | 예상량(톤) | |
|----|-----|-----|-----|---------------|-----------------|----|-------|----------|--------|----|
| | | | | | | 종류 | 면적(㎡) | | 생산 | 수출 |
| 계 | 명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11 | | | | | | | | | | |
| 12 | | | | | | | | | | |
| 13 | | | | | | | | | | |
| 14 | | | | | | | | | | |
| 15 | | | | | | | | | | |
| 16 | | | | | | | | | | |
| 17 | | | | | | | | | | |
| 18 | | | | | | | | | | |
| 19 | | | | | | | | | | |
| 20 | | | | | | | | | | |
| 21 | | | | | | | | | | |
| 22 | | | | | | | | | | |
| 23 | | | | | | | | | | |
| 24 | | | | | | | | | | |
| 25 | | | | | | | | | | |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사업명 | 총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재정용자 | 수익자부담 |
|--------|------|----|-----|------|-------|
| 세부사업명 | | | | | |
| (△△사업) | | | | | |
| (□□사업) | | | | | |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 분야 | 부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세목 |
|-------|------|------|------|-------|--------------|
| 120 | 123 | 3000 | 3031 | 306 | 330-01 |
| 교통및물류 | 도시철도 | 0000 | 0000 | 00000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 세부사업명 | 예산액 | 기 교부액 | 교부 요청액 | 금회 교부액 | 교부잔액 | 비고 |
|--------|-----|-------|--------|--------|------|----|
| ○○사업 | A+B | | | | | |
| (△△사업) | A | | | | | |
| (□□사업) | B | | | | | |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 년 ○○월 ○○일

[별지 제7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 | | | | |
|---|----------------------|--|---------------------|--------------|--------------|
| 일 반 현 황 | 선정사업 | <input type="checkbox"/> 시설원에현대화, <input type="checkbox"/> ICT융복합확산, <input type="checkbox"/>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 | | |
| | 유형 |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 | | |
| |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체)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남/여) | |
| | 재배작물 (사육축종) | | 재배규모 (사육두수) | (㎡, 마리) | |
| | 소속 농가 수 | 호 | 사업참여 농가 수 | 호 | |
| | 주소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 | | |
| | 일반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사 업 계 획 | 사업명 | 사업내용 | 규모·수량 (㎡, 대, 개소) | 소요액 (백만원) | 추진시기 (기간) |
| | 당초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변경 | 합계 | | | |
| | | | | | |
| | | | | | |
|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 | | | | |
| <p>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 | | | |
| <p>*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p> | | | | | |

사업자 선정기준표(농산물전문생산단지)

- 단지명: (대표자:) □ 총득점: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1.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여/부), 2.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여/부), 3.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4.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여/부)

1.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결과(50%)

| 구분 | '16년(10%) | | '17년(15%) | | '18년(25%) | | 합계 |
|---------------|-----------|-------|-----------|-------|-----------|-------|----------------|
| | 배점 | 득점(A) | 배점 | 득점(B) | 배점 | 득점(C) | |
| ▪ 90점이상 | 10 | | 15 | | 25 | | A+B+C= ()점 |
| ▪ 80점이상~90점미만 | 8 | | 12 | | 20 | | |
| ▪ 70점이상~80점미만 | 6 | | 9 | | 15 | | |
| ▪ 60점이상~70점미만 | 4 | | 6 | | 10 | | |
| ▪ 50점이상~60점미만 | 2 | | 3 | | 5 | | |
| ▪ 50점미만 | 0 | | 0 | | 0 | | |

* 사업대상자 제외: 예비단지, 최근 평가결과 2년 연속 저평가 단지,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단지

2.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30%) * '19년 실적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 구분 | 배점 | 수출금액 | 총 출하금액 | 득점 |
|----------------|----|--------------|--------------|------------------------------------|
| ▪ 100% | 30 | | | $(A/B) \times 100 = ()\%$ ()점 |
| ▪ 75%이상~100%미만 | 24 | ▪ '17년: 백만원 | ▪ '17년: 백만원 | |
| ▪ 50%이상~75%미만 | 18 | ▪ '18년: 백만원 | ▪ '18년: 백만원 | |
| ▪ 25%이상~50%미만 | 12 | ▪ '19년: 백만원 | ▪ '19년: 백만원 | |
| ▪ 25%미만 | 6 | ▪ 합계(A): 백만원 | ▪ 합계(B): 백만원 | |

3. 최근 3년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20%) * '19년 실적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 구분 | 배점 | 공동선별·계산 실적 | 총 출하실적 | 득점 |
|---------------|----|------------|------------|------------------------------------|
| ▪ 90%이상 | 20 | | | $(A/B) \times 100 = ()\%$ ()점 |
| ▪ 80%이상~90%미만 | 16 | ▪ '17년: 톤 | ▪ '17년: 톤 | |
| ▪ 70%이상~80%미만 | 12 | ▪ '18년: 톤 | ▪ '18년: 톤 | |
| ▪ 60%이상~70%미만 | 8 | ▪ '19년: 톤 | ▪ '19년: 톤 | |
| ▪ 50%이상~60%미만 | 4 | ▪ 합계(A): 톤 | ▪ 합계(B): 톤 | |
| ▪ 50%미만 | 0 | | | |

4. 가점(중복 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5점):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5점):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 | |
|------------------|------------------|
|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
| 충족 () / 미충족 () | 대상 () / 미대상 () |

사업자 선정기준표(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초과)

□ 사업자명: (대표자:) □ 총득점: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1.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여/부), 2.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여/부), 3.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4.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여/부)

1. 사업계획서 평가(50%)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5점) |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 사업 기대효과의 적정성 (10점) | 지역사회 기여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10점) | 득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적정(10점) ▪ 적정(7.5점) ▪ 보통(5점) ▪ 미흡(2.5점) ▪ 매우미흡(0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높음(10점) ▪ 높음(7.5점) ▪ 보통(5점) ▪ 낮음(2.5점) ▪ 매우낮음(0점) | () 점 |

2. 최근 3년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30%)

| 구분 | 배점 | 공동선별·계산 실적 | 총 출하실적 | 득점 |
|---------------|----|---------------------|---------------------|------------------------------------|
| ▪ 90%이상 | 30 | | | $(A/B) \times 100 = ()\%$ ()점 |
| ▪ 80%이상~90%미만 | 24 | ▪ '17년: 톤 | ▪ '17년: 톤 | |
| ▪ 70%이상~80%미만 | 18 | ▪ '18년: 톤 | ▪ '18년: 톤 | |
| ▪ 60%이상~70%미만 | 12 | ▪ '19년: 톤 | ▪ '19년: 톤 | |
| ▪ 50%이상~60%미만 | 6 | ▪ 합계(A): 톤 | ▪ 합계(A): 톤 | |
| ▪ 50%미만 | 0 | | | |

3.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10%) * '19년 실적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 구분 | 배점 | 수출금액 | 총 출하금액 | 득점 |
|----------------|-----|-----------------------|-----------------------|------------------------------------|
| ▪ 100% | 10 | | | $(A/B) \times 100 = ()\%$ ()점 |
| ▪ 75%이상~100%미만 | 7.5 | ▪ '17년: 백만원 | ▪ '17년: 백만원 | |
| ▪ 50%이상~75%미만 | 5 | ▪ '18년: 백만원 | ▪ '18년: 백만원 | |
| ▪ 25%이상~50%미만 | 2.5 | ▪ '19년: 백만원 | ▪ '19년: 백만원 | |
| ▪ 25%미만 | 0 | ▪ 합계(A): 백만원 | ▪ 합계(A): 백만원 | |

4. 주 품목에 대한 사·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10%) * '19년 실적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 구분 | 배점 | 해당 조직 | ○○시·도 | 득점 |
|----------------|-----|---------------------|---------------------|------------------------------------|
| ▪ 100% | 10 | | | $(A/B) \times 100 = ()\%$ ()점 |
| ▪ 75%이상~100%미만 | 7.5 | ▪ '17년: 톤 | ▪ '17년: 톤 | |
| ▪ 50%이상~75%미만 | 5 | ▪ '18년: 톤 | ▪ '18년: 톤 | |
| ▪ 25%이상~50%미만 | 2.5 | ▪ '19년: 톤 | ▪ '19년: 톤 | |
| ▪ 25%미만 | 0 | ▪ 합계(A): 톤 | ▪ 합계(A): 톤 | |

5. 가점(중복 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5점):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6.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 | |
|------------------|------------------|
|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
| 충족 () / 미충족 () | 대상 () / 미대상 () |

사업자 선정기준표(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이내)

□ 사업자명: (대표자:) □ 총득점: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1.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여/부), 2.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여/부), 3.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4.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여/부)

1. 사업계획서 평가(50%)

| 생산·수출계획의 실현가능성(15점) |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 판매계획의 적정성 (10점) | 중장기 계획의 실현가능성(10점) | 득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적정(10점) ▪ 적정(7.5점) ▪ 보통(5점) ▪ 미흡(2.5점) ▪ 매우미흡(0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높음(10점) ▪ 높음(7.5점) ▪ 보통(5점) ▪ 낮음(2.5점) ▪ 매우낮음(0점) | () 점 |

2. 사업 신청일 기준 재배예정 주 품목에 대한 재배경험(30%)

| 구분 | 배점 | 공동선별·계산 실적 | 득점 |
|----------------|----|---|-------|
| ▪ 4년 이상 |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이전: 개월 ▪ '17년: 개월 ▪ '18년: 개월 ▪ '19년: 개월 ▪ 합계: 년 개월 | () 점 |
| ▪ 3년 이상 4년 미만 | 40 | | |
| ▪ 2년 이상 3년 미만 | 30 | | |
| ▪ 1년 이상 2년 미만 | 20 | | |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0 | | |
| ▪ 6개월 미만 | 0 | | |

3.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농업 교육이수 시간(20%)

| 구분 | 배점 | 공동선별·계산 실적 | 득점 |
|--------------------|----|---|-------|
| ▪ 100시간 이상 |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시간 ▪ '17년: 시간 ▪ '18년: 시간 ▪ '19년: 시간 ▪ 합계: 시간 | () 점 |
| ▪ 7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 40 | | |
| ▪ 40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 30 | | |
|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20 | | |
| ▪ 14시간 이상 | 10 | | |
| ▪ 14시간 미만 | 0 | | |

4. 가점(중복 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5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 | |
|------------------|------------------|
|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
| 충족 () / 미충족 () | 대상 () / 미대상 () |

사업자 선정기준표(화훼류)

□ 사업자명: (대표자:) □ 총득점: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1.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여/부), 2.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여/부), 3.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4.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여/부)

1. 사업계획서 평가(40%)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5점) |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 생산·수출계획의 적정성 (10점) | 득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적정(10점) ▪ 적정(7.5점) ▪ 보통(5점) ▪ 미흡(2.5점) ▪ 매우미흡(0점) | () 점 |

2. 최근 3년간 총 출하실적 중 수출실적(40%)

| 구분 | 배점 | 수출실적 | | 총 출하실적 | | 득점 |
|---------------|----|----------|---|----------|---|-------------------------------------|
| ▪ 90%이상 | 50 | | | | | $(A/B) \times 100 = ()\%$ () 점 |
| ▪ 80%이상~90%미만 | 40 | ▪ 2017년: | 톤 | ▪ 2017년: | 톤 | |
| ▪ 70%이상~80%미만 | 30 | ▪ 2018년: | 톤 | ▪ 2018년: | 톤 | |
| ▪ 60%이상~70%미만 | 20 | ▪ 2019년: | 톤 | ▪ 2019년: | 톤 | |
| ▪ 50%이상~60%미만 | 10 | ▪ 합계(A): | 톤 | ▪ 합계(A): | 톤 | |
| ▪ 50%미만 | 0 | | | | | |

3. 해당 품목에 대한 시·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20%)

| 구분 | 배점 | 해당 조직 | ○○시·도 | 득점 |
|----------------|----|----------|-------|-------------------------------------|
| ▪ 100% | 20 | ▪ 20 년: | 톤 | $(A/B) \times 100 = ()\%$ () 점 |
| ▪ 50%이상~100%미만 | 16 | ▪ 20 년: | 톤 | |
| ▪ 30%이상~50%미만 | 12 | ▪ 20 년: | 톤 | |
| ▪ 20%이상~30%미만 | 8 | ▪ 20 년: | 톤 | |
| ▪ 20%미만 | 4 | ▪ 합계(A): | 톤 | |

4. 가점(중복 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5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 해당 품목의 전국 또는 지역단위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5점): ()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
|------------------|------------------|
| 충족 () / 미충족 () | 대상 () / 미대상 ()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 |
|--|
| 사 업 개 요 |
|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 1. 사 업 명 : |
| 2. 사 업 자 : |
| 3. 지원규모 : |
| 4. 재 원 : |
| 5. 사 업 비 : |
| 6. 사업기간 : |
| 사 업 자 ○ ○ ○ |

←————— 110cm —————→

나. 준공후 안내문

| |
|---|
|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1. 사 업 명 : |
| 2. 사 업 자 : |
| 3. 시설규모 : |
| 4. 재 원 : |
| 5. 사 업 비 : |
| 6. 사업기간 : |
| ○○○○년 월 일 |

←————— 30cm —————→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 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 | | | | | | | | | |
|-------------------|---|-------|-------|-------|----------|--|-------------|--------------|--|
| 세부사업명 | 과수 생산유통지원 | | | | | | 세목 | 자치단체자본 보조 | |
| 내역사업명 | 유통시설현대화 | | | | | | 예산 (백만원) | 450 | |
| 사업목적 | 선별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향상 및 부가가치제고 | | | | | | | | |
| 사업 주요내용 | 기존 APC 선별시설 등 증설보완 | | | | | | | |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 | | | | | |
|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존 운영 중인 APC시설(증설 및 보완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 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2천톤 이상의 과일전문 APC | | | | | | | | |
| 지원한도 | 700백만원 이내/개소 | | | | | | | | |
| 재원구성(%) | 국고 | 30 | 지방비 | 30 | 융자 | 0 | 자부 담 | 40 |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이후 | | | | |
| | 합 계 | 6,000 | 4,500 | 1,500 | 13,500 | | | | |
| | 국 고 | 1,800 | 1,350 | 450 | 4,050 | | | | |
| | 지방비 | 1,800 | 1,350 | 450 | 4,050 | | | | |
| | 자부담 | 2,400 | 1,800 | 600 | 5,400 | | | | |
| 담당기관 | | | 담당과 | | | 담당자 | | 연락처 | |
| 농림축산식품부 | | | 원예경영과 | | |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 | 044-201-2255 |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3.31.일까지) | | | | 사업시행기관 | | | |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S) 사업시행지침서 | | | | | | | | |

1. 사업대상자

-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우선선정 〉

- * 과실전문APC 운영협의회에 참여하는 조직 우선선정
- * 수출전문조직(원예전문단지 지정) 우선선정
-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부여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처리·선별·후처리·가공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포장·가공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 각 항목별 사업비 책정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단가)를 활용 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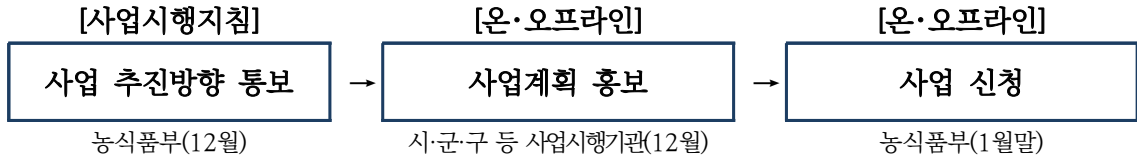
4. 지원기준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1년

5. 지원한도액 기준

- 지원단가 : 700백만원 이내/개소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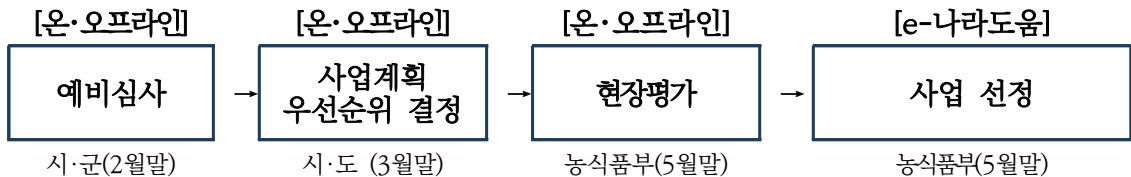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1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사업자(신청조직)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농정 관련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에 제출(2월말)
 - 신청시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시·도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말)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별지 1~3 서식>
 - *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등 포함 제출

〈심사항목 외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통합마케팅 조직,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참여조직, 수출전문조직
 - *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방지,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
- ②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 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현장실사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은 현장실사 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현장실사 평가 실시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단 구성 : 5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 시 반영
 - * 심사평가기준 : [별지 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평가결과 및 사업비 조정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 선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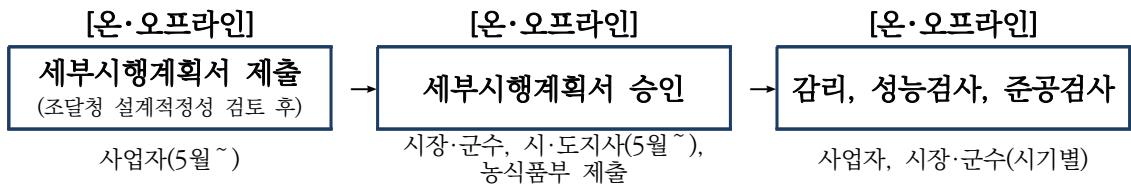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 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세부계획수립>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시·군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시설공사로서 전기, 통신, 소방은 포함. 설계·감리비와 선별기 등 기계장비는 제외)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포함)(재정사업관리규정 제57조)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감리》

-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감독공무원)를 선정하고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성능검사》

- 선별시설 : 공공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고(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검정기준 참조), 상품화설비(선별시스템) 전체 예산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상품화 설비 전체에 대한 검수를 공인기관(농업실용화재단 등)에 받아야 함
 - * 상품화설비 검수 : 계약 후 최종 제출된 설계서, 규격서, 내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최종 검수 후 승인
 - (설치 전) 종합검정 확인 → 선별기 설치 → (설치 후)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지급
 - * 투입, 세척, 포장시설도 종합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 설치
- 주요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함

| | | | | | | | | |
|----------------------------|--|-------|--------------------|-------------|------------------------------|-----|-----|----|
| 세부사업명 | 원예시설현대화(계속) | |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기타민간융자금 | | | |
| 내역사업명 |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 | | 예산 (백만원) | 2,896 | | | |
| 사업목적 |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 | | | | | |
| 사업 주요내용 |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지원 | | | | | | |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인삼산업법 제3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 | | | | |
| 지원자격 및 요건 | ○ 2019년도에 직파했거나 2020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 | | | | | |
| 지원한도 |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 | | | | | |
| 재원구성(%) | 국고 | 20 | 지방비 | 30 | 용자 | 30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
| | ○ 합 계 | 6,191 | 7,421 | 7,421 | 7,421 | | | |
| | - 보 조 | 1,510 | 1,810 | 1,810 | 1,810 | | | |
| | - 용 자 | 906 | 1,086 | 1,086 | 1,086 | | | |
| | - 지방비 | 2,265 | 2,715 | 2,715 | 2,715 | | | |
| - 자부담 | 1,510 | 1,810 | 1,810 | 1,810 | | | | |
| * 용자예산은 실집행율(40%)을 감안하여 편성 | | | | | | | | |
| 담당기관 | 담당과 | | 담당자 | | 연락처 | | | |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 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김선이 | | 044-201-2238 044-201-2239 | | | |
| 시·도 | 인삼산업 담당과 | | 인삼산업 담당자 | | | | | |
| 신청시기 | 사업대상자 : '20년 2월 15일까지 시·도담당자 제출 : '20년 2월 말까 지 | | | 사업시행기관 | | 지자체 | |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 | | | | | |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9년도에 직파했거나 2020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GAP(친환경 포함) 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
 -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
 - *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는 사업완료시까지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제출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의 90% 지원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 열거된 항목 이외는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2019-44호, 2019.8.23)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 적용 가능(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미보증 제품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시 철재지주 구입 및 현물 확인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 다만, 지원 받은 경영체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시·군에서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용용도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 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자금의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용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용자조건 :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용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5백만원 초과 기계 구입시라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해양수산분야



2020년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과장 이상길 사무관 고경호 | 044-200-5630 044-200-5642 |

I. 사업개요

1. 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에너지 이용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보급 및 이용·보급사업비의 조성) 및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등의 책무) 및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5년까지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722천kW 설치 지원

| 성과지표 | 2020 목표치 | 최근 4개년 실적 | | |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 |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
| 연간 설비보급용량(천kW) | 51 | 42 | 40 | 46 | 51 | 익년 2월 | 시설대수 * 장비별용량(KW)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실적 (당해년도 사업 12월 기준)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합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합 계 | 137,422 | 30,730 | 35,564 | 35,564 | 35,564 |
| - 국 비 | 81,252 | 18,438 | 20,938 | 20,938 | 20,938 |
| - 지방비 | 28,685 | 6,146 | 7,513 | 7,513 | 7,513 |
| - 자부담 | 27,485 | 6,146 | 7,113 | 7,113 | 7,113 |

II.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과 「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과 「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 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선정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사업자 선정 시 사업대상 양식장의 환수량에 맞는 적정설비가 당해연도에 모두 설치되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자를 선정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관련법에 따라 임차 잔여기간(사용허가)이 5년 이하로 정하여 있는 경우도 사업지원대상자에 포함(단,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여야 함.)
- 대체사업자 선정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사업자 선정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시 기존 가온 또는 냉각시설을 반드시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대한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선정 제외(신설)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해수 취수를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설치 지원

② 대상시설 요건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기계실 부지 등) 사업선정 전까지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시 기존 가온 또는 냉각 시설을 반드시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m³/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m²이상인 시설.
 - * 단, 위 (수)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드시 히트펌프 열원 확보(복합열원 히트펌프는 수열원 히트펌프 가동을 위한 열원 확보)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 * 미 허가(신고) 지하수 관정 및 취수시설 등은 열원으로 활용 불가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은 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水(수)면적 1,000m²이상 또는 사용전압 440V이하 취수펌프 3상 전동기 전체용량이 150kW 이상인 시설
-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
<지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 복합열원 히트펌프는 수열원 냉난방용량이 50% 이상의 제품

〈수열원 및 복합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 방법 및 성능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
 - *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인버터 적용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6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

③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2019년도에 지원자금의 한계로 적정시설 규모보다 작게 지원된 경우는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전년도 신청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로 당해 연도 재 신청 사업자를 2순위로 지원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때문에 적정설비의 일부만 설치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후 순위로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2019년도에 실시한 사업수요조사 시 신청한 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최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

○ 경합 시 우선순위

1. 정부연구사업 참여업체(현장시험 등) 지원
2.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는 자
3. 양식장 HACCP 등록양식장
4.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
5.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자
6. 유류사용 또는 환수량이 많은 양식시설
7. 태풍 등 재해를 입은 어가
 -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

④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

- 양식장 신축 또는 증축 등 사업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 확장을 고려한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에 설계도면 및 시공사 계약서 등 첨부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히트펌프 가동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 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냉각 연계 설비, **전기설비**, 전기 용량 증설 (**한전 용량 공사비 포함, 한전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열원설비의 주요구성(히트펌프, 열교환기, 전원설비 및 주 배관 설비)를 제외한 부대설비(기계실, 축열 및 폐열조, 여과설비)는 전체공사비의 30%이하로 지원 가능

* 보급되는 장비 및 구조물의 용량은 열원설비(히트펌프)의 용량에 부합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인버터 가동에 필요한 인버터가 설치된 배전반, 제어장치 및 부속설비, 배관·배선, 기존 설비와 연계시설, 온도저감시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취수설비(펌프, 취수배관) 교체 및 보수·보강은 지원 제외**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① 지원형태

- 지원조건(재원)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구 분 |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 | 지열·(해)수열원 히트펌프 | 60% | 20% | 20% |
| | 복합열원 히트펌프 | 50% | 20% | 30% |
| 에너지절감시설 | 인버터 | 60% | 20% | 20% |

- 지원규모 : 국비보조 20,938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사업비 |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35,563 | 20,938 | 7,112 | 7,512 |
|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 | 30,655 | 18,333 | 6,161 | 6,161 |
| 에너지절감시설 (복합열원) | 4,000 | 2,000 | 8,000 | 1,200 |
| 에너지절감시설 (인버터) | 1,009 | 605 | 202 | 202 |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형식변경 또는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또는 취소
- 사업진행 중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해당 투입비율대로 조정한 후 시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 사업신청 여가의 주소지와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사업장과의 행정구역상 시·군·구가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신청함(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여부 사전 확인)

② 지원한도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설치 희망 시설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생육적정 온도조건, 양식어가의 수조 환수량, 운영방법, 지역적 특성 등
 - 사 업 비 : 시설용량(kW) × 지원한도

| 구 분 | | 지원한도(천원/kW) | |
|-------|-------|-------------|-------|
| 설비 형식 | 지열 | 수직밀폐형 | 1,638 |
| | | 수평밀폐형 | 1,260 |
| | | 개방형(SCW형) | 1,508 |
| | (해)수열 | 해수열 | 850 |
| | | 복합열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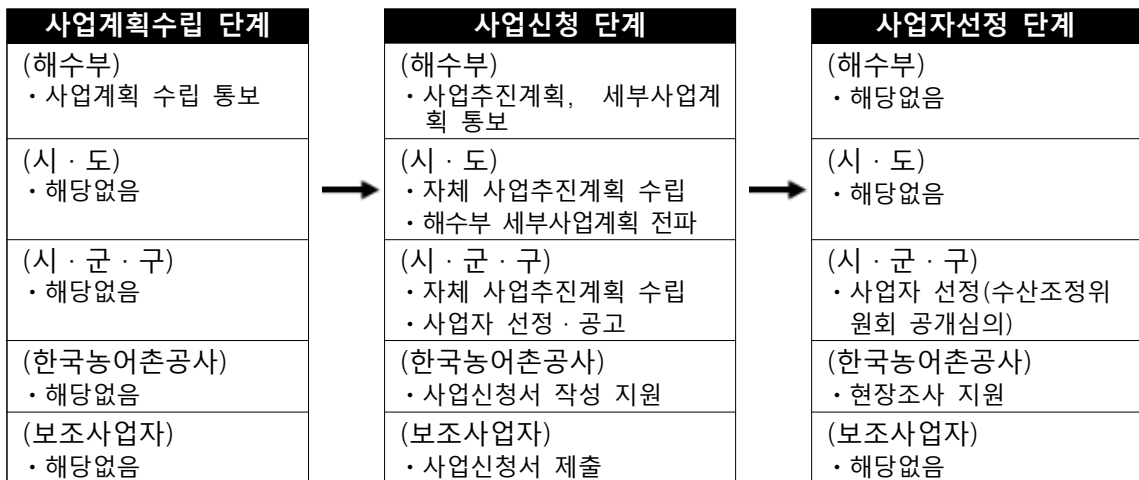
- * 해수열 및 복합열원 히트펌프의 단위별 최소 지원사업비 : 110백만원
- * 열교환기-히트펌프 설비는 열교환기를 제외하고 히트펌프 단독으로 보급가능 (열교환기 단독 보급 불가)
- * 설비형식별 적용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공고에 따라 변경적용 할 수 있다.
- * 히트펌프의 지원 한도 용량은 양식장에 확보되는 (해)수열원 용량 기준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지원 사업비는 각 인버터 용량과 대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원
 - 사업비(지원한도) = ∑(인버터 용량에 따른 금액 × 대수)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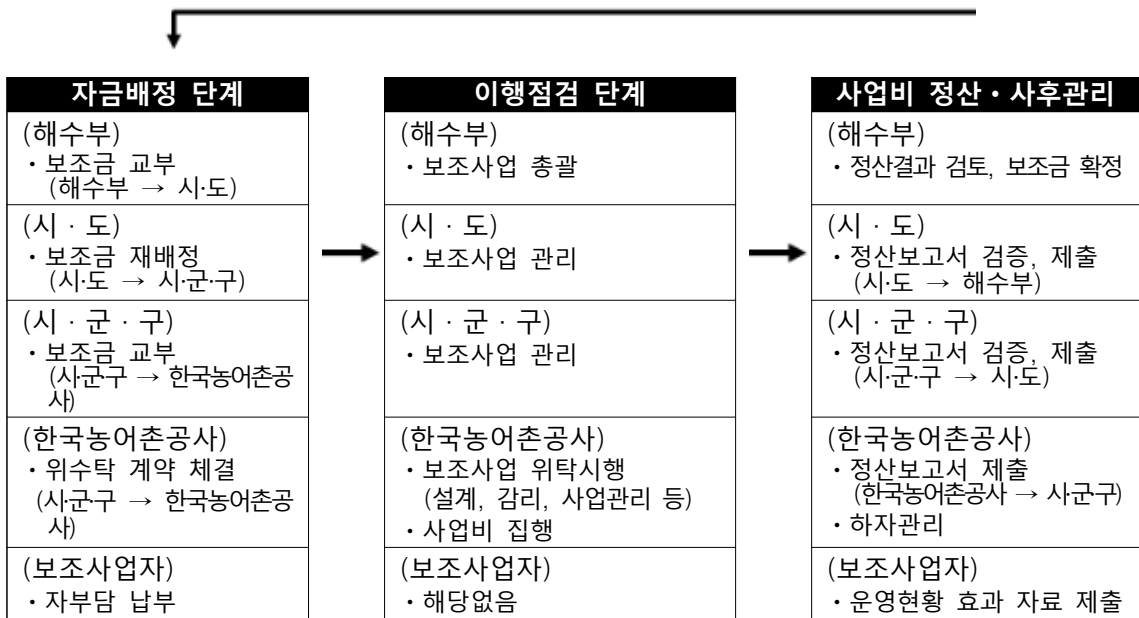
| 구 분 | | 금액(천원) |
|------|-----------|--------|
| 사용전압 | 인버터용량(kW) | |
| 380 | 3.7 | 4,080 |
| 380 | 5.5 | 4,600 |
| 380 | 7.5 | 5,020 |
| 380 | 11 | 5,600 |
| 380 | 15 | 6,020 |
| 380 | 18.5 | 6,410 |
| 380 | 22 | 6,980 |
| 380 | 30 | 7,553 |
| 380 | 37 | 8,665 |
| 380 | 45 | 9,331 |
| 380 | 55 | 10,551 |
| 380 | 75 | 11,299 |
| 380 | 90 | 13,623 |
| 380 | 110 | 16,776 |
| 380 | 132 | 19,234 |
| 380 | 160 | 21,851 |
| 380 | 185 | 26,444 |
| 380 | 220 | 29,724 |

- * 인버터는 전동기보다 한단계 상위규격 선정(예 전동기 3.7kW → 인버터 5.5kW)
- * 인버터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별도 가산(1.5배)
- * 인버터 용량 220kW 초과인 경우 직선보간법을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통지('19.12월)
- 시·도의 사업수요, 그 동안의 지원성과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배정 통보(예산 확정 시)
- * 집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시·도간 지원금 조정 배정

2. 사업신청 단계

시·도

-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통보('19.12월)

시·군·구

-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계속)
- 어가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자료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후 사업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20.2월)
 - 시·군·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성을 검토[별지 제1호서식]
 -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시행[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현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20.2월)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20.1월)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20.2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가온 또는 냉각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3. 사업자선정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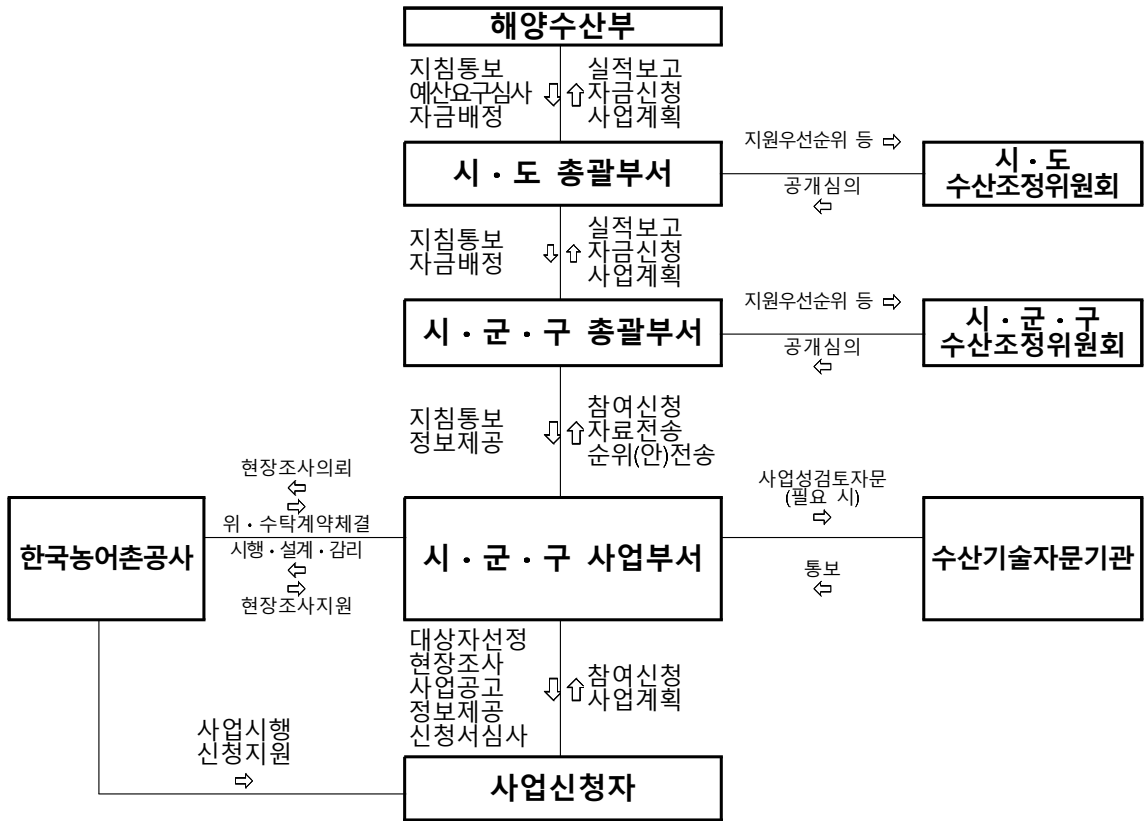
시·도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20.2월~계속)

시·군·구

- 시·도에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20.2월~계속)
 - 제출서류 :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업 추진 체계도)



* 수산기술자문기관은 어업기술센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기술보급기관 등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비를 지자체로 배정

시·도(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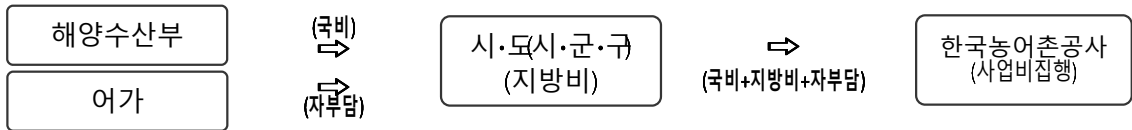
-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대행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 대행하여 시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조건을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대상자(어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 공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괄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여부 및 환급예상액을 사전에 확인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자금 흐름도〉



5. 이행점검 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과 어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함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사업시행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 추진상황을 보고(분기별 익월 10일까지)하여야 함[별지 제9호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할 수 있음
 - 사업시행 중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 계획의 중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구 담당자를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사업비 집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 완료 보고하여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 대상 어업인의 요구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위탁시행 및 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등을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한도

(단위 : %)

| 구분 \ 대상액 | 5억원이하 | 10억원이하 | 20억원이하 | 30억원이하 | 50억원이하 | 100억원이하 |
|----------|-------|--------|--------|--------|--------|---------|
| 사업관리대가 | 8.83 | 7.98 | 7.35 | 7.10 | 6.89 | 6.64 |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은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요율적용은 위·수탁 협약시 사업대상자(어가)별 대상액으로 각각 결정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공사비 대상액에 따라 요율 산출하여 적용 (직선보간법)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①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구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② 업무 추진단계



- 한국농어촌공사는 단계별 추진사항 또는 분기별 추진사항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③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
 -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 의견 제출
-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설계도서는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도서 작성
- 사업대상자에게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시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기준에 의함.
- 공사착수 전 업무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 중 업무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어업인, 어업법인 등) 및 시·군·구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및 사업수지 예산서에 따라 사업비 정산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구 담당자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군·구에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함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

- 점검시기 : 사업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 현장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 사업완료 익년 7~8월중 전년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시·도 또는 어가는 중점 관리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평가기준 : 시·도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추진성과 보고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익년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후 익년 3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해양수산부로 취합 제출[별지 제13호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
-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수산기술자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 사업대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사후관리 기간 중 법인의 파산, 해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시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적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재산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
| 에너지절감시설 | 5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 구)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취득한 에너지절감시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기간을 동일시 적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증기간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사업완료 후 익년 3월까지 사업추진결과를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별지 제12호서식]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 에너지절감시설 운영현황 효과에 대한 자료를 사업완료 후 익년 2월까지 시·군·구 제출[별지 제14호서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어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와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16호서식]

IV.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20. 4월)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후 해양수산부에 수요조사 결과 제출 및 예산요구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2.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020년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시범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과장 이상길 사무관 고경호 | 044-200-5630 044-200-5642 |

I. 사업개요

1. 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전력비용 절감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어가의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보급 및 이용·보급사업비의 조성) 및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개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등의 책무) 및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전력 비용 절감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어가의 경영안정 도모

| 성과지표 | 2020 목표치 | 최근 4개년 실적 | | |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 |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
| 연간 설비보급량(kW) | 1,075 | - | - | 200 | 1,792 | 익년 2월 | 발전용량(KW)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실적 (당해년도 사업 12월 기준)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합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합 계 | 15,972 | 2,000 | 6,400 | 3,786 | 3,786 |
| - 국 비 | 8,186 | 1,200 | 3,200 | 1,893 | 1,893 |
| - 지방비 | 4,592 | 400 | 1,920 | 1,136 | 1,136 |
| - 자부담 | 3,194 | 400 | 1,280 | 757 | 757 |

※ 3개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평가 후 2021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

5. 2020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 사업내역 | 지원규모 (개소) | 지 원 액 | | | |
|------------|------------------|-------|-------|-------|-----|
| |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담 |
| 태양광발전설비 시설 | 1,750kW (8개소) | 3,786 | 1,893 | 1,136 | 757 |

※ 지원규모는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II.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선정
 - 해당 양식장의 수면 및 유희부지(제방, 수조구조물 외벽 끝), 지붕 등을 이용하여 **최소 50kW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 양식장이어야 함
- 대체사업자 선정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사항 및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 사업자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추진 제한지역
(시장 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수변경관지구, 문화재보호법 적용지역, 농업진흥구역 등 발전사업허가의 취득이 어렵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지역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선정 제외
- 육상 축제식양식장 내 부유식 태양광설치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해수 또는 담수를 이용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수면 및 유희부지, 건축물의 지붕 등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 유희부지(제방 부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 수면과 연결하여야 하며, 태양광발전설비 전체 면적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 * 지원시설은 수면을 벗어나 단독으로 설치 불가

② 대상시설 요건

- 양식시설로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능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신청 전까지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 불가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 사업신청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장비 반입, 소음, 진동, 빛반사 등 주변 환경 및 공사 진행 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한국전력 계통연계가 가능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건축법」등과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제약이 없는 양식장이어야 함
- 사업신청 해당 지자체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시·군 관리계획 조례에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양식장이어야 함
- 에너지발전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
(발전설비(모듈, 인버터 등) 적용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③ 사업자 선정 기준

- 양식장 시설부지 및 시설물이 신청자 소유의 토지인 경우 우선 지원
 - 사업기간 내에 한국전력 계통연계가 가능한 지역
 - 해당 양식장에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 우선 지원
 -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 태양광발전사업에 지장이 없는 양식장
- *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별지 14호]를 기준으로 평가

〈 사업자 선정 방법 〉

- 지자체에서 어가별 사업계획 및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수산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 수산조정위원회는 대상자 사업계획서, 사업여건,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등 종합하여 결정
- 예산은 사업대상자 선정 후 해당 시·도별 배정

④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태양광발전 시설에 필요한 토목공사, 전기공사, 발·변전설비 및 인버터, 전기실, 구조물 및 지지대, 태양광전지판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발전설비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및 감시·제어설비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① 지원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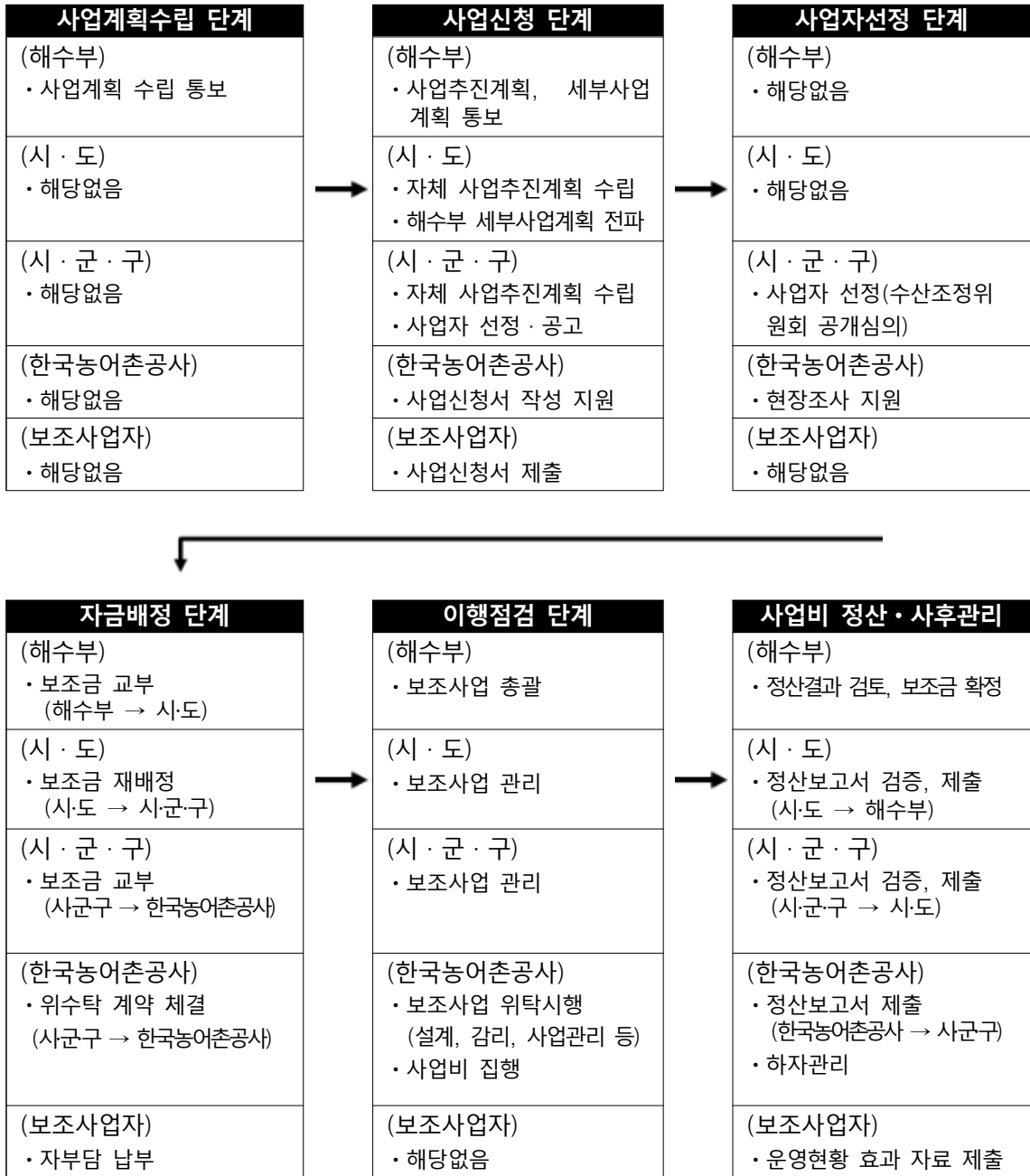
- 지원형태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규모 : 국비보조 1,893백만원
 - 총사업비 3,786백만원(국비 1,893, 지방비 1,136, 자담 757)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

② 지원한도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 시범사업비는 발전용량 용량에 따른 지원
 - 지원 사업비 : 발전용량(kW) × 지원한도금액 (지원한도 : kW당 250만원)
- * '20년 사업의 경우 발전용량을 500kW이하로 제한하여 사업비 책정

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통지('19.12월)
- 시·도의 사업수요, 그 동안의 지원성과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배정 통보(예산 확정 시)

2. 사업신청 단계

시·도

-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통보('19.12월)
- 시·군·구별 사업자 선정 시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20.3월)

시·군·구

-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계속)
 - 발전수익 등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어가에 설명(한국농어촌공사 협조)
- 어가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자료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후 사업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20.2월)
 - 시·군·구에서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성을 검토[별지 제1호서식]
 -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시행[별지 제2호서식]
 - 사업신청 시 어업인에게 복합민원 사전심사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심사 결과를 사업신청자 및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에 통보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현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20.2월)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20.2월)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20.2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태양광발전설비 및 전기실 필요 면적을 확보하고 시설형식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해당 양식장에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지 해당 지자체에 복합민원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사업 사전검토 결과 제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서

3. 사업자선정 단계

시·도

- 시·군·구별 사업자가 선정되어 시·도에 통보시 시·도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확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20.3월)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19.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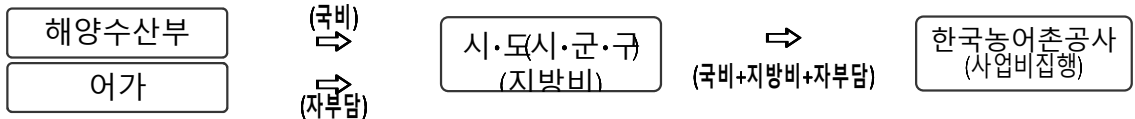
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사업성 검토서, 현장조사서를 검토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우선순위 등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30% 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시는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별지14호) 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사업자를 선정('20.3월)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에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20.3월~계속)
 - 제출서류 :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사업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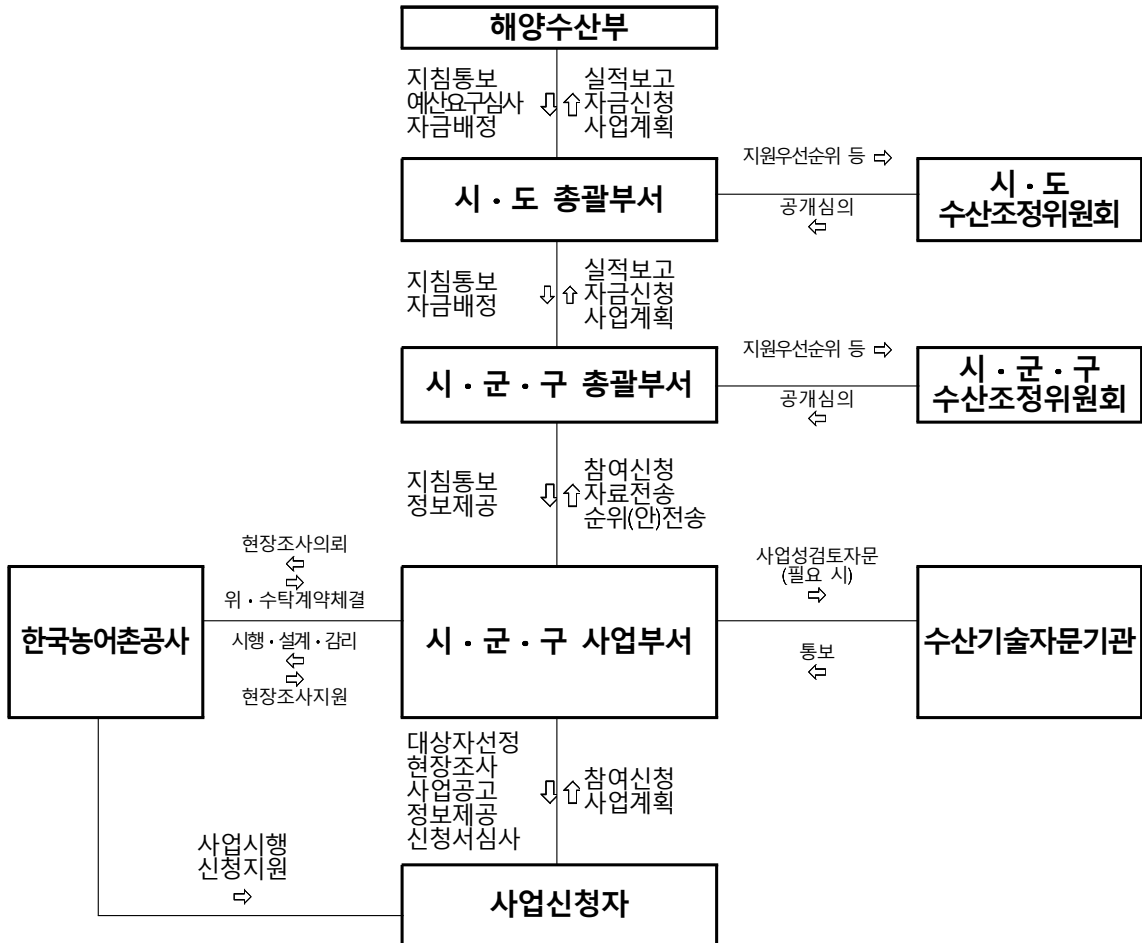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 자금 흐름도 >



(사업 추진 체계도)



* 수산기술자문기관은 어업기술센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기술보급기관 등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비를 지자체로 배정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대행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 대행하여 시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조건을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대상자(어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 공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괄 교부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5. 이행점검 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과 어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함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사업시행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 추진상황을 보고(분기별 익월 10일까지)하여야 함[별지 제6호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할 수 있음
 - 사업시행 중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사항 및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으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으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구 담당자를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사업비 집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 완료 보고하여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 대상 어업인의 요구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위탁시행 및 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등을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사업 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한도

(단위 : %)

| 구분 \ 대상액 | 5억원이하 | 10억원이하 | 20억원이하 |
|----------|-------|--------|--------|
| 사업관리대가 | 8.83 | 7.98 | 7.35 |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은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요율적용은 위·수탁 협약시 사업대상자(어가)별 대상액으로 각각 결정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공사비 대상액에 따라 요율 산출하여 적용 (직선보간법)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①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사군구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② 업무 추진단계



- 한국농어촌공사는 단계별 추진사항 또는 분기별 추진사항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③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
 - 입지조건 확인(계통연계 용량,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일정 거리 이내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의견 제출
- * 일정 거리 : 해당 지자체 조례 발전시설 허가기준 참고
-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설계도서는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도서 작성
- 사업대상자에게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기준에 의함.
- 공사착수 전 업무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 중 업무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어업인, 어업법인 등) 및 시·군·구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및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 정산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구 담당자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군·구에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함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

- 점검시기 : 사업담당자는 연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 현장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 사업완료 익년 7~8월중 전년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시·도 또는 여가는 중점 관리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평가기준 : 시·도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추진성과 보고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익년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후 익년 3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해양수산부로 취합 제출[별지 제10호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
-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수산기술자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 사업대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 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사후관리 기간 중 법인의 파산, 해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시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적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재산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
| 태양광발전설비 | 10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증기간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사업완료 후 익년 3월까지 사업추진결과를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별지 제9호서식]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 설치 완료된 시설에 대한 효과분석 계획·수립 및 이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태양광발전설비 운영현황 효과에 대한 자료를 사업완료 후 익년 2월까지 시·군·구 제출[별지 제11호서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어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와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12호서식]

IV.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20. 4월)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후 해양수산부에 수요조사 결과 제출 및 예산요구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2.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발췌본)

발행일 : 2020년 2월 1일

발행인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발행처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 180

전화 : 041-411-2100

팩스 : 041-555-4491